

## <‘駐朝鮮使館檔’의 소송 안건을 통해 본 근대 한중관계>

일시: 2013년 9월14일(토) :14:00~18:20

장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비교사연구센터

주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후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 행 사 일 정

회의 등록 및 개회사 (13:30~14:00)

제1부(14:00~16:00)

사회: 강경락(강남대)

1. 근대시기 한중관계와 한중간 소송사건 ..... 05  
발표: 송규진(고려대)  
토론: 손승희(인천대)
2. 1884년 漢城 ‘崔藥局命案’의 추이를 통해 본 한중관계 ..... 33  
발표: 권인용(고려대)  
토론: 김희신(인천대)
3. 19세기말 華商의 조선 진출과 조선인과의 충돌 ..... 57  
발표: 이학로(고려대)  
토론: 이화승(서울 디지털대)

▣ 휴식시간 (16:00~16:20)

제2부(16:20~18:20)

사회: 이영옥(전남대)

4. 인천지역 화상의 해관습격사건 ..... 79  
발표: 이현주(국사편찬위원회)  
토론: 이은자(부산대)
5. 인천 해관의 華船 구류사건과 章程의 적용 논쟁 ..... 83  
발표: 박은숙(고려대)  
토론: 김윤희(가천대)
6. 청일전쟁 이후 한국인과 중국인의 분쟁과 해결방식의 변화 ..... 109  
발표: 박정현(고려대)  
토론: 정혜중(이화여대)



## 근대시기 한중관계와 소송사건

송규진(고려대)

1. 머리말
2. 이중적 국제질서 시기(1882~1894)의 한중관계와 소송사건
3. 조공체제의 붕괴 이후 과도적 시기(1894~1899)의 한중관계와 소송사건
4. 한중간의 근대조약체결 시기(1899~1905)의 한중관계와 소송사건
5. '외교권 박탈' 이후(1905~1911)의 한중관계와 소송사건
6. 맺음말

### 1. 머리말

중국과 한국은 역사적으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 왔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특히 근대 이후에 교류가 확대되면서 한중간의 접촉은 더욱 활발해졌다. 최근 학계에서는 일국사를 중심으로 한 기존 역사연구와 유럽중심의 세계사 기술에 따른 폐단을 반성하면서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한중관계사를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은 동아시아 국가 간에 현존하는 역사갈등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 역사교육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맥을 같이하여 최근 새로운 시각으로 한중관계사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지만 새로 발굴한 자료를 통한 연구성과는 그리 많지 않다.

기존의 관련 한중관계 연구에서 주로 이용된 자료는 『淸季中日韓關係史料』와 『淸季外交史料』, 『淸案』, 『統署日記』·『外衙門日記』·『交涉局日記』 등이다.<sup>1)</sup> 이런 자료들을 통하여 당시 한중관계의 면모가 많이 드러났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모습을 그려내는 데는 아쉬운 면이 있으며 그 저변에는 자료의 한계가 분명히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근대 한중관계사 연구의 자료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臺灣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檔案館에서 온라인을 통해 공개

1)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淸季中日韓關係史料』, 1972 ; 文海出版社(影印), 『淸季外交史料』, 1932), 『淸案』(『舊韓國外交文書』, 한국 서울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0~1971), 『統署日記』·『外衙門日記』·『交涉局日記』(『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 한국 서울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2, 1974) 등이다. 『淸季中日韓關係史料』는 淸末 외교담당 기구였던 總理衙門(1861~1901)의 「朝鮮檔」과 外務部(1901~1911) 자료 중 商務, 邊務, 路鑛, 僑民, 魚鹽, 航運, 郵電 등과 관련된 교섭안건 기록의 일부를 정리하여, 출간한 것이다. 『淸案』은 규장각 도서로 외교문서 가운데 華案, 淸函, 淸來案, 淸原案, 淸案, 淸去來案 등의 표제명이 붙은 문건을 모두 '淸案'으로 묶어 연월일 순으로 정리하여 출간한 것이다. 이들 자료에도 소송과 관련한 자료가 있지만 『淸案』의 '彭姜案'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록이 빈약하여 전모를 알기 어렵다.

되고 있다. 『駐朝鮮使館檔』이 바로 그것이다.<sup>2)</sup> 이 자료는 특히 한중 양국의 교섭이 실제 중앙과 지방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양국 간 소송안전 자료를 대거 포함하고 있다. 이 자료가 원활하게 연구자에게 이용될 수 있다면, 근대 한중관계사를 보다 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다.

근대 한중관계사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성과가 축적되었는데 연구 동향은 구선회가 잘 정리한 바 있다.<sup>3)</sup> 그녀에 의하면 근대 한중관계사에 대한 연구는 근대 이후 한국<sup>4)</sup>과 중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 통상과 관련한 한중관계연구, 국경문제와 상호인식 등에 관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당시 한국인들의 직접적인 관심사는 경제적으로 상권을 침투해오는 중국상인에 대한 것이었다. 그동안 한국연구자들은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일부 중국상인의 빛나간 행위와 이에 대한 과민한 반응은 분규를 더욱 부채질했다. 중국인과 한국인의 상이한 상거래 방법도 마찰의 요인이 되었다. 경제적으로 상권을 침투해 오는 중국상인에 대한 한국인의 반발과 부정적 감정은 그들의 행패에 의해 더욱 격화되었다. 개항장에서는 물론 내지의 場市에까지 중국상인이나 중국인 遊勇들의 행패를 도처에서 볼 수 있었고, 한국인을 중국인이 구타하고 살상하는 예도 무수히 많았다.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의 벌어진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성과는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소송과 관련해서는 근대 한중관계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기도 했다. 소송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영옥과 石川亮太, 이은자, 박정현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영옥의 연구는 통감부 이후시기의 소송을 종합하여 다루었고 石川亮太의 경우는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의 소송을 상거래를 중심으로 유형별로 분석했다. 박정현도 청일전쟁 이전시기까지의 한국인과 중국인의 갈등양상을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중국인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결되었음을 밝혔다. 이은자는 19세기 한중관계의 변모상을 한국에서 발생한 한중 소송을 통해 살펴본다는 입장에서 몇 가지 사례를 분석했다.<sup>5)</sup> 특히 이은자는 『淸案』의 ‘彭姜案’을 기본자료로 하면서 영사재판권의 실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개별 소송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sup>6)</sup> 지금까지의 연구로 한중간에 벌어진

2) 대만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는 『駐韓使館檔』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표지에는 『駐朝鮮使館檔』, 『駐韓使館檔』으로 표기되었다. 일반적으로 대만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의 분류대로 『駐韓使館檔』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글에서는 학술대회명에 따라 『駐朝鮮使館檔』으로 명명하겠다. 『駐朝鮮使館檔』에 대해서는 박정현 외, 『중국 근대 공문서에 나타난 韓中關係』, 한국학술정보, 2003; 김희신, 「근대 한중관계의 변화와 외교당안의 생성-『淸季駐韓使館保存檔』을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50, 2011 참조.

3) 따라서 한중관계사에 대한 별도의 세세한 연구사 정리와 참고문헌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구선회, 「근대 한중관계사의 연구경향과 쟁점분석」, 『한중일 학계의 한중관계사 연구와 쟁점』, 동북아역사재단, 2009 참조.

4) 대한제국이 수립되기 전까지와 ‘한국병합’ 이후에는 한국을 조선, 신해혁명 이전까지는 중국을 청국이라고 해야 하나 통일성을 위해 이 글에서는 각각 한국과 중국으로 명명하겠다.

5) 이영옥, 「한·중 민간소송 연구, 1906-1910 -장도지안(張導之案),요귀춘안(姚貴春案),유금유안(劉金有案) 등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35집, 2007; 石川亮太, 「開港期漢城に於ける朝鮮人・中國人間の商去來と紛争」, 『年報朝鮮學』10, 九州大學, 2007; 박정현, 「1882~1894년 한국인과 중국인의 갈등 해결방식을 통해 본 한중관계」, 『중국근현대사학회』46, 2010; 이은자, 「『訴訟』 안전을 통해 본 청일전쟁 이후(1895~1899) 韓中關係 연구」, 『중국근현대사연구』38, 2008; 이은자, 「淸日戰爭 이전과 이후 在韓 韓中間 '訴訟' 안전 비교 분석」, 『아시아문화연구』17, 2009 참조.

6) 이은자, 「大韓帝國時期 韓中間 民事訴訟의 實例:『彭姜案』(1898~1900)을 中心으로」, 『동양사학연구』

소송의 전반적인 추이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개별안건에 대한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에 벌어진 소송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답보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駐朝鮮使館檔』의 내용에는 소송안건 기록이 243冊으로 전체 안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며 각 冊內 관련 문건이 50~200여 쪽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최근 『駐朝鮮使館檔』의 ‘소송안건’을 통해 근대 한중관계를 재조명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sup>7)</sup> 그런데 지금까지의 소송과 관련한 글은 개별사건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거나 몇 개의 사건을 정리하고는 있지만 소송사건의 전체 추이를 살피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김희신은 『駐朝鮮使館檔』의 안건에 대한 통계작업을 통해 이 시기 소송안건은 243건으로 전체 안건의 28.3%를 차지했음을 밝혔다.<sup>8)</sup> 다만 『駐朝鮮使館檔』의 소송안건에는 소송사건과는 무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소송안건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사건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통계작업이 필요하다. <표1>를 통해 알 수 있듯이 『駐朝鮮使館檔』에서 다루어진 소송사건은 잡건을 제외하고 모두 462건에 이른다. 이 글은 기존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근대 이후 한중관계를 네 시기로 나누어 정리하면서 각 시기별로 중요 소송사건이 어떠한지를 다루고자 한다.<sup>9)</sup>

<표1> 근대시기 소송사건의 추이

	소송사건
이중적 국제질서 시기(1882~1894)	215(46.2%)
조공체제의 붕괴 이후 과도적 시기(1894~1899)	10(2.2%)
한중간의 근대조약체결 시기(1899~1905)	67(14.5%)
‘외교권 박탈’ 이후 시기(1905~1911)	170(36.8%)
합계	462(100%)

## 2. 이중적 국제질서 시기(1882~1894)의 한중관계와 소송사건

강화도조약으로 근대조약체제에 편입된 뒤 한국은 일본의 경제침투를 완화하기 위해 중국과의 통

100, 2007 참조. 구범진, 「韓淸通商條約’ 일부 條文의 해석을 둘러싼 韓-淸의 외교 분쟁」, 『대구사학』83, 2006;

7) 박정현과 김희신은 『駐朝鮮使館檔』 적극 활용하여 근대 한중관계를 새롭게 조망한 연구성과를 내고 있다. 다만 이들 연구는 중국상인의 실태와 조직에 초점을 맞추었다. 박정현, 「19세기 말(末)(1882-1894년) 한국(朝鮮) 화상(華商)의 조직과 상업 활동」, 『중국사연구』66, 2010; 김희신, 「駐朝鮮使館의 화교 실태조사와 관리: 청일전쟁 이전 漢城·仁川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34, 2010; 김희신, 「淸末(1882-1894년) 漢城 華商組織과 그 位相」, 『중국근현대사학회』46, 2010 참조. 본 학술회의

8) 김희신, 2011, 앞 논문, 62쪽.

9) 필자의 글도 잡건을 생략했으며 다른 안건에도 소송사건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다만 잡건은 소송사건이 아닌 것이 많이 들어있고 또 개략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다른 안건에 있을 수 있는 소송사건도 자료를 분류할 때 발생하는 실수이기 때문에 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상문제를 조속히 처리하고자 했다.<sup>10)</sup> 당시 통상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어윤중을 중국에 파견하면서 고종은 경비부담이 컸던 변경지역 개시 및 朝貢使·朝勅使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관료들은 이것이 조공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sup>11)</sup> 이러한 고종의 입장을 ‘만국공법적 세계체제를 인식하고 중국과 대등한 관계로 전환시키려고 시도’<sup>12)</sup>로 평가한 연구가 있지만 임오군란 이후 청일전쟁까지 고종이 취한 중국 의존적 태도로 볼 때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한국의 통상제외에 대해 중국을 경시하는 대담한 요구로 보았으며 특히 상주사절을 한국으로 파견해 달라는 제의는 한국과 중국의 조공체제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sup>13)</sup> 어윤중은 周馥과의 회견에서 이 문제가 조공체제의 변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당시 중국은 이마저도 거부했다.<sup>14)</sup>

이런 상황에서 임오군란이 발생하자 고종은 天津에 주재하고 있던 領選使 김윤식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중국에 원조를 청하도록 했다. 한국의 중국군 파병 요청에 따라 중국은 한국에 군대를 파견했다. 결국 임오군란은 중국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고종은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향후 한국의 정치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이것을 중국 파견 사신으로 임명된 진주정사 조영하, 부사 김홍집, 종사관 이조연 등을 통해 이홍장에게 보내 이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sup>15)</sup> 중국은 임오군란을 기회로 한국에서의 중주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획책 했다. 그러한 중국의 의도는 제국주의적 방식이 아닌 전근대적 조공체제를 근본적으로 유지하는 방식을 통해서 현실화되었다.

한국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홍장은 장정에 대해 “중국의 기본 행정 법전인 會典을 살펴보는 한편 만국공법을 상세히 고찰했다면서 ‘장정’은 ‘조약’과는 다르며 비록 옛 제도를 바꾸고 시의를 참작하긴 했지만 조공국과 교섭하는 체통을 어기지 않는다고 중국정부에 보고했다.<sup>16)</sup> ‘조공국’의 의미에 대해서는 ‘만국공법’ 체제하의 ‘속국’이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많지만 만국공법을 참조하면서 기본적으로 조공체제를 유지시키고 하는 중국측의 의도를 반영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한국대표 어윤중은 장정 내용에 대해 중국 대표 周馥과 馬建忠과 논의했다. 이때 어윤중도 장정의 기본적인 내용이 중국과의 조공체제에 입각한 규정이었음을 인지했다. 그는 조공체제를 인정하면서도 일본 혹은 서구열강이 채용할까 두렵다는 이유로 장정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그는 치외법권문제와 양국 연안에서의 魚採 문제, 漢城開棧문제, 내지통상문제, 관세문제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sup>17)</sup>

중국은 조약이란 양국이 비준한 후에 시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한중간의 장정은 중국이 특별히 허락하여 쌍방이 서로 맺은 것으로 명칭이 ‘조약’과 ‘장정’으로 다르듯이 실제 내용도 같지 않아 한국이 중국과 맺은 장정과 한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하는 조약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했다.<sup>18)</sup> 장정이

10) 秋月望, 「朝中間の三貿易章程の締結経緯」, 『朝鮮學報』115, 朝鮮學會, 1991, 105쪽.

11)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清季中日韓關係史料』(이하 『관계사료』로 표기함) 2, 591~592쪽, 597쪽.

12) 구선희, 앞의 책, 61~62쪽.

13) 文海出版社, 『清光緒朝中日交渉史料』(이하 『교섭사료』로 표기함) 3, 17~18쪽.

14) 『관계사료』 2, 591~601b쪽.

15) 『관계사료』 3, 910~917쪽.

16) 『교섭사료』 3, 979쪽.

17) 『관계사료』 3, 983쪽.

타국에 원용될 것을 염려하여 수정을 요청하는 것은 한국이 중국과 동등하게 교체하려는 것으로 단지 일본을 두려워하고 중국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타국이 장정을 원용할 것이 염려가 된다면 속방조항을 넣을 것을 요구했다.<sup>19)</sup> 임오군란 이후 군대를 한국에 주둔시킨 중국의 정치적, 군사적 압력이 가해진 상황에서 한국은 결국 중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1882년 9월 중국과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을 체결했다.<sup>20)</sup>

여기에서 중국과 한국이 조공체제에 있다는 것을 다시 의논할 것이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한 대목을 주목해야 한다. 장정을 통해 중국이 만국공법 체제하의 근대적 종속관계로 개편하려 했다는 주장은 이 대목에 집중하여 좀 더 많은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장정 체결시 김윤식과 어윤중의 속방조항에 대한 인식에 대해 중국이 한중관계를 ‘근대적 종속관계로 개편하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sup>21)</sup> 평가하기 보다는 이중적 국제질서하에서 고종을 중심으로 한 당시의 집권층이 한국의 개혁방안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했던 점을 비판적 시각에서 냉철히 평가해야 할 것이다.<sup>22)</sup> 조공체제의 상징물인 사행도 청일전쟁 이전까지 계속되었다. 1884년 중불전쟁 이후에도 한국과 중국의 사행은 계속 유지되었다.<sup>23)</sup> 기존연구에서는 고종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했다고 주장하지만 계속되는 고종의 중국의존적 태도는 조공체제하에 있던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1883년에도 이홍장은 군대의 반수를 철군시키고자 했으나 고종의 청원으로 그대로 주둔시키기로 결정하기도 했다.<sup>24)</sup>

일본과 서구와의 근대조약체제와 중국과의 조공체제라는 이중적 국제질서를 근대조약체제로 단일화시키려고 시도한 것이 갑신정변이다. 조공체제를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중국으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갑신정변 직후 중국은 즉각적인 개입을 통해 갑신정변을 진압했다. 갑신정변직후 한국을 둘러싼 정세변화로 열강 간의 세력균형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이이제이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이 러시아세력을 끌어 들이기 위해 한러밀약을 단행했다는 것이 현재 학계의 일반적인 통설이다.<sup>25)</sup> 그러나 이 밀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 내용은 물론 그것의 실재조차 분명하게 확인된 것이 없다. 이는 1884년 7월 한러조약이 전격적으로 체결된 이후 양국 사이의 빈번한 접촉을 우려의 눈으로 바라본 주변국의 풍문에 불과할 가능성이 많다. 실제로 진수당은 고종이 밀서를 보낸 일

18) 『관계사료』 3, 984쪽.

19) 『관계사료』 3(594-3), 986쪽.

20) 김종원,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 대하여」, 『역사학보』32, 1966 참조. 한국에 온 진수당은 榜文을 내걸어 한국이 중국의 조공국임을 환기시켰다. 송병기 역, 『국역 윤치호일기』1,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30쪽.

21) 구선희, 앞의 책, 87쪽.

22) 김윤식은 한국이 조약체제에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고립상태에서 벗어날 기회를 가졌지만 동시에 무력에 의한 예측화를 우려했기 때문에 중국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兩得論’을 주장했다. 유길준도 중국의 보호에 의한 한국중립화론을 주장했고 수공국의 중공국에 대한 관계와 각국과의 관계는 다른 당시 상황을 양질체제라고 명명했다. 정용화, 전환기 자주외교의 개념과 조건 : 19세기말 한국의 대청외교의 이론적 고찰, {국제정치논총}43-2, 2003 참조.

23) 김정기는 당시 사행이 유지된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정기, 「청의 한국정책(1876~1894)」, 『1894년 농민전쟁연구3』, 역시비평사, 1993, 42쪽.

24) 임계순, 「한러조약과 청의 대응」, 『청일전쟁을 전후한 한국과 열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66쪽.

25) 구선희, 앞의 책, 101~102쪽.

에 관계가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이홍장에게 보고했다.<sup>26)</sup> 이와 같은 풍문을 학계에서 정설처럼 받아들인 것은 당시 고종을 한국내 열강의 세력균형을 이용해 중국으로 부터 독립하려고 했던 인물로 평가하려는 의도와 관련이 깊다.

고종은 한러밀약설이 제기된 시점에서 중국에 파병을 요청했다.<sup>27)</sup> 이는 고종이 여전히 전통적인 조공체제에 입각해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자 노력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종의 요청은 천진조약에 의해 철병이 진행된 이후 혼란한 국내정세에 대한 불안감에서 나온 것이다. 고종은 1885년 9월 특별 관리 金嘉鎮을 비밀리에 중국에 파견하여 중국군을 파병하여 백성들을 鎮撫하게 해달라고 중국황제에게 요청했다. 고종은 한국에서 변란이 발생할 때마다 중국황제의 보살핌에 의지해 수습을 했으며 특히 갑신정변으로 한국이 위기에 빠졌지만 중국군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국이 안정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고종은 “한국의 백성이 경솔하기 때문에 자주 소란이 일어나는데 예전 쇄국정책을 실시할 때는 변란이 있어도 오히려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끼치지 않았지만, 1882년부터 각국과 통상하여 관민들이 서로 섞여 城內에 거주하니 매번 변란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이웃나라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였다.

중국군이 철수한 상황에서 국내외의 여러 가지 정치상황이 어렵과 급박하게 진행되자 고종은 불안감을 느끼고 중국황제에게 한국에 중국군을 파병하여 만민을 통솔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청했던 것이다. 천진조약으로 일본과 군대를 공동으로 철수한 직후 한국으로 군대를 다시 파병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는 문제였다. 따라서 고종의 요청은 실현될 수 없었다. 오히려 고종에 대한 불신감만을 키워 중국이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적극적으로 단행한 계기로 작용했다.

1886년 7월 고종을 비롯한 일부 한국정부 관료들이 러시아에 보호를 요청했다는 제2차 한러밀약의 경우도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원세개의 전횡에 대해 한국정부에서 반원세개 정서가 있었던 것은 여러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 원세개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발생하자 원세개는 한국이 러시아로 접근한다고 보고하고 고종을 폐위시키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데니는 한러밀약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sup>28)</sup> 원세개의 고종 폐위안에 대해 이홍장은 국왕의 반대세력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한러밀약’이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조용히 수습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중국의 고종 폐위 움직임에 대해 일본이 강력히 비난했으며 러시아 외무성에서도 ‘한러밀약’이 없다고 보증했기 때문이다.<sup>29)</sup>

1889년 6월 한국지를 천진으로부터 통주로 운반하기 위해 자구반세를 납부하여 내지통행권 발급을 청구했던 독일상사 세창양행에 대해 천진해관도는 그 발급을 거부했다. 그 이유는 한국은 중국의 속방이기 때문에 한국상품을 양화와 같이 취급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독일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결국 천진해관이 正稅로 징수한 수입세의 50%를 환급하고 또 세창양행이 한국지를 내지가 아닌 개항장의 천진에서 판매한다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는 열강의 한중간의 종속관계를 묵인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sup>30)</sup>

26) 『관계사료』 4, 1885~1886쪽.

27)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朝鮮國王奏請派兵鎮撫密案」, 『駐韓使館保存檔案』 01-41-001-03.

28) O.N 데니(신복룡·최수근 역주), 『청한론』, 집문당, 1999, 42쪽.

29) 『교섭자료』 10, 7쪽.

조공체제는 1890년 4월 대왕대비 조대비가 죽자 喪祭에 대한 중국의 弔勅使 파견으로도 재확인되었다. 당시 한국은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조칙사를 접대할 여력이 없어 상례를 검소하게 치루고자 한다며 조칙사 파견 중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조공국을 대하는 특별한 예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공체제와 관계가 있는 것은 가볍게 변경할 수 없다고 하면서 조칙사를 파견하되 경비부담을 삭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조칙사는 경비부담을 줄이는 방법의 하나로 해도로 한국에 오게 되었고 고종은 궁궐 밖으로 나가 조칙사를 맞이하고 무릎을 꿇고 중국황제를 향해 절을 했다.<sup>31)</sup>

왕권이 불안해질 경우 조공체제에 입각하여 중국에 원병을 요청하는 고종의 태도는 동학농민전쟁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1894년 4월 농민군이 전라도 각지의 지방관청을 습격하고 세력을 급속히 확대하자 한국은 중국군 파병요청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이때 한국정부 내 회의에서 고종은 외국군파병 요청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런데 이는 정치적인 제스처에 지나지 않았다. 고종은 비밀리에 성기운을 원세개에게 보내 중국군 파병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원세개는 한국에서 중국군을 파병하여 농민군 진압을 요청하는 것은 한국이 중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것이고 그 내란을 스스로 끝낼 수 없어서 중국에 대해 진압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上國’의 체면으로 물리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sup>32)</sup>

한국에 중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의식을 가진 세력이 있었고 대다수 연구자들의 주장처럼 고종도 조공체제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고종을 비롯한 세력에 의해 국정이 운영되었던 상황에서 조공체제를 극복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현실이었다. 이는 한러밀약설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고종이 러시아와 밀약을 체결하려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중국에 의존하여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것에 급급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는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다. 중국은 조공체제를 고수하려는 입장에서 한국문제에 중국이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중국군 파병은 일본군의 파병구실로 작용했고 청일전쟁을 통해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크게 변화되었다.

이 시기에 중국거류지가 설치되고, 한국과 중국과의 경제교류가 보다 활성화되면서 중국인의 수는 급격하게 늘어났다. 소송사건은 그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필자 나름대로 분류한 것이 <표2>이다.<sup>33)</sup> 이에 의하면 이시기의 소송사건에서는 대금관련이 75건으로 34.9%를 차지하여 이시기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0) 朴俊炯, 近代韓国における空間構造の再編と植民地雜居空間の成立, 早稻田大學 博士學位論文, 159~160쪽.

31) 『관계사료』 5, 2826~2828쪽.

32) 『교섭자료』 上, 246~247쪽.

33) 각 사건들은 서로 중첩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강절도과정에서 살해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인명살상이 더 중요하기 판단했기 때문에 살해사건으로 분류했다. 다만 방화로 인해 사망사건이 발생한 경우는 방화로 분류했다.







무렵 가드너는 한국에 중국공관의 봉쇄를 요청했다. 이는 일본인과 한국인에 의해 절도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러한 가드너의 요청에 응하여 관련자료를 작성한 뒤 영국공관에 전달했다. 그리하여 이후 중국인과 관련된 모든 교섭안건은 주한영국총영사의 소관 사항이 되었다.<sup>36)</sup>

그런데 한국정부는 1894년 11월 保護清商規則을 발표하여 중국인 거주지의 제한, 내륙진입의 금지, 거주지의 등록 절차·기한 및 거주이전 절차, 군수물자 취급금지, 중국인 來韓 제한, 범법 중국인 단속, 중국인 범죄 심판 문제 등을 규정했다.<sup>37)</sup> 이 가운데 한국에서 중국인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전적으로 한국 정부에 귀속시키다는 방침을 가지고 논란을 벌였다. 1894년 11월 힐리어는 1883년 체결된 조영조약 제3관 제8조에 의거하여 청심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외부(외무부)에서는 그가 중국관리가 아님을 지적하고 그의 주장을 배격했다.<sup>38)</sup> 그리하여 중국인들은 영국총영사의 보호를 받고 있었으나 보호청상규칙에 의거하여 통제를 받는 과도기적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1895년 4월 청일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은 시모노세키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의 제1항은 “중국은 한국이 완전무결한 자주독립국임을 확인하고 자주독립을 해치는 한국의 중국에 대한 貢, 獻上, 典例 등은 영원히 폐지한다”<sup>39)</sup>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처음으로 한국이 자주독립국임을 인정하고 중국이 한국에 요구해오던 조공의례를 모두 폐지했다. 한국은 조공국이 아니라 독립국이 있으며 조공체제도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중간의 조공체제가 근대조약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여전이 많았다.

한편 재한 중국인의 보호권을 한국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위임받은 영국은 재한 중국인에 대한 재판권행사를 둘러싸고 한국과 의견을 나눴다. 1895년 9월 주한영국총영사 힐리어(Walert C. Hillier)는 외부대신 김윤식을 만나 중국의 총리아문이 한국에 주재하는 중국인에 관한 모든 사항을 영국이 보호관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한국에 알렸다. 이에 대해 김윤식은 이를 수용하면서도 청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도 영국이 보호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를 영국이 수용했다. 이에 따라 양국의 합의로 보호청상규칙이 철회되었고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에게는 한영조약이 적용되었다.<sup>40)</sup> 청일전쟁의 종결 이후 중국은 영국영사관에 중국인의 보호를 모두 위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1895년 11월(1896년 6월?) 당소의틀 정식 관원이 아닌 總商董의 직함으로 한국에 파견했다.<sup>41)</sup> 그런데 당시 한중관계는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소의회는 ‘공식적인’ 외교관리가 아니었다. 따라서 재한 중국인의 보호권은 여전히 주한 영국영사가 행사했다. 이런 과도기적 상황은 한청통상조약을 체결할 때까지 계속되었다.<sup>42)</sup>

36) 같은 글, 192~194쪽.

37) 『고종실록』 1894년 11월 20일(국사편찬위원회 원문서비스 이용).

38) 권석봉, 앞의 글, 1984, 196쪽.

39) 최덕수 편, 『조약으로 보는 한국근대사』, 열린책들, 2010 참조.

40) 권석봉, 앞의 글, 1984, 207쪽.

41) 같은 글, 207쪽. 천 명 정도의 재한중국인의 보호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에 채무변제를 재촉하고 한국정세를 탐문하여 보고할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원세개의 건의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관계사료』7, 3028.

42) 구범진, 「한청통상조약」 일부 조문의 해석을 둘러싼 한-청의 외교분쟁, 『대구사학』83, 대구사학회, 2006, 209~210쪽.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의 대청인식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다. 청일전쟁 이후 실제로 한국의 독립을 위협하는 세력은 일본과 러시아였지만 ‘자주독립’을 완전하게 실현하기 위해 현실 차원에서는 ‘청국적 요소’로부터의 독립을 추진했다.<sup>43)</sup> 그 일환으로 고종은 중국과의 조약체결을 적극 추진했다. 이에 대해 唐紹儀는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독립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조약체결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sup>44)</sup> 그러자 한국은 러시아군이 파병하면 반드시 환궁할 것이라 언급하면서 환궁 이후 사신을 중국에 파견할 것을 제의했다. 그런데 당소의는 외국군대의 지원없이 독립이 불가능하면 이는 자주권이 없는 종속국임을 뜻하므로 그러한 국가에는 국제법상 사신을 파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sup>45)</sup>

중국은 시모노세키조약으로 대외적으로 한국의 독립을 인정한 상황이었지만 한중관계에서는 가급적 기존의 조공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다. 1896년 7월 당소의는 한국이 대외적으로 독립을 과시하기 위해 벌인 영은문의 철거와 독립문의 축조 등을 자세하게 보고하여 민감한 태도를 취했다.<sup>46)</sup> 1896년 10월 당소의는 고종이 중국에 사신을 파견하여 조약을 맺으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는 한국이 수 백년 동안 자국의 조공국이었기 때문에 국내의 상황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평등한 조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다만 한국측이 사신의 파견을 통해 근대조약을 체결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 외부에 통고하는 형식으로 영국이나 독일의 경우처럼 총영사를 파견하여 세칙을 협의하고 각 개항장에 영사를 주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건의했다.<sup>47)</sup> 중국은 당소의의 건의를 받아들여 1896년 11월 당소의를 주한중국총영사에 임명했다. 중국이 당소의를 총상동에서 총영사로 명칭과 신분을 바꾼 것은 한국으로부터 외교사절이 먼저 오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sup>48)</sup> 다만 이때는 자신이 총영사로 부임했다는 사실을 한국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교섭권을 갖지 못했다.<sup>49)</sup> 따라서 중국인 보호에 직접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각국 공영사의 거류지 운영에 관한 회의에도 배제되었다.<sup>50)</sup>

1896년 11월 한국은 조약안을 만들어 성기운을 중국에 특파하려고 시도했다. 한국정부의 조약 초안은 양국의 국적을 지닌 자가 상대방 국가에서 범법을 행할 경우 상대방에게 신병을 인도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그 외 나머지 조항들은 한국이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조약 내용과 같았다.<sup>51)</sup> 1897년 2월부터 한국에서는 ‘칭제건원운동’이 일어났다. 당소의는 한국이 중국과 대등하게 황제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며 다른 나라와 함께 이를 막으려 했다.<sup>52)</sup> 그러나 1897년 10월 한국은 국명을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각국과의 외교관계를 새로 정립했으며 중국과 조약을 체결하려 했다. 중국은 과거 중국 사신이 머물던 남별궁에 원구단을 건축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으려 했다. 고종의 황제 존

43) 박준형, 앞의 글, 28쪽.

44) 아관파천으로 고종은 1896년 2월 11일부터 이듬해 2월 20일까지 러시아공사관에 피신하고 있었다.

45) 『관계사료』 8, 4856~4857쪽.

46) 『관계사료』 8, 4869~4870쪽.

47) 『관계사료』 8, 4958~4959쪽.

48) 『관계사료』 8, 4968~4969쪽.

49) 이영옥, 앞의 글, 222쪽.

50) 은정태, 「1899년 한청통상조약 체결과 대한제국」, 『역사학보』186, 역사학회, 2005, 31쪽.

51) 『관계사료』 8, 4980~4990쪽..

52) 『관계사료』 8, 5009쪽. .

호도 참칭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각국이 대한제국의 출범을 인정하는지 주목했다. 중국은 한국을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밀약으로 한국이 여전히 자주권이 없기 때문에 조약체결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sup>53)</sup>

그런데 한국은 주변 강대국을 통해 계속해서 중국과의 조약체결을 시도했다. 1897년 3월 고종은 국서를 봉정하기 위해 온 주중영국공사 맥도날드(Mcdonald)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조약체결 여부를 타진한 바 있었다.<sup>54)</sup> 대한제국 수립 이후 1898년 3월에는 주한러시아공사를 통해, 5월에는 각국공사와 총세무사의 힘을 빌려 중국을 압박했다. 이들은 중국이 조약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대한제국을 자신의 종속국으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사신교환을 촉구했다.<sup>55)</sup> 1898년 6월 당소외는 한국이 중국과 조약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을 러시아와 일본을 비롯한 열강들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사절의 파견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했다.<sup>56)</sup> 결국 중국은 1898년 8월 대한제국의 특사가 북경에 와서 자국의 체면을 손상하기 전에 먼저 중국이 한국에 사신을 파견하고 조약 내용도 각국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각국조약을 참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수봉을 駐紮한국국흠차대신으로 임명하고 이 사실을 대한제국과 한국주재 각국공관에 통보했다.<sup>57)</sup>

1898년 8월 주한영국총영사 조단(John N.Jordan), 총세무사 브라운(J.Mcleavy Brown), 주한러시아공사 마투닌(Nikolai Matyunin)은 청조가 대한제국에 조약체결을 위해 외교사절을 파견한다는 사실을 알고 당소외에게 조약체결을 체결하기도 전에 주찰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문제, 한국국이라는 국호의 문제, 국서의 형식에 관한 문제 등에 이의를 제기했다.<sup>58)</sup> 1898년 10월 중국은 한국의 국호를 '대한국'으로 고종에 대한 호칭을 '대황제'로 한 국서를 준비했다. 여러 열강의 대한제국에 대한 지지와 외교적 관계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sup>59)</sup> 이는 중국이 전통적인 조공체제를 완전히 포기하고 근대조약체제에 입각하여 새로운 외교관계를 수립할 것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청일전쟁 이후 한중관계의 과도체제가 종말을 고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당소외가 한국에 파견된 뒤 중국거류지와 각국거류지와의 통합안이 영국영사로부터 추진되었다. 그러나 소지주가 많은 중국거류지를 각국거류지에 병합할 경우, 각국거류지회의 의원선거시에 중국인이 간섭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각국거류지회는 이 안을 거부했다. 다만 중국조계의 경찰, 위생, 소재 등의 사업은 거류지내의 중국인들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각국거류지회가 담당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1897년도부터 중국인들이 경찰 및 행정사무를 담당하면서 실제 업무 수행은 인도인을 고용하기로 합의하여 중국 거류지를 존속하기 위해 노력했다.<sup>60)</sup>

이시기의 소송사건은 다른 시기에 비해 월등하게 적다. 청일전쟁으로 중국인이 본국으로 퇴거한

53) 은정태, 앞의 글, 32쪽.

54) 『관계사료』 8, 5021~5023쪽..

55) 『은정태, 앞의 글, 33쪽.

56) 『교섭자료』 下, 989쪽, .

57) 은정태, 앞의 글, 33쪽.

58) 『관계사료』 8, 5145~5150쪽.

59) 은정태는 무술변법이라는 중국내의 변화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은정태, 앞의 글, 33쪽.

60) 박준형, 앞의 글, 87~88쪽.





한국은 중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했으나 실제로 양국 간 교섭에서는 중국이 준비한 자료만을 가지고 논의가 진전되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양국이 각국과 체결한 조약에 근거했다는 것과 각국과의 상이한 조관은 양국의 현재상황을 참작한 것으로 화평을 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한국도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대체적으로 받아들였다.<sup>67)</sup> 다만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과는 달리 한청통상조약이 장기간에 걸친 협상이 이루어진 데는 몇가지 문제에서 입장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치외법권과 한성개잔의 철폐 문제였다.

당시 한국은 “중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마땅히 서구의 통례에 따라 모든 한국 관권이 관할해야 하고, 한국인이 중국에 있으면 또한 중국 관원이 관할해야함을 조약문 내에 추가해야 한다”<sup>68)</sup>며 치외법권을 부정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대해 서수봉은 한중 양국에 거주하는 서양인의 심판권은 모두 서양본국의 관할로 돌리고 있다며 한중 간의 조약도 같은 예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sup>69)</sup> 한중간의 치외법권 규정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내부논의가 있긴 했지만 결국 치외법권 조항은 피고주의 원칙, 청심권(재판 참관권), 쌍무적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규정이 명문화되었다.<sup>70)</sup> 당시 치외법권 조항은 한청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근대조약 전체의 문제이기도 했다. 따라서 한청통상조약은 1882년에 체결된 조미조약과 같은 수준으로 치외법권을 인정한 불평등 요소는 있지만 쌍방간에 적용되는 대등조약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71)</sup>

1894년 보호통상규칙에는 중국인의 내지진입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런데 1896년 8월 청의 총상동 당소위가 제정한 화상조규에 따르면 “外道에 가서 토산품을 구매하려는 자는 반드시 한 두 대상호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sup>72)</sup> 이에 대해 중국인들의 내지 통상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평가가 있지만<sup>73)</sup> 그보다는 보호통상규칙의 적용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1897년부터 중국인들의 내지통상은 청일전쟁 이전의 수준을 능가할 정도로 급성장했고 내지 상업 중심지에 상주하는 유력 상인들이 적지 않았다.<sup>74)</sup>

한국은 또한 한성개잔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sup>75)</sup>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을 통해 허용한 한성개잔으로 한국인의 상권이 큰 피해를 입게 되면서 한중 양국민간의 분쟁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했다.<sup>76)</sup> 1898년 10월 독립협회와 황국중앙총상회가 합동으로 외부에 상소하여 외국상인의 불법적인 내지거주를 금지하고 조약개정을 통해 한성개잔을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외부대신 박제순

67) 권석봉, 1987, 108~111쪽.

68) 『관계사료』 8, 5202쪽.

69) 『관계사료』 8, 5202쪽.

70) 이은자, 「한청통상조약 시기(1900~1905) 중국의 제한 치외법권 연구」, 『명청사연구』 26, 2005, 93쪽.

71) 권석봉, 1987, 97~98쪽.

72) 『관계사료』 8, 4906쪽.

73) 이은자, 앞의 글, 92쪽.

74) 이병천, 「개항기 외국상인의 침입과 한국상인의 대응」,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144~160쪽.

75) 『관계사료』 8, 5202쪽.

76) 이에 대해서는 이은자, 「소송(訴訟) 안건을 통해 본 청일전쟁 이후(1895~1899) 한중관계(韓中關係) 연구」, 『중국현대사연구』 38, 2008; 이은자, 「大韓帝國時期 韓中間 民事訴訟의 實例」, 『동양사학연구』 100, 2007; 구법진, 앞의 글; 이영옥, 앞의 글; 石川亮太, 「개항기한성における朝鮮人・中國人間の商取引と紛争」, 『年報朝鮮學』 10, 九州大學, 2007 참조.

은 외국인의 내지행상을 금지하도록 지방관에 지시했고 한성개간 철폐는 경비문제로 어렵다고 회담했다.<sup>77)</sup> 외부는 중국과의 협상에서 한성개간 철폐를 주장하면서 그 논리로 한국이 서양각국과 맺은 조약에서 중국정부가 먼저 한성개간을 철폐하면 이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중국에 이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수봉은 한성개간은 일본과 서구와 맺은 조약에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한국과 각국과의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한성개간권을 폐지하지 않는 한 한청통상조약에도 명기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sup>78)</sup> 5월 서수봉은 외부대신 박제순에게 한국이 한성개간 철폐를 계속 고집할 경우 협상결렬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밝혔다. 박제순은 한성개간이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먼저 중국과 이 문제를 해결하면 각국에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각국을 상대로 이를 관철시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논리를 한국이 거부하기는 어려웠다.<sup>79)</sup> 결국 이 문제를 한국이 양보하면서 조약 논의는 급진전을 이루게 되었고 1899년 9월 한청통상조약이 체결될 수 있었다.

한청통상조약은 대한제국의 법과 국제법을 따르는 가운데 체결되어 이후 체결된 조약의 모델이 되었다. 근대조약의 일반적 특징인 불평등성이 포함되었다는 문제가 있긴 했어도 나름대로 양국의 절충적이고 호혜평등적인 특징을 지닌 면도 있었다. 한청통상조약이후 한국을 둘러싼 동북아 국제질서는 근대조약체제로 단일화되었다. 당시 대한제국을 둘러싼 복잡한 동아시아 국제질서에서 대한제국이 나갈 길은 근대조약체제의 불평등성을 극복하고 자주독립을 확고하게 지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고종은 여전히 외세에 의존하거나 결합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더욱 확고히 유지하고자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고종은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에 집중했으며 대한제국기의 외교, 군사정책 등 국가안보에 중요한 문제도 의정부회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으로 비밀리에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sup>80)</sup> 이로 인해 개혁을 통해 대한제국을 부국강병화하고 독립을 지키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내부통합을 이루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한청통상조약 이후 중국인의 유입은 늘어나고 한국인과 상권 및 노동을 둘러싼 생존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대금관련 비중이 떨어진 반면 살해와 상해 사건 등의 비중은 크게 증가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월경사건이 크게 늘어나 국경분쟁이 제기되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시기에 원고(피해자)는 여전히 중국인이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피고(가해자)는 한국이 50.7%를 차지했다.

77) 『독립신문』 1898년 10월 10일 편지; 1898년 10월 18일 잡보.

78) 은정태, 앞의 글, 47쪽.

79) 권석봉, 1987, 120쪽.

80) 현광호, 『대한제국의 대외정책』, 신서원, 2002, 16쪽.





개편되어 보호정치의 지방기구로 전환되었다. 중국 외무부는 1906년 2월 일본공사 우치다 고우사이(內田康哉의) 조회를 받은 뒤 주한공사를 철수하고 馬廷亮을 총영사로 임명할 것을 결정했다. 우치다 고우사이는 일본이 한국과 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회수한 이상 각국은 공사관이나 영사관을 모두 철수해야 하고 그 권한과 사무를 모두 재일본 각국 공사관이나 영사관으로 이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은 중국상인들의 숫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한국에 총영사 한 명을 상주시켜 관리하겠다고 하여 2월에 일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sup>82)</sup> 중국은 주한공사를 철수하고 마정량을 제일 중국공사의 지휘를 받는 주한총영사로 임명하고 마정량이 부임할 때까지 오기조로 하여금 업무를 대신하게 했다.<sup>83)</sup>

1906년 6월 주일중국공사관의 참찬이었던 마정량이 주한중국 총영사로 부임했다. 그는 부임한 뒤 1년동안 임무를 수행하면서 대한제국의 정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주로 중국상인들과 관련된 업무만을 처리했다.<sup>84)</sup> 마정량은 부산·원산 거류지에서 중국인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마정량은 1907년 4월에 부산 및 원산의 중국거류지를 시찰하고 통감부에 부산중국거류지 앞에 부설된 철도가 중국상인들이 중국거류지와 해변간 왕래를 방해하기 때문에 철도국의 거류지 앞 해변에 부두를 건설하는 것과 함께 철도를 횡단하는 도로를 새로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상세한 거류지 지도를 작성해야 하며 ‘조계장정’에 따라 지계와 지세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원산도 상세한 거류지 지도를 작성해야 하며 인천의 경우와 같이 지조액의 3분의 2를 준비금으로 두어 거류지내의 수리비로 충당해야 한다며 ‘조계장정’을 기정사실화하려 했다.<sup>85)</sup> 일본도 한국정부가 중국거류지에 관한 기득권을 오랫동안 승인한 이상 중국거류지의 존립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나 중국이 근거로 내세우는 기존의 장정과 지도까지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sup>86)</sup> 그런데 통감부는 ‘조계장정’은 총영사관과 통감부간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일단 책임을 회피했지만 “규율없는 상태를 존속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불편함이 많다”며 중국거류지의 근거를 설정이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인지했다.<sup>87)</sup>

1909년 3월에서 4월에 중국거류지를 재설정하기 위한 중일간에 협의가 이루어졌다. 논의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거류지내에서의 경찰권 행사문제와 영대차지권의 토지소유권으로의 변경문제였다. 중국은 교섭을 하면서 각국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통감부는 처음에는 완강한 입장을 견지했으나 만주 및 간도문제를 보다 더 중시한 본국정부의 훈령에 따라 결국 중국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sup>88)</sup> 중국거류지의 법적 지위가 완전히 정해지는 것은 1910년 3월 11일에 『仁川釜山及元山清國居留地規程』에 의해서이며 1910년 4월 통감부고시 제51호로 공포되었다.

1910년 8월 29일 조선총독부는 ‘한국병합’과 동시에 조선총독부는 1910년 8월 29일 제령 제2호

82) 『관계사료』 9, 6243~ 6244, 6251쪽.

83) 『관계사료』 9, 6243~ 6244, 6251쪽.

84) 이영옥, 2007, 앞의 글, 8쪽.

85) 박준형, 앞의 글, 207쪽.

86) 『거류지관계서류』 1908년 2월 10일 機密 제7호.

87) 「在仁川釜山元山清國專管居留地ニ關スル日清交渉一件」 1908년 10월 22일 機密統發 1395호.

88) 박준형, 앞의 글, 19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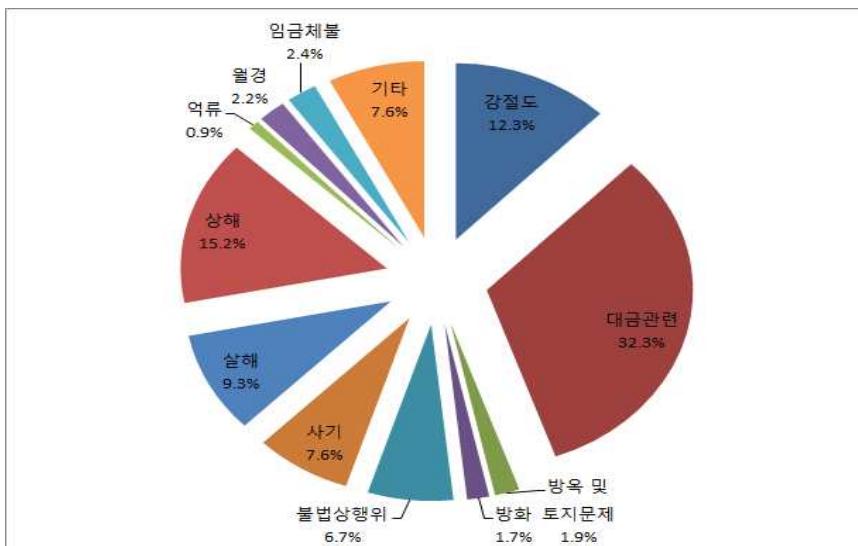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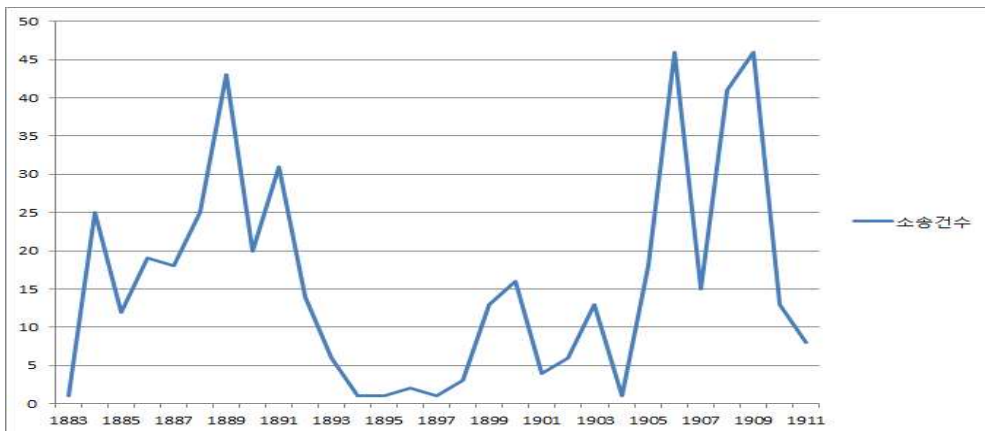




## 6. 맺음말

소송사건의 연도별 추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도표1>이고 소송사건의 종류별 비율을 알 수 있는 것이 <도표2>이다. 소송사건의 추이는 일정한 경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특정연도에 집중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은 추후의 연구과제로 돌려야 할 것 같다. 전체 소송사건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대금관련이 3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상해, 살해, 강절도, 사기, 불법상행위, 임금체불, 월경, 방옥 및 토지문제, 방화, 억류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해, 살해, 강절도 등도 경제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소송사건은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로 발생했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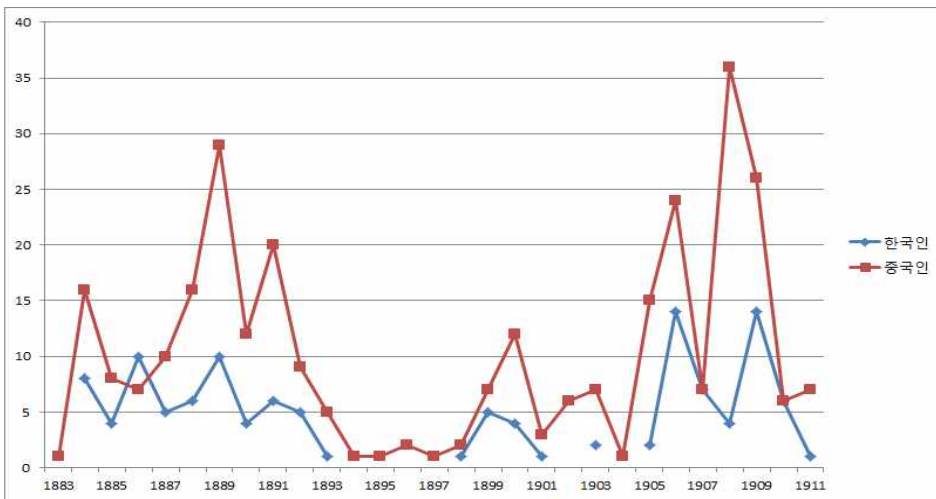
<도표1>소송사건의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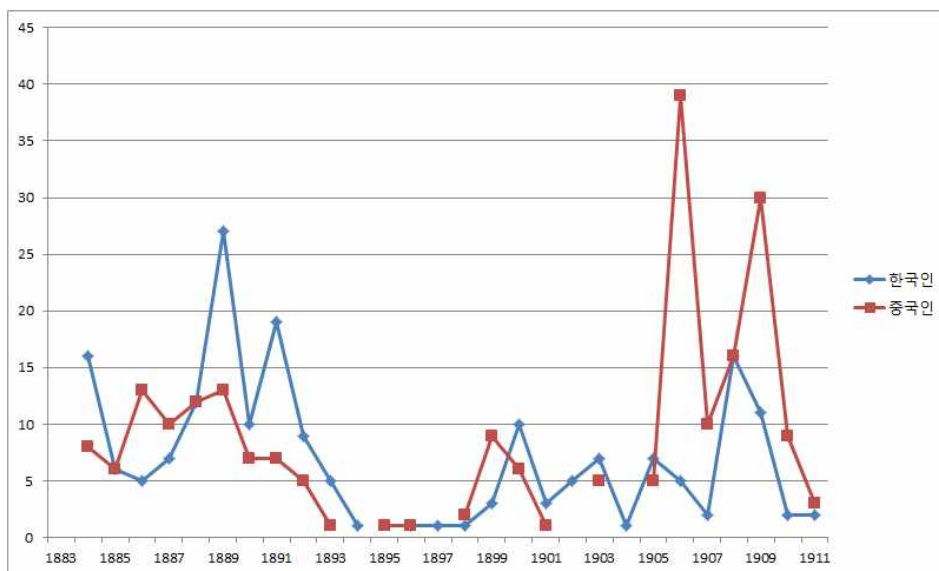
<도표2>소송사건의 종류별 비율

일본인을 비롯한 서양인도 있긴 하지만 자료의 성격상 대부분 한국인과 중국인이 관련되어 있다. 원고(피해자) 가운데 중국인과 한국인만을 표기한 것이 <도표3>이고 피고(가해자) 가운데 중국인과 한국인만을 표기한 것이 <도표4>이다. 근대시기 한중관계는 정치사의 입장에서 크게 네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소송사건의 경우는 경제적인 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상황과 밀접한 관련성은 없다. 중국의 영향력이 강했던 시기조차도 원고(피해자)는 한국인 보다 중국인이 많았다. 피고(가해자)의 경우는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했던 시기에는 한국인이 더 많았고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했던 시기에는 오히려 중국인이 많았다. 따라서 정치적 영향력을 중시했던 종래의 견해는 소송사건의 경우는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도표3> 한국인과 중국인 원고(피해자)의 추이



<도표4> 한국인과 중국인 피고(가해자)의 추이



이하 본 학술대회의 의미에 대해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본 학술대회를 통해 『駐朝鮮使館檔』을 학계에 널리 알림으로써 한중관계사 연구에서 『淸季中日韓關係史料』 및 『淸案』과 더불어 중요한 자료로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駐朝鮮使館檔』에는 『淸季中日韓關係史料』 및 『淸案』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소송안건이 전체의 1/3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한중관계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를 활용할 경우 한중관계사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 『淸季中日韓關係史料』 및 『淸案』의 경우도 소송과 관련된 문건이 일부 존재하지만, 양국정부의 외교상 왕래 문건인 照會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稟帖·上諭·奏疏·函札·咨文·報告 등과 같은 풍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본 학술대회를 통해 『駐朝鮮使館檔』이 학계에 널리 알려져 활용된다면 소송뿐만 아니라 근대 한중관계 전반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淸季中日韓關係史料』 및 『淸案』은 청일전쟁 이전시기의 자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駐朝鮮使館檔』 소송사건은 청일전쟁의 이전자료가 51%이고 청일전쟁 이후자료가 49%로 균형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의 시기별 분포를 감안할 때, 『淸季中日韓關係史料』 및 『淸案』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근대 한중관계사 연구가 청일전쟁 이전시기 특히 원세개를 중심으로 하는 분석 연구가 중심이었다면, 『駐朝鮮使館檔』을 활용할 경우 근대 한중관계사의 연구를 청일전쟁 이후 시기까지 심화·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주제를 <『駐朝鮮使館檔』의 ‘소송안건’을 통해 본 근대 한중관계>로 설정하고 이 주제와 관련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사 연구자와 중국사 연구자가 한 자리에 모아 발표 및 토론을 하게 함으로써 의미있는 연구성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과거에 대한 철저한 성찰적 역사상을 구축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미완)



## <근대시기 한중관계와 소송사건> 토론문

손승희(인천대)

### ○ 논문의 의의

1. 기존의 화교 관련 연구가 주로 중국사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중국측 입장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본 논문은 한국측의 입장과 견해도 반영하여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과 한청통상조약의 체결 과정, 당시의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2. 기존 연구성과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고종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노력했다거나 갑신정변 이후 한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러밀약을 단행했다는 기존의 통설에 대해, 이는 근거가 없고 오히려 고종을 비롯한 조선의 집권층은 전통적 조공체제에 입각하여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자 했다는 등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3. 중국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중국인이 한국인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었다는 한국사 연구자들의 연구성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기존의 한중 소송연구가 주로 개항장에서의 중국인에 의한 한국인의 피해사례 연구였는데 비해 본 논문은 그 반대의 경우, 즉 중국인 피해자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4. 기존의 소송 관련 연구는 특정시기에 한정되어 있는데 본 논문은 화상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1882년부터 청이 멸망할 때까지 전 시기를 망라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본 논문은 한중 소송사건을 각 시기별, 각 연도별로 통계를 내고 있고 이를 표와 도표로 작성함으로써 소송사건의 전체 추이와 그 변화상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도록 했다. 이러한 통계 작업은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크다.

### ○ 토론

1.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듯하다. 선생님께서는 소송 안건의 통계를 통해 각 시기별 중요 소송사건이 어떠했는지를 다루겠다고 하셨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명확하지 않다. 논문의 표제는 한중관계와 소송사건인데 분석은 한중관계에 집중되어 있고 소송사건은 표와 도표만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설명과 분석이 부족한 듯하다. 또한 이 양자 간의 유기적 관계 혹은 연관성이 논문에 잘 나타나 있지 않다. 물론 맺음말에서 소송사건의 추이는 일정한 경향성이 존재하지 않고 특정 연도에 집중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은 추후의 과제로 남기셨다. 그러나 상세한 분석은 추후에 하더라도 소송사건이 각 시기별로 어떤 양상을 띠며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이것이 그 시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분석이라도 있다면 논문의 완성도는 훨씬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2. 기존연구 성과에 대한 파악이 미진한 듯하다. 머리말에서 열거하신 논문 이외에 <<주한사관당안>>을 이용한 연구로 손승희의 <채무소송으로 본 화상의 상관행

(1906~1910)-이주공간 한성을 중심으로>(동북아역사논총36)와 유창의 <19세기 80-90년대 한성의 산동상인-“주한사관보존당안”을 통해 본 한성에서의 산동상인>(한국학논집49)이 있다. 특히 손승희의 논문은 기존 소송연구가 주로 치외법권으로 접근하다 보니 한국인의 피해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비해 중국인 피해자의 소송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선생님의 문제의식과 비슷하다. 또 선생님의 논문에서 전체 소송사건을 종류별로 보면 대금관련이 32.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이 논문은 채무소송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더욱이 한중관계 소송에 대한 연구성과를 망라하고자 한다면 이 두 편의 논문도 포함시켜야 할 것 같다.

3. <주한사관당안>의 성격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당시 한성에 거주하던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서양인의 소송안건을 총망라한 것이라기보다는 중국인이 자신의 피해상황을 주한사관에 제기한 소송안건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중국인 피해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한국인 피해자가 한국정부에 소송을 제기하면 주한사관에 조회를 하는데, 이 때 발생한 당안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 또 한국인 피해자가 주한사관에 직접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보다는 중국인이 제기한 소송이 훨씬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중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반드시 한국인이 가해자라고 볼 수 없다. 중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중국인이 가해자인 경우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다. 즉 한성의 중국인 중에는 상인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의 상업활동 중에서 발생한 중국인 간의 소송도 많았다는 것이다. 소송에는 항상 상대방이 있고 한성에는 중국인, 일본인, 서양인이 잡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최소한 몇 가지 조합이 가능하다. 선생님처럼 가해자와 피해자만을 민족별로 나눈다면 그 피해가 누구에 의한 피해인지 알 수 없고 반드시 한국인과 중국인의 갈등이라고 볼 수 없다. <주한사관당안>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한국인과 중국인 간의 소송, 중국인과 중국인 간의 소송, 중국인과 일본인(혹은 서양인) 간으로 나누고 그중에서 한국인과 중국인 간의 소송을 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4. 표는 사건의 종류별 추이와 그 비율을 따로 작성하셨는데 둘을 합쳐서 하나로 작성하는 것이 일목요연하지 않을까 싶다.

# 1884년 漢城 ‘崔藥局命案’의 추이를 통해 본 한중관계

## (1884년 ‘崔藥局命案’의 解體와 再編)

### 田保橋潔의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권인용

머리말  
 I. 살인사건의 追跡  
 II. 필화사건으로의 轉化와 한중관계의 긴장  
 맺음말

## 머리말

1884년 1월 2일(양력 1월 29일)<sup>1)</sup> 二更을 조금 넘긴 깊은 밤이었다. 조선의 都城 漢복판에서 들연 몇 발의 총소리가 울렸다. 鐘路 일대의 한 약국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었다. 충격적인 소식은 바로 그 다음날 발행된 『漢城旬報』 제10호의 제3면에 「華兵犯罪」란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되었다.

어젯밤 중국 병정이 鐘路 廣通橋 옆 藥舖에 갔는데, [주인과는] 서로 면식이 있는 관계로서 [그 동안] 약재를 사 갔으나 값을 제대로 치루지 못한 바가 많았다. 藥舖의 주인이 약을 가지러 안으로 들어간 사이에 주인의 아들이 앞서의 약값도 갚지 않았는데 다시 와서 귀찮게 한다고 타박하였다. 서로 말을 주고받다가 욕설까지 나오게 되자 분을 참지 못한 병정이 갑자기 권총을 발사하여 주인의 아들이 사망하였다. 주인이 안에서 나오자 병정은 당황한 나머지 손가락이 저절로 미끄러진 듯 다시 한 발을 쏘아 주인을 쓰러뜨렸고, 병정은 달아났다. 왓자지껄 소식이 전해지자 이웃 사람들이 모두 모였는데, 두 사람의 시신을 어찌할 수도 없어 급히 官府에 알렸다. 날이 밝자 중국의 軍陣으로부터 급히 말을 탄 병사들이 끊임없이 와서 현장을 직접 조사했고, 또 각 陣營에서 그날로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사망으로 사람을 보내 탐색하였다. [사건 발생] 다음날 주인은 소생하여 다행히 살아났으나, 범인은 아직 잡지 못하여 각 陣에서 현상금을 걸고 체포하려 하고 있으니, 조만간 붙잡으면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다. 중국의 병정은 대부분 사망에서 모집하여 부대를 편성해서 오래전부터 사기가 높고 군율이 엄정한데 이러한 의외의 변고가 생겼다. 다행히 각 진에서 법에 의거하여 통제하고 방비가 평소 엄격하니 성 안은 평안하고 군민은 편안하다.<sup>2)</sup>

1) 이하 괄호 없이 붙인 날짜는 모두 음력을 기준으로 하였다.

2) “昨夜中國兵丁往鐘街廣通橋側藥舖，其素相識也，質用藥料，多有虧欠，藥舖主人入內取藥之際，主人之子以前債未清，又來纏繞責之，問答之際，至發辱罵，兵丁忿愧不勝，遽發手銃，主人之子死，主人自內而出，兵丁倉皇之際，手勢熟滑，又發一銃，主人仆地，兵丁逃走，喧鬧相傳，隣舍畢集，二人伏尸，而無處

그로부터 8일 뒤인 1월 11일(양력 2월 7일) 발행된 『漢城旬報』 제11호의 제3면에 「華兵懲辦」이란 題名 하에 다음과 같은 후속기사가 게재되었다.

日前에 중국의 軍陣에서 체포하려 한 살인범 중국 병사 3명이 붙잡혀 참수되고 그 머리가 孝經橋 입구에 걸리니, 군기가 엄정해서 병사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sup>3)</sup>

결국 1884년 설날 바로 다음날 밤에 漢城의 한 약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당시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淸軍의 병영에서 소속 부대원 3명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자체적으로 처형함으로써 범행이 일어난 지 약 일주일 만에 사실상 종결되었던 셈이다. 다만 여기까지는 아직 사건의 제1막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 ‘崔藥局命案’<sup>4)</sup>은 실은 한국근대사 특히 한국근대언론사에서 비교적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역사적 사건으로 유명하다.<sup>5)</sup> 史上 최초로 신문기사의 내용에서 촉발된 필화사건의 직접적 계기가 바로 이 命案이었기 때문이다. 즉, 살해범 3명이 처형되면서 일단락 된 것 같았던 이 사건은 그 후 ‘의외’의 국면으로 전개된다. 淸側에서는 『漢城旬報』 제10호와 제11호의 상기 기사에서 범인을 ‘華兵’ 즉 중국 병사로 단정했는데,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그 증거 제시를 요구하였다. 淸이 조선에게 사실상 일련의 외교적 압박을 가했던 것이다. 결국 일개 살인사건이 한중간의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된 일대 필화사건으로 증폭되었다. 본 사건의 제2막이었다.

기존의 관련 연구는 ‘崔藥局命案’의 제1막과 제2막을 모두 다루고 있다. 필화사건의 경과를 물론 그 前史에 해당하는 살인사건까지 포괄하는 것은 그 전말을 이해하기 위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일부 연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뒷이야기’ 즉 幕後까지 언급한다. 근자에 나온, “신문을 펼쳐 역사의 흐름을 읽는다”라는 부제를 붙인 개설서인 『1면으로 보는 근현대사』가 대표적이다. 즉, 저자는 첫 번째 분석 대상으로 『漢城旬報』 제10호의 기사를 전재한 뒤에 이에 대한 간단한 해설을 올렸는데, 배경 설명 뒤에 다음과 같이 첨언하였다.

이 기사에는 뒷이야기가 있다. 사건 보도 후 두 달이 지난 뒤 청나라 北洋大臣 李鴻章이 조선 정부에 ‘청국에 무례를 범했다’고 항의서한을 보냈다. 조선에 대한 우선권을 내세우던 청나라가, 조선 병탄의 야욕을 드러내던 일제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때 맞춰 한성에 거주하던 청국인들이 신문발행처인 博文局을 습격했다. 그 결과 신문 창간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이 기사를 썼던 일본인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는 일본으로 돌아가야

究詰, 火急報知官所, 天明自中陣飛騎絡繹, 親審形止, 又自各陣當日大加查覈, 四發譏探, 翌日主人復甦, 幸得生活, 而獲犯姑未懲辦, 諸陣懸賞購捕, 行當得獲不日, 將伸法矣, 中國兵丁, 多半是招募四處, 編成軍伍, 殺威已久, 紀律申明, 而有此意外作變, 幸賴諸陣駕馭有法, 防閑素嚴, 城郊晏若, 軍民相安矣.” 『漢城旬報』 第十號, 「華兵犯罪」

- 3) “日前自華陣譏捕殺人犯罪之華兵得三名, 斬首, 懸之孝經橋頭, 紀律肅然, 軍伍知戢矣.” 『漢城旬報』 第十一號, 「華兵懲辦」
- 4) 필자가 활용한 자료에서는 ‘崔宅英藥局命案’, ‘崔姓藥局命案’, ‘藥局命案’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필자는 이하 이를 ‘崔藥局命案’으로 통일시켜 사용하려 한다. 즉 崔는 사건이 일어난 藥局의 소유주인 崔宅英의 姓이고, 命案은 살인사건을 가리키는 역사용어이다. 결국 ‘崔藥局命案’은 崔宅英 소유의 藥局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란 의미이다.
- 5) 국내의 대표적인 연구서로는 최준, 『韓國新聞史』, 일조각, 1960; 同氏, 『韓國新聞史論考』, 일조각, 1976 등이 있다.

했다. 말하자면 한국언론사 최초의 ‘필화사건’으로 번진 것이다.<sup>6)</sup>

결국 이 命案은 단순한 살인사건의 범위를 뛰어넘어 당시 한중관계에 일대 긴장국면을 조성한 외교현안으로 직결된 필화사건으로까지 전화되었다. 특히 일본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 확장에 제동을 거려는 청국의 적극적 개입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당시 동아시아 국제관계사에서도 상당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sup>7)</sup>

이처럼 자못 중대한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제1막과 제2막 및 幕後譚까지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기존의 연구가 여전히 극히 개략적이고 제한적이며 부정확한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sup>8)</sup> 무엇보다 專論 형태의 본격적인 연구논문 1편도 아직 나오지 않은 형편이다.<sup>9)</sup> 이는 본 건이 한국근대 언론사에서 최초의 필화사건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역사적 위상을 감안하면 의외의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 주된 요인은 무엇보다 정작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제한<sup>10)</sup>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은 자료의 한계에 일대 돌파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료가 바로 『淸季駐韓使館檔案』<sup>11)</sup>이다. 그 가운데 總辦商務委員 陳樹棠 재임 시기의 訴訟 안건 제10호 「朝漢城藥局崔宅英命案辦理卷(1)」과 제11호 「朝漢城藥局崔宅英命案辦理卷(2)」가 이 사건에 관련된 문건들을 집중적으로 수록하고 있는데, 전자는 8쪽 후자는 120쪽이니, 모두 128쪽의 방대한 분량에 달한다.

기존의 관련 연구에서 가장 대표적이며 아직까지 그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田保橋潔의 저서 『近代日鮮關係の研究』 上卷(朝鮮總督府中樞院, 1940) 속의 해당 내용이다. 비록 한 단락에 그치고 있지만,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사건의 전모에 관한 설명이 자못 상세하다. 특히 근대 한중관계에 관한 대표적 개설서에서 아직도 많이 인용<sup>12)</sup>하고 있을 정도로 이후 연구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심지어는 그가 정리한 대부분의 내용이 通說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정밀한 검증은 한 번도 진행된 바 없었다. 이에 필자는 저자가 참고한 모든 자료는 물론 그가 활용한 적 없는 『檔案』 속의 관련 문건을 근거로 그 진위 여부를 철저히 살펴보고자 한다. 다보하시가 정리한 ‘崔藥局命案’을 解體해서 원점으로부터 다시 접근하여,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며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는 再編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의 실체 복원에 한 걸음 다가가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당시 한중관계의 면모를 재고하는 한편 ‘崔藥局命案’에 관한 후속의 심화연구로 이어지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6) 김홍식 기획, 김성희 해설, 『1면으로 보는 근현대사』, 서해문집, 2009, 14쪽. 다만 여기서 博文局 습격은 1884년 10월 17일에 일어난 갑신정변 때의 일이고, 井上角五郎이 귀국한 것은 5월의 일이기 때문에 시간의 선후관계가 바뀌었다. 한편 李鴻章의 항의서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別稿에서 詳論할 것이다.

7) 한편 이와 같은 역사적 의미 외에도 사안 자체가 상당히 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주제를 가지고 1996년 3월 29일 KBS에서 ‘최초의 필화사건-최약국의 총소리’라는 제목의 「역사추리」가 방영된 것은 결코 우연은 아닐 것이다. 물론 그 내용이 개략적인 소개와 부정확한 묘사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여건상 어쩔 수 없는 한계였다.

8) 구체적인 문제점은 본문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9) 박정현은 「1882-1894년 조선인과 중국인의 갈등 해결방식을 통해 본 한중관계」(『중국근현대사연구』 45, 2010)에서 여러 안건 가운데 하나로 간략하게 거론한 바 있지만, 專論은 아니다.

10) 기존의 연구에서 활용한 史料는 井上角五郎의 『漢城之殘夢』, 『舊韓國外交文書』(=『淸案』)에 수록된 4건의 公文과 2건의 告示 및 『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 속의 일부 자료 정도였다.

11) 이 자료에 대해서는 김희신이 상세하고도 요령 있게 정리 및 소개한 바 있다. 김희신, 「근대 한중관계의 변화와 외교당안의 생성 - 「淸季駐韓使館保存檔」을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50, 2011.

12) 권혁수, 『19세기말 한중관계사연구』, 백산자료원, 2000, 141쪽.

## I. 살인사건의 追跡

田保橋潔는 『近代日鮮關係の研究』에서 ‘崔藥局命案’의 전모를 다음과 같이 개괄하였다.

明治17년 1월 29일(甲申年 正月 2일) 淸兵 3명이 漢城府 鐘路 大通廣橋 崔宅英 藥局에 들어가 인삼을 구매하였다. 그들은 負債가 많았기 때문에 崔宅英 아들이 이를 독촉하자 격노한 淸兵이 권총을 난사하여 崔宅英에게 중상을 입히고, 同人의 아들을 즉사시켰다. 統理衙門은 바로 提督 吳長慶에게 照會를 보내 범인의 체포와 처벌을 請求하였지만, 吳提督은 이에 同意했으면서도 감히 범인의 체포에 힘쓰지 않았다. 곧 통리아문에 附屬하는 博文局에서 발행하는 漢城旬報에 이 사실을 게재하고, 또 淸兵의 군기 문란을 비난하였다. 이 기사가 우연히 李鴻章이 注意하는 바가 되어, 總辦朝鮮商務 陳樹棠에게 訓令하여 사실을 查辦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吳提督과 陳道가 크게 당황하여 崔宅英 살해 범인은 실로 淸兵의 冠服을 冒穿한 朝鮮人이라고 칭하고, 漢城旬報가 官報로서 風聞을 轉載한 과실을 논하고, 博文局員의 查辦을 요구하였다. 統理衙門은 극력 釋明에 노력하였고, 또 사실상의 책임자인 博文局 主事 井上角五郎은 淸兵의 迫害에 생명의 위험을 느껴 자발적으로 辭職하고 귀국하였기 때문에 무사히 해결하였다.<sup>13)</sup>

주지하는 바와 같이, 田保橋潔의 위 저서는 근대 동아시아 외교사 연구에 기념비적인 성과이다. 특히 방대한 제1차 자료를 섭렵한 토대 위에서 엄밀한 실증주의에 입각하여 서술한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적어도 본 사건에 관하여 위 인용문에서 정리한 내용은, 유감스럽게도, 한 문장도 그대로 넘기기 어려울 정도이다.

우선 “明治17년 1월 29일(甲申年 正月 2일) 淸兵 3명이 漢城府 鐘路 大通廣橋 崔宅英 藥局에 들어가 인삼을 구매하였다”는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사실 관계에서 분명한 오류를 범하였다. 우선 약국이 소재한 종로의 ‘大通廣橋’는 ‘大廣通橋’의 오기인데, 단순한 실수일 수 있으므로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다. 다음, 본 사건의 진상이 끝내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범인을 ‘淸兵 3명’으로 단정하기보다는, ‘淸兵으로 추정되는 3명’ 정도로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겠지만, 필자도 淸兵 3명이 진범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보는 만큼 이 부분도 일단 넘기기로 하자. 문제는 그들이 약국에 들어가 ‘인삼을 구매하였다’는 언급인데, 과연 그러한지 아래에서 그 근거를 추적해보도록 하겠다.

田保橋潔는 위 인용문의 한 문장마다 주석을 달아 그 근거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단락 끝에 본인이 참고한 자료를 한꺼번에 소개하였는데,<sup>14)</sup> 필자가 확인해본 결과 제시된 자료들 가운데 ‘인삼 구매’ 이야기가 나온 것은 『漢城之殘夢』이 유일하다. 즉, 井上角五郎은,

京城 각처에 약을 판매하는 상인의 점포를 열었는데, 이를 藥局이라 칭한다. 어느 날 밤

13) 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の研究』 上卷, 朝鮮總督府中樞院, 1940, 892-893쪽.

14) 『統理交涉通商衙門日記』 (= 『統署日記』) 卷2의 甲申年 3월 25일과 4월 2일의 두 기사, 『華案』 (= 『淸案』) 卷3의 光緒 10년 3월 18일 「淸商務總辦陳樹棠照會」·3월 24일 「督辦交涉通商事務金弘集照覆」·3월 26일 「淸商務總辦陳樹棠照會」·4월 9일 「督辦交涉通商事務金弘集照覆」의 네 장의 공문서, 『漢城旬報』 제10호 「華兵犯罪」와 제11호 「華兵懲辦」의 두 기사 그리고 井上角五郎의 『漢城之殘夢』 등이 田保橋潔가 제시한 모든 자료이다. 다만 여기서 督辦交涉通商事務 ‘金弘集’은 저자의 착각으로서 마땅히 ‘金炳始’로 정정해야 한다.

支那 병사 아무개가 약국에 들러 인삼을 구매하고서는 그 값을 치르지 않자 주인이 강하게 [결산을] 요구하니, 支那 병사가 도리어 격분하여 피스톨로 바로 주인을 쏘아 살해하였다. 피해자의 아들이 원통함을 참지 못하고 이를 조선 官吏에게 제소하였다.<sup>15)</sup>

라 하였는데, 田保橋潔가 이 자료에 근거하여 기술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購買’가 완료인지 미완의 행위인지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 대상이 인삼인가부터가 무척 회의적이다.

앞의 『漢城旬報』 기사에서는 구매물품을 ‘藥’이라고만 기술하였는데, 이를 이노우에 가쿠고로는 위 인용문에서 인삼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漢城之殘夢』의 기술이 모두 믿을만한 근거에 입각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자기 과시와 과장된 부분이 적지 않음<sup>16)</sup>은 물론 개인적 기억 내지는 불완전한 메모 수준에 의거했을 것으로 보이는 서술이 많은 것 같다. 예를 들어, 위 인용문의 내용 가운데에서도 그 신빙성에 여러 의문이 있지만, 특히 중국 병사가 약국 주인을 총으로 쏘아 죽이자 그 아들이 제소했다는 서술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sup>17)</sup> 이 서술 내용은 앞에서 인용한 『한성순보』 제10호의 기사, 즉 중국 병사가 실랑이 도중에 약국 주인의 아들을 총으로 죽이고, 그 주인도 쏘아 쓰러뜨렸지만 주인은 그 다음날 극적으로 소생했다는 얘기와 완전 배치된다. 더구나 이노우에 스스로 “저 기사는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筆記한 것이니, 책임은 실로 나 한 사람에게 있다”<sup>18)</sup>고 당당하게 言明한 바 있는데, 이는 자기가 쓴 기사의 핵심 내용을 스스로 부정한 셈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살인범이 ‘구매’한 구체적 물품은 본 사안에서 상대적으로 부차적 사항이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를 잘못 기억할 수는 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살인사건에서 누가 죽고 누가 살아남았는지를 착각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살인사건의 줄기에 해당하는 피해자 사망 여부를 정확하게 기억했다 해도 사안의 가지에 해당하는 구매한 물품을 기억하는 데 자칫 실수할 수는 있는 법이므로 이를 논거로 사용할 때에는 마땅히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다보하시 기요시는 위 저서에서 그 이유를 한 마디도 밝히지 않은 채 이노우에의 기억 가운데 줄기는 버리고 가지만 취했다. 그렇다면 실상은 과연 어떠했을까?

『清季駐韓使館檔案』(이하 『檔案』으로 줄임)의 관련 자료를 보면 이에 대한 언급이 다수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光緒 10년(1884) 1월 25일 淸國의 總辦商務委員 陳樹棠<sup>19)</sup>이 北洋大臣 李鴻章에게 보낸 稟文에서 사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중국인 3명이 淸心丸을 사러 왔다”<sup>20)</sup>고 보고하였다. 특히 사건 발생 직후인 同年 1월 6일에 확보한 증인의 供述 가운데

15) 井上角五郎, 『漢城酒殘夢』(韓國學文獻研究所編, 『舊韓末日帝侵略史料叢書 7, 政治篇 7』, 亞細亞文化社, 1984) 235쪽. 참고로, 인용문에서 대괄호는 인용자가 문맥에 맞게 부연한 것이다. 이하 동일.

16) 한상일은 『漢城之殘夢』에 대한 해설에서 이노우에의 자기 과시와 과장을 지적한 바 있다. 한상일 역·해설, 『서울에 남겨둔 꿈』(단국대학교출판부, 1993) 3쪽.

17) 현재 『漢城之殘夢』의 번역본은 두 종류가 있다. 신영길 역, 『이노우에 가쿠고로의 조선조 망국 전야기』(지선당, 2008)와 한상일 역, 『서울에 남겨둔 꿈』(단국대학교출판부, 1993)이 바로 그것인데, 피해자 얘기 가운데 아들이 원통함을 참지 못하고 조선 관리에게 제소했다는 부분이 후자의 번역에서는 완전히 누락되어 있다. 한편 이노우에의 오해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18) 井上角五郎, 『漢城酒殘夢』, 236쪽.

19) 廣東 출신의 陳樹棠은 일찍이 미국에서 10년 간 商務에 종사하며 巨富가 되었다. 1882년 말에 李鴻章의 命으로 朝鮮을 방문하여 商務를 살폈으며, 漢城에서 高宗을 알현한 적도 있었다.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이 체결된 지 약 1년 후인 1883년 10월 20일에 陳樹棠은 總辦商務委員으로서 漢城에서 정식으로 임무를 개시하였다. 이후 朝鮮에서의 활동을 포함한 陳樹棠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은 權赫秀, 『陳樹棠在朝鮮的商務領事活動與近代中朝關係』(『社會科學研究』 2006-1)을 참고하라.

20) “忽聞於正月初二晚二更後, 漢城內大廣通橋東隅, 土人藥局崔姓家, 被人入屋傷斃事主一案, 後訪知此藥局爲崔宅英家, 是夜(二更)後, 有華人三名, 來買淸心丸” 『朝漢城藥局崔宅英命案辦理卷(1)』, 『清季駐

17세의 점원 朴龍石은, “어딘가에서 중국인 3명이 [약국으로] 들어와 ... 淸心丸을 사고 싶다고 말하였다”<sup>21)</sup>고 하였고, 역시 증인이자 동료인 32세의 安業同은 “중국인 3명이 [약국에] 와서 淸心丸을 사려한다고 하였다”<sup>22)</sup>고 진술하였다. 이들 증인의 증언 내용 가운데 범인을 중국인으로 지목한 것 등은 후에 淸側이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만큼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구매물품이 淸心丸임을 증인들이 굳이 거짓으로 공술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는 陳樹棠이 사후에 확인하여 李鴻章에게 보고한 바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범인들이 약국에서 구매하려 한 약품은 인삼이 아니라 淸心丸이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다보하시는 미처 이 자료들을 보지 못했고, 공교롭게도 그가 본 자료 가운데 이에 관한 언급도 없었다. 따라서 그가 이노우에의 기억에 의거하여 구체적 물품을 오해한 것을 그의 잘못이라 규정한다면 사실 이는 각박한 일이다. 제1차적 책임은 얼마든지 확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인 내지 착각한 이노우에가 져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문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본 안전의 언저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간단한 사실 확인을 하는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다음에 다보하시는 인용문 가운데 “그들은 負債가 많았기 때문에 崔宅英 아들이 이를 독촉하자 격노한 淸兵이 권총을 난사하여 崔宅英에게 중상을 입히고, 同人의 아들을 卽死시켰다”는 두 번째 문장을 검토한다. 여기서는 두 가지 사항을 집중 점검하려 한다. 제1의 문제는 사건의 줄기에 해당하는 피해자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다보하시는, “약국 주인이 죽고 그 아들이 제소했다”는 이노우에의 ‘기억’을 취하지 않고, 약국 주인이 중상을 입고 그 아들이 죽었다는 『한성순보』 제10호의 기사를 遵用<sup>23)</sup>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적절한 판단이었다. 즉, 앞의 李鴻章에게 보낸 陳樹棠의 稟文에서, “해당 중국인이 곧 연달아 洋銃을 발사하고 ... 칼로 찔러 [崔宅英의 아들 寄一이]란 자가 땅에 쓰러졌는데 다음날 새벽에 사망했고, 宅英 역시 銃傷을 입었다”<sup>24)</sup>란 언급이 있다. 또 증인 朴龍石은 위 공술에서, “중국인이 갑자기 鳥銃을 발사하여 老主人(=崔宅英)이 혼절하여 쓰러지고, 少主人 寄一 또한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키는 순간 중국인이 다시 총을 발사하자 寄一이 총알에 맞아 끝내 사망하였다”<sup>25)</sup>고 하였다. 그 외에도 다수의 자료에서 비록 세세한 묘사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 해도, 일관되게 약국 주인 崔宅英이 중상을 당하고 그 아들 崔寄一이, 비록 ‘즉사’라고 할 수는 없다 해도, 사망한 점은 일치하고 있다. 결국 『한성순보』의 기사를 ‘책임 집필’ 했다고 豪言한 이노우에가 후에 스스로 사망자 주인 아들에서 주인으로 바꾸고 심지어는 그 아들이 제소하기까지 했다고 말했지만, 이는 명백히 그가 잘못 기억한 탓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문장에서 점검할 제2의 문제는 살해의 이유이다. 이에 대하여 다보하시는 누적된 채무에 따른 변제 독촉이라는 현장에서의 언쟁을 그 촉발 원인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한성순보』 제10호의 기사와 부합한다. 반면에 이노우에는 앞의 인용문에서 중국의 병사들이 ‘인삼’

韓使館檔案』(01-41-012-10), 陳樹棠 訴訟 10, 3쪽. 원문에서 괄호는 비록 韃靼 등의 이유로 원 문서 자체로는 확인할 수 없는 글자지만, 앞뒤의 문서에 근거하여 인용자가 추정하여 채워 넣은 것이다. 이하 동일.

21) “何許華人三人入來, 一人房中, 二立廳上, 以華言請買淸心丸” 『朝漢城藥局崔宅英命案辦理卷(2)』, 『淸季駐韓使館檔案』(01-41-012-11), 陳樹棠 訴訟 11, 116쪽.

22) “華人三人來到, 願買淸心丸” 위의 자료, 117쪽.

23) 다보하시는가 참고한 다른 문서 자료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언급이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漢城旬報』 제10호 기사가 유일한 근거라 할 수 있다.

24) “該華人即(連)放洋(鎗)...用刀刺殺宅英之子名寄一倒地, 至次早斃命, 宅英亦被鎗傷” 『朝漢城藥局崔宅英命案辦理卷(1)』, 『淸季駐韓使館檔案』(01-41-012-10), 陳樹棠 訴訟 10, 3쪽. 원문에서 줄임표는 근거할 만한 것이 없어 현재 확인할 수 없는 글자들을 의미한다. 이하 동일.

25) “華人忽放鳥銃, 老主人昏倒, 少主人寄一亦爲驚惶起身之際, 華人又發銃丸, 寄一中丸, 而畢境殞絕” 『朝漢城藥局崔宅英命案辦理卷(2)』, 『淸季駐韓使館檔案』(01-41-012-11), 陳樹棠 訴訟 11, 116쪽.

을 구매하고는 그 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약국 주인이 강하게 결산을 요구하던 중 그 병사가 도리어 격분한 나머지 갑자기 총격을 가했다고 기술하였다. 결국 전자는 오랜 채무관계의 미결, 후자는 현장에서의 구매대금 미지급을 각각 총격의 원인으로 본 셈이다.

한편 이러한 차이는 그 후 한국의 연구자에게서도 혼용되고 있을 뿐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즉 최준은 『韓國新聞史』에서 앞의 『한성순보』 제10호 기사 원문을轉載한 뒤 “이와 같이 淸國 병졸이 물건을 사고도 돈을 내지 않을뿐더러 발포 살해까지 하였음을 보도”<sup>26)</sup>했다고 서술했다. 하지만 그 후 또 다른 저서인 『韓國新聞史論考』에서는 “한성순보는 淸兵이 藥을 사러 들어왔다가 이전 債務의 재촉을 받아 激憤한 후 店舖主의 子弟를 發砲殺害하고 逃走한 사건을 뉴우스화하여 보도하였다”<sup>27)</sup>고 하였다. 사실상 前說을 수정하고 다보하시와 동일한 관점을 취했지만, 문제는 단순한 신문 기사의 요약 소개 수준을 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다보하시를 포함한 연구자들이 이 문제에 관해 미처 보지 못한 『檔案』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이 주목된다. 먼저 陳樹棠은 李鴻章에게 보낸 위 稟文에서 “후에 탐방하여 알아낸 바는 이 약국은 崔宅英 집인데, 이날 밤 二更이 지났을 때 중국인 3명이 淸心丸을 사러 왔지만, 그 제품의 열악함에 불만을 품어 [서로] 분쟁이 일어났다”<sup>28)</sup>고 하였다. 즉 陳樹棠은 살인사건의 이유가 구매하려는 淸心丸의 제품에 대한 문제 제기로 촉발된 분쟁이었다고 보고하였던 것이다. 특히 증인 朴龍石은 공술에서 자못 상세한 설명을 한 바 있다. 즉,

이번 달 초2일 初夜에 주인 父子 및 동료 安業同과 함께 藥房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중국인 3명이 안으로 들어와 한 사람은 房 안에 있었고 두 사람은 마루 위에서 있었는데, 중국어로 淸心丸을 사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주인은 중국어를 알아들을 수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 丸藥을 꺼내어 封해 주면서 손님에게 제품을 선택하도록 하자 중국인이 모두 丸藥의 품질이 나쁘다면서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인이 답하기를, ‘이 것 외에 다른 丸藥은 없으니, 다른 약국에 가서 구하라’고 말하며 거절하자 중국인이 갑자기 조총을 쏘았습니다<sup>29)</sup>

라 진술하였다. 또 다른 증인인 安業同의 공술도 대동소이하었다. 즉,

중국인이 청심환을 사려하자, 주인 최택영이 먼저 청심환 1개를 꺼내어 보여주었지만, 품질이 나쁘다며 퇴짜를 놓으면서 더 좋은 것을 갖다 달라고 하였습니다. [주인이 이에] 다시 청심환 10개를 꺼내어 보여주었지만, 역시 품질이 떨어진다면 바꾸어줄 것을 요구하였

26) 최준, 『韓國新聞史』, 일조각, 1960, 19쪽. 다만 이 결론의 근거로 『한성순보』 제10호의 기사를 제시했지만, 이 기사는 사건의 원인을 오랜 채무관계로 인한 말다툼으로 보았기 때문에 적절치 못한 논거의 인용이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아마도 저자가 이노우에의 ‘기억’을 염두에 둔 나머지 서술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27) 최준, 『韓國新聞史論考』, 일조각, 1976, 23쪽.

28) “後訪知此藥局爲崔宅英家, 是夜(二更)後, 有華人三名, 來買淸心丸, 因嫌其品劣爭執 … ” 「朝漢城藥局崔宅英命案辦理卷(1)」, 『淸季駐韓使館檔案』(01-41-012-10), 陳樹棠 訴訟 10, 3쪽.

29) “今月初二日初夜, 與主人父子及同事人安業同同坐房中, 何許華人三人入來, 一人房中, 二立廳上, 以華言請買淸心丸, 而矣童莫曉其言, 主人能解華音, 旋取丸藥, 封而與之, 任其擇品, 則華人謂以俱是品劣, 更求優好者, 主人答曰, 此外更無他丸, 須向他處求之云而拒絕, 則華人忽放鳥銃” 「朝漢城藥局崔宅英命案辦理卷(2)」, 『淸季駐韓使館檔案』(01-41-012-11), 陳樹棠 訴訟 11, 116쪽.

다. 이때부터 다른 약국에 가서 사라는 뜻을 견지하며 주인이 거절했는데, 목소리가 조금 높아지자, 중국인이 그대로 10개의 丸藥을 강탈하면서 갑자기 조총을 쏘았습니다<sup>30)</sup>

라 공술하였다. 두 증인의 말에 미묘한 차이는 있을지언정 청심환의 품질에 불만을 품은 중국인과 주인 사이의 논란이 총격 사건의 직접적 계기였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sup>31)</sup> 말하자면, 사건 직후 받아들인 복수의 증인이 남긴 공술과 사후에 陳樹棠이 탐방하여 알아낸 살인사건의 계기는 공히 약품 대금의 미납 혹은 채납 문제가 아니라 약품의 질을 둘러싼 주인과 손님 간의 실랑이였던 것이다. 필자는 사건 바로 다음날의 신문 보도 내지 살인사건의 뼈대에 해당되는 내용마저 착각하는 이노우에의 불안정한 기억보다는 北洋大臣에게 올리는 陳樹棠의 보고 내용이라는 무게감과 무엇보다 사건 발생 며칠 후 朝鮮의 刑曹에서 받은 두 증인의 증인이 매우 생생하면서도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총격을 불러온 직접적 계기는 청심환의 품질에서 기인한 主客 사이의 말다툼 쪽이 보다 신빙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다보하시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을 일단 다음과 같이 바꾸어야 할 것이다.

明治17년 1월 29일(甲申年 정월 2일) 淸兵으로 추정되는 3명이 漢城府 鐘路 大廣通橋 부근에 위치한 崔宅英의 藥局에 들어가 淸心丸을 구매하고자 하였다. 주인인 崔宅英이 꺼내어 보여준 丸藥에 만족하지 못한 그들은 더 좋은 것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고 말았다. 실랑이 과정에서 분을 참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 淸兵이 돌연 총을 쏘며 칼을 휘둘렀고, 그 결과 주인은 중상을 당하고, 그 아들은 결국 사망하였다.

崔藥局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이상과 같이 수정·보완하는 선에서 본 장을 매듭짓고, 그 이후의 상황은 장을 바꾸어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다.

## II. 필화사건으로의 轉化와 한중관계의 긴장

‘崔藥局命案’에 관한 다보하시의 묘사에서 세 번째 문장 이하는 사실상 국면이 바뀌어 필화사건으로 전화 및 전개되는 부분에 해당한다. 前章에 이어 각 문장을 하나하나 분석하도록 한다.

앞의 인용문의 세 번째 문장에서 다보하시는 “統理衙門은 바로 提督 吳長慶에게 照會를 보내 범인의 체포와 처벌을 請求하였지만, 吳 提督은 이에 同意했으면서도 감히 범인의 체포에 힘쓰지 않았다”고 서술한 바 있다. 필자가 일일이 확인한 결과 이 서술에서 다보하시는 세세한 부분은 督辦交涉通商事務 金炳始가 陳樹棠에게 보낸 照覆의 내용에, 골격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노우에의 ‘기억’에 각각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는 단락을 바꾸어 제시하도록 한다.

30) “華人要買淸心丸, 主人崔宅英先出一箇而示之, 謂以品劣而却之, 期請品好者, 更出十丸示之, 則亦言其劣而更求, 於斯之際, 自爾相持往買他處之意, 主人拒絕, 不無語聲之稍高, 華人仍奪十丸藥, 忽發鳥銃” 위의 자료, 117쪽.

31) 다만 陳樹棠은 후에 이 총격사건을 ‘仇殺’로 의심한 바 있다. 즉 사건의 배후에 약국 주인 측과의 원한관계를 상정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別稿에서 서술할 예정이다.

먼저 이노우에는 살인사건 발생 후 조선 측의 조치와 중국 측의 대응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조선 政府는 곧 그[=수사 요청] 취지를 支那 兵營에 照會하였다. 그런데 兵營에서는 전혀 범인을 수색하는 기색도 없이 바로 照覆을 보내 답변하기를, ‘우리 중국 병사는 기율이 엄정하여 이러한 범인이 있을 리가 없다. 요컨대 조선인 혹은 타국인이 거짓으로 支那의 軍裝을 한 자의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 하여, 그 文辭가 매우 오만하였다.<sup>32)</sup>

즉, 조선 政府<sup>33)</sup>가 중국의 兵營에 공문을 보내 살인범 색출에 협조를 구하였지만, 중국 병영에서는 범인을 수색하는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은 채 즉각적으로 매우 오만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비외교적’인 공문을 보내 淸兵의 범행 가능성을 원천 부정하였다는 내용이다. 결국 다보하시의 세 번째 문장에서 중국 兵營에서의 公文 受·發者가 提督 吳長慶이고, 범인 색출 요구에 일단 吳長慶이 동의했다는 이상의 두 가지 점을 제외하면, 큰 줄거리는 이노우에의 기억에 의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 점인데, 이에 관해서는 『舊韓國外交文書』 제8권(= 『淸案(1)』)에 「博文局旬報所載의 淸兵殺人事件의 誤報에 關한 回答」이라는 제목을 붙인 공문 즉, 金炳始가 陳樹棠에게 高宗21년 3월 24일(서기 1884년 4월 19일)에 작성한 아래의 照覆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조선] 정부에서 공문을 작성하여 상세하게 吳長慶의 軍門에게 [범인 색출에 협조를] 청하자, 吳長慶 軍門에서 답장을 보내어 말하기를, ‘사방으로 사람을 보내 엄히 체포토록 하여 연달아 며칠을 지속한 결과 이미 다수의 용의자를 붙잡아, 본 안건[의 해결]에 실마리를 찾았으니, 주모자의 이름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므로, 확실한 공술을 받아낸 뒤 모두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 후에 [중국의] 각 軍陣에서 [범인수색을 위한] 조사 움직임이 있었고, 계속해서 중국 병사 3명을 孝經橋 위에서 법에 따라 처단했는데, 백성들은 이들이 崔藥局의 살인범들이라고 떠들썩하게 서로 말을 전하였습니다.<sup>34)</sup>

이 照覆의 요지는, 조선 정부에서 提督 吳長慶에게 협조 공문을 보냈더니, 吳長慶은 며칠 동안 범인 체포에 진력한 결과 용의자 다수를 확보하였다며 확실한 공술이 나오는 즉시 엄벌에 처할 것이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냈고, 며칠 후 과연 살인범으로 추정되는 淸兵 3명의 처형 소식을 들었다는 내용이다. 이 문서를 통해, 다보하시가 서술한 바와 같이, 조선의 統理衙門과 공문을 주고받은 자가 당시 주선 주둔 淸軍의 지휘자인 提督 吳長慶이고, 그가 조선 측의 범인 수색 협조 요청에 일단 동의했음이 확인된다.

32) 井上角五郎, 『漢城迺殘夢』(韓國學文獻研究所編, 『舊韓末日帝侵略史料叢書 7, 政治篇 7』, 亞細亞文化社, 1984) 235쪽.

33) 이 政府를 『高宗時代史』 제2집의 1884년(甲申, 1884, 淸 德宗 光緒 10年, 日本 明治 17年) 3月 26日(辛丑)條에서는 ‘議政府’로 보았다. 즉 “議政府에서는 이를 提督 吳長慶에게 照會하여 犯人の 拏獲을 請하다”로 기술했다. 하지만 당시 조선과 淸 양 측의 정부기관 사이의 公文 受發의 격을 고려하면 ‘정부’는 議政府라기보다는 다보하시가 서술한대로 統理衙門이 맞을 것이다.

34) “已經我國政府備文, 詳請于吳軍門節該, 吳軍門移覆內有云, 四出嚴捕, 連日陸續, 已拿獲多人, 案有端緒, 不難得其主名, 俟有確供, 盡法嚴懲等語, … 嗣後各陣有查覈之舉, 繼而聞華兵三人正法于孝經橋上, 百姓喧傳, 是崔藥店兇犯之人” 『舊韓國外交文書』 제8권(= 『淸案(1)』), 71-72쪽.

다만 문제는 이 공문의 내용과 이노우에의 기억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즉, 이노우에는 당시 중국 병영에서 범인 색출을 위한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은 채 매우 오만한 답변을 보내면서 관련성을 일절 부정했다고 기억했지만, 실제 공문의 전체 취지는 범인 체포에 진력한 결과 다수의 용의자를 붙잡아 확실한 증거가 나오는 즉시 처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혐의자 3명의 처형 사실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였다. 물론 처형된 3명에 관해서 뒤에 淸側은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지만, 적어도 吳長慶이 당초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실제로 淸側은 이 답변 내용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해명에 곤혹스러워 했다.<sup>35)</sup> 말하자면, 이노우에의 기억과는 반대로 중국 병영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범인 체포에 임했던 셈이다. 이처럼 범인 체포에 관한 중국 병영의 의지와 실천에 대하여 공문과 이노우에의 기억이 각각 전해주는 바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보하시는 별다른 해명도 없이 결국은 후자의 설만을 취하였다. 이는 다보하시가 방대한 사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의 엄정한 연구로 유명하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저명한 실증주의자가 명명백백한 문서의 내용보다 한 개인의 기억에 주로 의거하여 논지를 전개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다보하시의 네 번째 문장인 “곧 통리아문에 附屬하는 博文局에서 발행하는 漢城旬報에 이 사실을 게재하고, 또 淸兵의 군기 문란을 비난하였다”는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 이 문장은 문맥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즉, 범인 색출 협조 요청에 무성의로 일관하는 중국 병영의 움직임에 목도하고는 이를 여론의 힘을 빌려 淸側을 압박한다는 취지에서 『한성순보』에 사건의 전모를 게재하면서 淸兵의 군기 문란을 호소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한성순보』 제10호의 실제 기사와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 첫째, 사건 바로 다음날 이 기사가 게재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중국 병영의 성의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기사 내용과의 괴리이다. 즉, 날이 밝자마자 중국 병영에서 다수의 인원이 파견되어 현장을 직접 조사했고, 각 軍陣에서 현상금을 내걸고 범인을 체포하려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는 한편 군기 문란은커녕 도리어 淸軍의 엄정한 군율 속에 일어난 의외의 사건이지만 전반적으로 淸軍이 잘 통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본 기사를 종결하였다. 다보하시는 『한성순보』의 기사와는 전면 배치되는 주장을 한 셈이다.

그렇다면 다보하시는 무엇을 근거로 이런 서술을 한 것일까? 이노우에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조선인 중에서도 이를 개탄하는 자가 많았다. 나는 곧 한성순보 제10호에 그 연유를 기재하고, 다시 말하기를, ‘支那 병사 중에는 무뢰배들이 적지 않아, 그 舉動이 왕왕 殺伐과 粗暴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도 支那 병사가 범한 것이라고 말해도 누구도 의아하게 여기지 않는다’라 하였다.<sup>36)</sup>

중국 병영의 무성의에 대하여 개탄하는 조선인이 많은 상황임을 고려해서 이노우에는 『한성순보』 제10호에 사건의 연유, 즉 淸兵이 범인임을 지적하고는 덧붙여서 왕왕 살인도 불사하는 무뢰배 같은 중국 병사의 소행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崔藥局 살인사건도 淸兵이 범인임을 대부분 당연시하고 있다는 점까지 기사화했다는 말이다. 하지만 정작 이노우에의 첨언은 기사

35) 이에 관해서는 別稿를 통해 詳論할 예정이다.

36) 井上角五郎, 『漢城週殘夢』(韓國學文獻研究所編, 『舊韓末日帝侵略史料叢書 7, 政治篇 7』, 亞細亞文化社, 1984) 235-236쪽.

에서 찾지 못했다. 결국 다보하시의 서술은 이번에도 이노우에의 ‘기억’이 그 근거였던 것이다.

물론 당시 淸兵의 군기 문란은 근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듯하다. 1882년 吳長慶 휘하의 淸軍 3,000여 명이 조선으로 들어올 당시 기강 해이가 상당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도망하는 병사와 핑계를 대고 휴가를 청하는 軍官은 물론 특히 馬山浦 상륙 후에는 村家에 난입하여 아녀자를 능욕하고 노략질하는 등 폐해가 심각할 지경이었다. 李鴻章이 단속을 지시하기도 했지만, 吳長慶 역시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기에 이르렀다. 이때 吳長慶의 신임 하에 會辦營務處란 명의의 袁世凱가 군기 정돈에 앞장서서 범법자 여러 명을 참수하는 등 엄벌주의 노선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두각을 나타낸 일도 있었다.<sup>37)</sup> 이처럼 초기의 군기 단속은 비교적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완 현상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이노우에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체류 중인 支那 兵士의 포악함이 왕왕 良民을 해쳤고, 심지어는 물건을 구매하고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市家에 들어가 婦女를 능욕하는 등의 사실조차 있었으니, 이는 실로 支那를 위해서도 哀惜한 일이어서, 일반 조선의 인사들은 겉으로 支那에 굴종하더라도 속으로는 支那를 혐오하고 기피함이 심한 것을 보았다.<sup>38)</sup>

이노우에 특유의 과장을 감안한다 해도, 최소한 그에 준하는 淸兵의 횡포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중국 병사 3명을 孝經橋 위에서 처형하자 조선의 백성들이 바로 이들이 살인범들이라고 떠들썩하게 말을 전했다<sup>39)</sup>는 사실은 역으로 당시 淸兵의 범죄 행위가 당시 漢城의 시민들에게 있을 법한 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정도였음을 의미할 것이다. 말하자면, 본 사건의 범행이, 앞의 인용문에서 이노우에가 『한성순보』에 기사화했다고 잘못 말했을지언정, 중국 병사의 소행임은 그리 의아스런 일이 아니었던 셈이다.

이제 다보하시의 다섯 번째 문장 차례이다. 그는, “이 기사가 우연히 李鴻章이 注意하는 바가 되어, 總辦朝鮮商務 陳樹棠에게 訓令하여 사실을 查辦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이 언급은 실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사실상 이후 조선과 淸 양국관계를 긴장시키는 필화사건이 李鴻章의 판단과 결정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당시 李鴻章은 北洋大臣 겸 直隸總督의 신분으로 淸國의 대외관계를 관장하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 문제에 관한 李鴻章의 一言은 약소국이었던 조선에게는 대단한 무게로 다가왔음은 당연하다. 이후 조선은 淸側의 항의 내지 문제제기를 상당한 압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보하시의 위 견해는 이후 다른 관련 연구에서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高宗時代史』에서는,

時日이 經過하여도 아직 兇犯을 捉捕하지 못하던 中 偶然히 漢城旬報 第10號·第11號에 此 命案을 記載하고 또한 淸兵의 懲辦을 論하다. 北洋大臣直隸總督 李鴻章이 이를 보고

37) 이상에 대해서는 林明德, 『袁世凱與朝鮮』,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970, 18-19쪽; 藤岡喜久男, 『朝鮮時代の袁世凱』, 『東洋學報』 52-4, 1970, 8-9쪽; 이양자, 『朝鮮에서의 袁世凱』, 신지서원, 2002, 24쪽 등 참조.

38) 井上角五郎, 『漢城迺殘夢』(韓國學文獻研究所編, 『舊韓末日帝侵略史料叢書 7, 政治篇 7』, 亞細亞文化社, 1984), 228쪽.

39) 『舊韓國外交文書』 제8권(= 『淸案(1)』), 71-72쪽.

總辦朝鮮商務 陳樹棠에게 嚴飭하여 確查核辦하여 具報토록 하다<sup>40)</sup>

라고 기술하였다. 이홍장이 『한성순보』 제10호와 제11호 기사를 본 뒤에 陳樹棠에게 그 진위 여부를 확실하게 조사해서 보고할 것을 엄히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물론 다보하시의 위 다섯 번째 문장의 취지와 같은 맥락의 이해이다. 이처럼 이 필화사건 국면에서 李鴻章의 선도 내지 主動性을 강조하는 견해는 현재 관련 연구에서 거의 定說처럼 굳어졌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렇다면 다보하시 등은 무슨 근거로 이와 같이 인식했던 것일까? 필자가 확인해 본 결과 典據는 세 장의 공문이었다. 1884년 3월 18일 陳樹棠이 博文局과 金炳始에게 각각 보낸 照會의 도입 부분이 모두 다음과 같이 시작되고 있다.

이번 달 13일에 北洋大臣이 보내신 飭을 받았는데, 열어보니, ‘漢城內 崔宅英 藥局의 인명 살상 안건의 범인이 중국인인지 여부를 확실하게 조사해서 처리한 뒤 공문을 갖추어 보고 하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sup>41)</sup>

비슷한 표현은 3월 26일 陳樹棠이 金炳始에게 보낸 照會의 도입 부분에서도 발견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해보니, 本 道臺[=陳樹棠]가 北洋大臣이 보내신 飭飭을 받았는데, 정월의 어느 날 밤에 [발생한] 漢城內 崔宅英 藥局의 인명 살상 안건을 조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sup>42)</sup>

물론 이 세 장의 공문만으로는 李鴻章이 어떤 과정을 통해 『한성순보』의 기사를 접했는지 전혀 짐작할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중국인이 범인인지 그 진위를 확실하게 조사하라고 陳樹棠에게 지시했음은 분명하다. 이는 당시 朝淸간의 관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이홍장이 사실상 淸兵 3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한성순보』의 기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따라서 위 세 장의 공문을 통해 다보하시 등이 이홍장의 선도적인 지시로 필화사건이 개시된 것으로 본 것 자체는 무리가 없는 해석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다보하시를 포함해서 기존의 연구자들이 미처 보지 못한 『檔案』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는 점이다. 위 공문들은 모두 도입 부분에서 3월 13일에 범인의 국적을 조사·확인하라는 李鴻章의 飭 혹은 飭飭(=札飭)을 받은 사실을 조선 측에 전하였다. 그런데 이홍장은 어떻게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을까? 결론을 미리 말하면, 陳樹棠이 먼저 보고한 것이었다. 즉, 사건이 일어난 지 20여일 뒤인 정월 25일에 진수당은 이홍장에게 稟文을 보낸 바 있다. 이 稟文에서 진수당은 먼저 이 사건의 개요를 전한 뒤,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조사해보니, 이 崔宅英의 작은 藥局은 원래 주인이 거주하면서 土藥을 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 전부터 중국인과 틈이 벌어진 적이 없고, 당일 밤은 深夜여서 이웃사람들은 다만 소리만 들었을 뿐 목격한 자가 없었습니다. ... 조선 정부에서 防軍統領 吳長

40) 『高宗時代史』 제2집, 1884년 3월 26일(辛丑) 條 참조.

41) “本月十三日, 奉北洋大臣飭開, 漢城內崔宅英藥局伏斃人命一案, 兇手是否華人, 確實查明核辦具報, 等因 ... ” 『舊韓國外交文書』 제8권(= 『淸案(1)』 ), 64쪽 ; 64-65쪽.

42) “照得, 本道奉北洋大臣飭飭, 查辦正月間夜斃漢城內崔宅英藥局人命兇手一案 ... ” 『舊韓國外交文書』 제8권(= 『淸案(1)』 ), 74쪽

慶 提督에게 照會를 보내 조사를 청했습니다. … 吳長慶 提督이 현상금을 내걸고 엄히 조사토록 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사해보니, 해당 약국의 … 점원이 도주하여 잠닉했는데, 여론은 대부분 이 안건이 필히 모종의 事端에서 연유했을 거라고 합니다. … 현재 職道[=陳樹棠]는 防營[=袁世凱]과 회동하여 漢城과 仁川의 모든 중국인들을 군인과 상인을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조사하려 합니다. …43)

진수당의 보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격자도 없는 심야에 한 약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인이 중국 병사들이라는 것이 현재 조선 측의 주장이다. 둘째, 하지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국 주인이 예전부터 특별히 중국인과 분란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다가 현장에 있었던 약국 점원이 갑자기 사라지는 등 의혹이 남아 있다. 셋째, 이 사건 배후에 다른 특별한 이유가 개재되어 있을 것 같다는 현지의 여론마저 있다. 넷째, 이에 袁世凱와 협력하여 우선 범인이 중국인인지 여부를 전면 조사하려 하니 승인을 요청한다. 이상이 보고의 핵심 내용이였다. 결국 이 사건의 감정적 결론에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된 자는 당시 조선 현지에서 淸의 국익을 위해 商務와 외교교섭 전반을 총괄하던 陳樹棠이였고, 당시 조선 주둔 淸軍의 실력자로 대두하던 袁世凱와 협력 하에 과연 범인이 淸兵인지 재조사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도 陳樹棠이였다. 진수당의 강한 조사 의지가 담긴 이 稟文은 작성 당일에 발송되어, 그로부터 약 보름 뒤인 2월 8일에 이르러 이홍장이 근무하던 天津에 도착하였다. 말하자면, 사건이 발생한지 최소한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李鴻章은 陳樹棠의 보고를 통해 그 대강을 비로소 인지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3월 13일에 陳樹棠이 받았던 李鴻章의 飭 혹은 筭飭은 과연 무엇이였을까? ‘筭飭’부터 보자. 필자가 『檔案』의 문건을 검색한 결과 ‘筭飭’이란 표현은 陳樹棠 주재 초기의 檔案에서 가끔 나오지만, 그로부터 이후에는 대개 ‘札飭’으로 통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筭飭은 대개 상급 관료 혹은 기관이 하급 관료 혹은 기관에게 보내는 일종의 명령 즉 訓諭의 公文을 가리킨다. 다음은 ‘飭’인데, 이 글자에는 원래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다. 첫 번째는 위 札飭과 동일한 의미에서의 訓諭의 公文을 지칭한다. 두 번째는 서술문 속에서 아무개에게 명령 혹은 훈계한다는 뜻이다.<sup>44)</sup> 위 照會에서 李鴻章의 飭을 받았다고 할 때의 ‘飭’은 당연히 筭飭 즉 札飭을 가리킨다.

필자는 『檔案』의 모든 문건 속에서 13일 당일은 물론 그 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陳樹棠에게 보낸 李鴻章의 筭飭을 찾아보았지만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 대신 찾은 것은 바로 13일에 陳樹棠이 접수한 李鴻章의 批文이었다.<sup>45)</sup>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3) “查此崔宅英小藥局，原係住眷，并賣土藥糊口，… 向與華人無涉嫌隙，是晚專在昏夜，隣人祇係聞聲，并無目擊 … 由該國政府照會防軍統領吳提督查辦，… 當經吳提督懸賞嚴查，尙未破案，并查得該藥局於 … 有夥伴逃匿，輿論多謂此案必有起衅緣由 … 現職道會商防營，將所有漢城仁川華人，不論(兵商)，一體清查 … ” 「朝漢城藥局崔宅英命案辦理卷(1)」，『淸季駐韓使館檔案』(01-41-012-10)，陳樹棠 訴訟 10, 3쪽.

44) 이상 飭 혹은 筭飭에 관한 설명은 山腰敏寬, 『中國歷史公文書讀解辭典』, 汲古書院, 2004, 169쪽 ; 88-89쪽 등 참조.

45) 이 批文은 앞의 정월 25일 진수당이 보낸 稟文에 대한 이홍장의 답변에 해당하는 코멘트이다. 稟文이 天津까지 도착하는데 약 보름이 걸렸던 만큼 다시 이 批文이 天津에서 漢城까지 도달하는 데 비슷한 시간이 걸렸을 것임을 감안하면, 이 코멘트는 2월 말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批文은 작성된 당일 혹은 그 다음날 발송되곤 하기 때문이다. 결국 2월 8일에 天津에 도착한 稟文에 대한 이홍장의 批文은 약 20여 일 걸려서 작성된 셈이다.

欽差太子太傅前文華殿大學士署直隸總督部堂兼辦北洋通商事務大臣一等肅毅伯 李鴻章의 批文 : 정월 25일에 작성되어 보내온 稟文을 이미 읽어보았다. ... 그 漢城內 崔宅英 藥局의 인명 살상 안건의 범인이 중국인인지 여부를 확실하게 조사해서 처리한 뒤 공문을 갖추어 보고하도록 하라. 이상.<sup>46)</sup>

이 批文의 마지막 문장은 앞의 3월 18일 陳樹棠이 博文局과 金炳始에게 각각 보낸 照會의 도입 부분에 소개한 ‘飭’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결국 접수한 날짜와 지시의 내용을 통해 볼 때 당일 진수당이 이홍장으로부터 받은 ‘飭’은 실은 ‘批文’이었던 것이다. 한편 3월 26일 陳樹棠이 金炳始에게 보낸 照會의 도입 부분에서 소개한 ‘筭飭’은 별도의 정식 문건을 찾지 못했다. 따라서 그 내용을 통해 유추해볼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아마도 이 筭飭 역시 13일에 이홍장으로부터 받은 ‘批文’을 가리키는 것 같다. 결국 陳樹棠은 이홍장으로부터 批文을 받았으면서도, 조선의 당국자들에게 보낸 照會에서는 ‘札飭’을 받은 것처럼 표현한 셈이다. 최소한 ‘미필적 고의’의 혐의가 없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진수당이 조선 당국자가 아닌 타인에게는 동일한 내용을 서술할 때 표현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天津海關道 周馥에게 보낸 公函에서 진수당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아우[=陳樹棠]가 傅相[=北洋大臣 李鴻章]께서 적어 보내신 批文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漢城內의 崔姓 藥局의 인명 살상 안건의 범인이 중국인인지 여부를 확실하게 조사해서 처리한 뒤 공문을 갖추어 보고하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sup>47)</sup>

즉, 진수당은 李鴻章의 심복이자 당시 天津海關道였던 周馥에게 보낸 서신에서는, 오해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그래야 했겠지만, ‘飭’ 앞에 ‘批’를 첨가하여 ‘批飭’이라 표기하였다. 여기서 飭은 札飭이 아니라 批文을 통해 명령한다는 뜻이다. 이는 전혀 흠잡을 곳이 없는 완벽한 표현이었다.

그러나 조선의 당국자에게 보낸 照會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러 차례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단 한 번도 ‘批飭’이란 정확한 표현을 쓰지 않았다. 처음에는 ‘飭’이라고만 기입하였다. 물론 이 飭은, 앞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설사 오해를 하더라도 오해한 측이 억울할 뿐 오해하게 한 측이 꼭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26일 金炳始에게 보낸 照會였다. 여기서는 ‘筭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筭飭은 批文이 아니라 筭文(=札文) 형식의 정식 훈령서를 받았다는 의미이다.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공문에 대한 명백한 조작이었다.

그런데 札飭과 批文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전자는 정식 訓令書이다. 후자는 하급관리 혹은

46) 이 批文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欽差太子太傅前文華殿大學士署直隸總督部堂兼辦北洋通商事務大臣一等肅毅伯李 批: 正月二十五日來稟已悉, 該道現與防營會商, 將漢城仁川華人, 不論兵商, 一律清查, 并將華商編發隨身執照, 隨時稽察, 庶免奸宄冒混, 另出示遍諭商店, 不准容留防營散勇夫役, 以防滋事, 自應如此辦理, 其漢城內崔宅英藥局傷斃人命一案, 兇手是否華人, 仍確查核辦具報, 繳.”

光緒十年三月十三日到

總辦朝鮮商務分省補用陳道 「朝漢城藥局崔宅英命案辦理卷(1)」, 『清季駐韓使館檔案』(01-41-012-10), 陳樹棠 訴訟 10, 4쪽.

47) “弟奉傅相批飭漢城內崔姓藥局人命一案, 兇手是否華人, 確查核辦具報” 이 글은 3월 28일에 陳樹棠이 周馥에게 보낸 書信의 原稿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朝漢城藥局崔宅英命案辦理卷(2)」, 『清季駐韓使館檔案』(01-41-012-11), 陳樹棠 訴訟 11, 46쪽 참조.

기관에서 상급관리 혹은 기관에 품신한 공문에 대하여 통상 그 공문의 공백 부분에 간단한 지시 사항을 기재하는 약식의 답변서이다. 따라서 양자 모두 지시의 뜻을 띠고 있다 해도 그 무게감은 다르다. 또한 후자가 稟文에 대한 短文의 답변이라면 전자는 때로는 稟文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때로는 그에 관계없이 하달하는 短文 혹은 長文의 공식 명령서였다. 이러한 차이를 당연히 잘 알고 있었을 陳樹棠은 조선 당국에 보내는 공문에서는 예외 없이 飭 혹은 筭飭이란 표현을 써서 이 일이 李鴻章의 지시 하에 시작된 것 같은 어감을 강하게 표출했다. 사실상 외교적인 압박감의 극대화를 노린 세심하면서도 어찌면 교활하기까지 한 외교문서 위조의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리라 생각한다.

한편 이홍장은 『한성순보』의 기사를 어떻게 접하게 되었을까? 다보하시는, 물론 관련 자료를 전혀 접하지 못했던 데에서 기인하지만, “이홍장이 이 기사를 우연히 注意하게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연’이 아니었다. 이 기사 역시 진수당이 알려준 것이기 때문이다. 즉, 3월 27일 작성하고 다음날인 28일 발송하여 4월 15일에 天津에 도착한 稟文 즉, 李鴻章에게 보낸 陳樹棠의 공문에서 신문 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sup>48)</sup> 이홍장이 신문 기사의 내용을 알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陳樹棠의 계산된 ‘의도’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이제 다시 다보하시의 여섯 번째 문장으로 돌아가자. 그는, “吳提督과 陳道가 크게 당황하여 崔宅英 살해 범인은 실로 淸兵의 冠服을 冒穿한 朝鮮人이라고 칭하고, 漢城旬報가 官報로서 風聞을 轉載한 과실을 논하고, 博文局員의 查辦을 요구하였다”고 한 바 있는데, 역시 수용하기 힘든 내용이다. 이 문장은 구절 별로 끊어서 네 가지 사항을 검토해왔다.

첫째, 吳提督 즉 提督 吳長慶과 陳道 즉 道臺 陳樹棠이 크게 당황했다는 부분이다. 이 문장은 바로 위 문장, 즉 우연히 신문 기사 내용을 알게 된 이홍장이 진수당에게 훈령을 내려 조사를 지시했다는 언급을 잇고 있다. 그래서 吳提督과 陳道가 크게 당황했다는 스토리가 성립한다. 하지만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기사에 관한 이홍장의 인지는 ‘우연’이 아니라 진수당의 다분히 정교한 ‘의도’의 결과였다. 따라서 조사 지시에 크게 당황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실제 그랬다면 단지 연기에 불과했다 할 것이다. 당연히 진수당이 지시를 받고 당황했다는 내용은 관련 자료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또 提督 吳長慶이 陳樹棠과 같이 당황했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우선 吳長慶은 이홍장의 札文은커녕 批文도 받은 적이 없다. 게다가 당시 오장경은 天津으로 소환<sup>49)</sup>되어 있었기 때문에 漢城에는 부재중이었다.

둘째, “崔宅英 살해 범인은 실로 淸兵의 冠服을 冒穿한 朝鮮人이라고 稱”하였다는 부분인데, 과도한 해석이었다.<sup>50)</sup> 그 근거는 다보하시가 참고한 자료 가운데 『淸案』 3冊에서 「淸人の夜行禁止告示」라는 제목을 붙인 告示 중 아래의 내용일 것이다.

조사해보니, 漢城 지방의 중국인 병사와 상인이 모여 사는 곳에서 年前에 본디 중국인이 아닌데 중국인 冠服을 冒穿한 자가 있다는 風聞이 돌았다. 올해 정월 사이에 城內에서 야

48) “惟閱該國王命內外衙門設立之博文局旬報第十號, 第十一號, 內刊列‘華兵犯罪, 華兵懲辦’兩條, 言之確鑿, 凡屬華人 …” 「朝漢城藥局崔宅英命案辦理卷(1)」, 『淸季駐韓使館檔案』(01-41-012-10), 陳樹棠 訴訟 10, 5쪽.

49) 上同. 淸과 프랑스 사이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던 당시 吳長慶은 결국 淸國으로 소환되어 4월에 金州로 근무처가 바뀌지만 同年 윤5월에 病死하고 말았다.

50) 이 부분은 『고종시대사』에서도 동일한 인식을 하고 있다. “이날 陳樹棠은 出示하여 崔宅英 命案의 兇犯은 實은 淸兵의 冠服을 冒穿한 韓人이라 칭하고 懸賞購拏함에 이른다.” 『高宗時代史』 제2집, 1884년 3월 26일(辛丑) 條.

간에 崔姓藥局 인명 사건이 발생했는데, 보도에 이르기를 범인이 중국인 冠服을 하고 있었다 하여, 두루 조사했지만 증거가 묘연하여 현재에 이르도록 붙잡지 못하고 있다. 이번 달에 또 崔成均이라는 자가 剃髮을 하고 중국인 冠服과 신발을 冒穿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처럼 서로] 뒤섞여 있어서 관련됨이 매우 큰 것 같다. ...<sup>51)</sup>

이 告示는 원래 야간 통행금지를 지시하는 공고문인데, 범인 체포에 관한 현상금을 내건 또 다른 告示와 함께 漢城의 城門 各處에 게시<sup>52)</sup>되었을 뿐 아니라 『한성순보』 제18호에 轉載되었다.<sup>53)</sup> 그런데 이 告示의 도입부분에서, 年前에 중국식 복장을 하면서 중국인 행세를 하는 자가 있다는 風聞과 3월에 체포된 崔成均이라는 자가 변발을 하고 중국인 의관을 착용하다 소란을 피운 사건을 소개하면서 그 사이에 崔藥局 살인사건의 범인도 중국인 복장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적시하였으니, 서로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드러낸 셈이다. 하지만 어디에도 살해범이 ‘淸兵의 冠服을 冒穿한 朝鮮人’이라고 단정하는 직설적 표현은 없다. 淸側이 그런 쪽으로 해석하고 싶던 것은 분명하지만, 증거가 없는 한, 범인을 조선인이라고 넘겨짚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셋째, “漢城旬報가 官報로서 風聞을 轉載한 과실을 論”하였다는데, 이 부분은 이노우에의 아래의 서술 가운데 일부를 취한 것이다.

北洋大臣 李鴻章은 ... 또 말하기를, ‘旬報는 官報이고, 官報는 民報가 매일 隨聞隨錄하는 것과는 달라야 하는 것인데, 이번 기사는 이를 過誤로 抹殺하기 어렵다, 요컨대 禮를 中國에 缺한 것이다’고 하였다.

즉, 이노우에는 이홍장이 『漢城旬報』가 官報인데 隨聞隨錄 즉 風聞을 그대로 轉載한 것은 과오였다고 말했다는 것인데,<sup>54)</sup> 다보하시는 그 말을 이홍장이 아니라 吳長慶과 陳樹棠의 말로 본 셈이지만, 그 근거는 모호하다. 다만 진수당이 博文局에 보낸 照會에서 다음과 같이 비슷한 말을 한 적은 있다.

다시 조사해보니, 「華兵犯罪」와 「華兵懲辦」 두 기사는 상단에 비록 ‘國內私報’라는 글자가 있지만, 사건이 도성 한복판의耳目이 가장 가깝고 밀집된 곳에서 벌어졌으니, 반드시 貴局 [= 博文局]의 각 관원이 확실하게 진실의 증거를 분명히 조사해서 비로소 신문에 보도하여 반 글자라도 잘못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니, 각국의 민간 日報가 風聞을 [그대로] 登載하는 것과 같은 일은 官報와는 매우 거리가 멀다 할 것이다.<sup>55)</sup>

51) “照得, 漢城地方華人兵商集處, 年前風聞有本非華人, 冒穿華人冠服者, 本年正月間, 城內夜斃崔姓藥局人命一案, 報稱兇手係華人冠服, 遍查無踪, 至今未獲, 本月內, 又有崔成均剃髮冒穿華人冠服衣履一案, 似此冒混, 關碍甚大 ... ” 『舊韓國外交文書』 제8권 (= 『淸案(1)』 ), 74-75쪽.

52) 『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 제3권, 「統署日記」 I, 아세아문제연구소, 1972, 55쪽.

53) “當即飭知屬員, 將告示賞格兩稿, 另行刊列於來十八號” 「朝漢城藥局崔宅英命案辦理卷(2)」, 『淸季駐韓使館檔案』 (01-41-012-11), 陳樹棠 訴訟 11, 66-67쪽

54) 이 전체를 이홍장의 말로 이노우에가 기억했는데, 별다른 근거는 없다. 필자는 이노우에의 착각이라고 본다.

55) “覆查華兵犯罪懲辦兩條, 上雖有國內私報字樣, 而事在車轂下耳目最近最眞, 必由貴局各官確切核明眞實憑據, 始行刊報, 并無半字應僞影響, 如各國私家日報聞風登錄, 迥非官報者可比” 『舊韓國外交文書』 제8권 (= 『淸案(1)』 ), 64쪽.

이 말을 이노우에는 이홍장의 말로 바꾸어 다소 투박하게 요약 정리한 셈이다. 다보하시는 진수당의 照會를 근거로 진수당 등의 말로 정정했지만, 이노우에의 요약은 그대로 따랐던 것이 아닐까 한다.

넷째, “博文局員의 查辦을 요구”했다는 부분인데, 이는 위 인용문에서 博文局 각 官員이 확실한 증거에 의거해서 보도했어야 함을 언급했고, 또 결과적으로 기사 작성에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이노우에가 책임을 지고 귀국한 점 등을 고려하면, 큰 문제는 없는 표현으로 보인다.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문장 차례이다. 다보하시의 “統理衙門은 극력 釋明에 노력하였고, 또 사실상의 책임자인 博文局 主事 井上角五郎은 淸兵의 迫害에 生命의 위험을 느껴 자발적으로 辭職하고 귀국하였기 때문에 무사히 해결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먼저 統理衙門의 釋明 노력은 근거가 뚜렷하다. 3월 24일에 金炳始가 陳樹棠에게 보낸 照覆에서, 다음과 같이 釋明하였다. 첫째, 刑曹에서 받은 증인의 공술에서 범인이 중국어를 하고 중국 복장을 하고 있었다. 둘째, 提督 吳長慶에게 범인 색출에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보내자, 매우 긍정적인 답장을 주었다. 셋째, 조선의 제도에는 민간인은 무기를 가질 수 없는데, 살인범들은 총과 칼을 지니고 있었다. 넷째, 시민들이 일제히 범인은 ‘華兵’이라 했으며, 후에 처형된 華兵 3명에 대하여 조선의 백성들이 바로 약국 살인범이라고 떠들썩하게 서로 말을 전했다.<sup>56)</sup> 결국 조선 측은 이상의 네 가지 점에서 범인을 중국 병사로 이해한 것이었다고 해명한 셈이다. 끝으로 이노우에의 사직과 귀국은 『漢城之殘夢』의 서술을 그대로 따른 것인데,<sup>57)</sup> 이에 대해 재론의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상의 분석을 근거로 다보하시의 세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의 일곱 번째 문장까지를 다음과 같이 바꾸는 것으로 本章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統理衙門은 사건 발생 직후에 提督 吳長慶에게 照會를 보내 범인의 수색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얼마 후 吳 提督은 답변서를 통해 이미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는 사실과 확증이 나오는 즉시 처형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사건 다음날 통리아문 附屬의 博文局에서 발행하는 『漢城旬報』에 이 사건이 보도되었는데, 淸兵을 사실상 범인으로 지목했을 뿐 오히려 치안의 안정을 확인하는 선에서 기사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이 기사를 포함하여 본 사건의 개요는 總辦商務委員 陳樹棠이 北洋大臣에게 재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稟文을 올리면서 李鴻章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李鴻章은 陳樹棠에게 승인의 批文을 내려 실상을 조사한 뒤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陳樹棠은 조선의 당국자에게 照會를 보낼 때 이홍장의 批文을 札飭으로 오인됨을 사실상 조장하였다. 나아가서는 漢城 각지에 게시되고 『한성순보』

56) “竊查本年正月崔宅英藥店命案一事，具載刑曹讞案，據看證諸招，犯人言語衣服，俱係華人，已經我國政府備文，詳請于吳[長慶]軍門節該，吳軍門移覆內有云，四出嚴捕，連日陸續，已拿獲多人，案有端緒，不難得其主名，俟有確供，盡法嚴懲等語，查我國向來定制，不許閑民帶兵，此次兇犯帶有洋鎗環刀等器，必非閑民所爲，一時傳說皆云華兵，嗣後各陣有查覈之舉，繼而聞華兵三人正法于孝經橋上，百姓喧傳，是崔藥店兇犯之人” 『舊韓國外交文書』 제8권(= 『淸案(1)』 ), 71-72쪽.

57) “내가 말하기를, ‘저 기사는 井上角五郎 혼자서 생각으로 筆記한 것이니, 책임은 실로 나 한 사람에게 있다. 나 스스로 그 책임을 진다면 이로써 李鴻章에게 辨疏가 되리라’ 하고, 스스로 그 직에서 물러나 곧 博文局 업무를 主事와 司事 사람들에게 일임하고, 京城을 떠난 것이 이해 5월이었다.” 井上角五郎, 『漢城迺殘夢』 (韓國學文獻研究所編, 『舊韓末日帝侵略史料叢書 7, 政治篇 7』, 亞細亞文化社, 1984) 236쪽. 한편 다보하시를 포함해서 기존의 관련 연구는 예외 없이 동년 5월에 단행된 이노우에의 사직과 귀국이 본 사건의 종결을 뜻한다고 보았지만, 실은 그 뒷이야기가 있다. 다만 이는 本稿의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別稿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제18호에 轉載된 告示 속에서 崔宅英 살해 범인은 淸兵의 冠服을 冒穿한 朝鮮人일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했다. 또 사실상 官報의 성격이 강한 『漢城旬報』가 무책임하게 風聞을 그대로 따라 보도한 잘못을 지적하는 한편 이 신문의 주관 부서인 博文局의 직원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다. 이에 統理衙門은 釋明에 노력하였지만, 기사 작성에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거부했던 井上角五郎가 5월에 辭職하고 귀국하지 않을 수 없었다.

## 맺음말

本稿는 田保橋潔의 大著 『近代日鮮關係の研究』 가운데 ‘崔藥局命案’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그 결과 기존의 인식에서 적잖은 오류를 발견했는데, 필자가 재구성한 사건의 추이를 아래에 요약·정리한다.

1884년 1월 2일 밤 10시에서 11시 사이로 추정되는 심야에 漢城 종로 일대의 최씨 藥局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사후에 목격자인 점원들의 일치된 진술은 淸兵 3명의 소행이었다. 즉, 淸心丸을 구매하기 위해 약국에 들어온 그들은 丸藥의 품질 문제를 놓고 주인과 실랑이를 벌였다. 언쟁이 격화되던 가운데 분을 참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淸兵이 갑자기 충격을 가하고 칼을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주인의 아들이 결국 사망하고, 주인 崔宅英은 다음날 새벽에 겨우 소생했을 정도로 중상을 당하였다.

이 사건은 다음날인 3일자 『漢城旬報』 제10호에 「華兵犯罪」란 제목으로 기사화되었다. 이 기사에서 이미 淸軍 兵營에서 급히 군인을 현장에 보내 조사하는 한편 현상금을 걸어 범인 체포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전했다. 한편 統理衙門은 사건 접수 직후 당시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淸軍의 총지휘관인 提督 吳長慶에게 照會를 보내 범인의 색출에 협조를 구하였다. 얼마 후 吳長慶은 답변서를 보내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면서 확증이 나오는 즉시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임을 통보하였다. 사건 보도 약 일주일 후인 1월 11일에 발행된 『漢城旬報』 제11호에서 후속기사가 게재되었다. 즉, 淸軍의 병영에서 살인범인 소속 부대원 3명이 참수되어 그 머리가 孝經橋 입구에 내걸렸다는 소식이었다. 이로써 살인사건은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종결되기에는커녕 오히려 문제가 확대되었다. 일개 살인사건이 양국관계를 긴장시키는 필화사건으로 전화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앞의 결론에 대하여 淸國의 總辦商務委員 陳樹棠이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한성순보』에 후속보도가 나온 지 약 2주 뒤인 1월 25일에 그는 北洋大臣 李鴻章에게 稟文을 올려 범인이 淸兵이 아닐 가능성을 강하게 개진하면서 防營 袁世凱와 함께 전면 재조사할 생각임을 보고하였다. 현장 탐방을 비롯하여 이미 약간의 사전조사도 진행했음은 稟文 내용 속에서 확인된다. 보고를 받은 李鴻章이 승인의 批文을 작성하여 범인이 과연 淸兵인지 여부를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批文은 3월 13일에 陳樹棠에게 접수되었다.

3월 18일 陳樹棠은 『한성순보』의 주관 부서인 博文局과 統理衙門 및 軍國衙門에 비슷한 내용의 照會를 보내 『한성순보』가 무슨 근거로 범인을 淸兵으로 지목한 것인지 문의하였다. 그런데 陳樹棠은 이 照會의 도입 부분에서 13일에 확실한 조사를 지시하는 李鴻章의 ‘飭’을 받았다고 기술하였다. 한편 26일에는 심야의 통행금지과 범인 검거를 위한 ‘懸賞’을 주 내용으로 하는 2장의 告示 게재에 조선 측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陳樹棠은 督辦交涉通商事務 金炳始에게 照會를 발송했다. 그런데 이 照會의 도입 부분에서는 아예 李鴻章의 ‘飭’을 받았다고 하였다. 이는 陳樹棠이 天津海關道 周馥에게 보낸 비공식적 書信에서는 오히려 李鴻

章에게 批文을 받은 사실을 정확하게 밝힌 것보다 크게 다르다. 조선 측이 그 진위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李鴻章에게 받은 批文이 줄지에 札飭으로 바뀐 셈이다. 批文과 札飭 간의 무게감의 차이는 조선 당국자도 모를 리 없었다. 최소한 ‘미필적 고의’의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결국 陳樹棠은 조선 당국에 보내는 외교문서에서 교묘한 ‘조작’을 통해 이 모든 외교적 조치가 北洋大臣 李鴻章의 강력한 의지의 소산인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최대한의 외교적 압력을 가하는 효과를 누리려 하였다. 당시 淸國의 대외관계 전반을 장악하고 있던 李鴻章의 ‘관심’ 앞에 약소국 조선은 위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 측은 사실상 살해범이 淸兵이 아니라 중국인을 가장한 조선인일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하는 告示를 漢城의 각처에 게시하고, 또 『한성순보』에도 轉載하는 ‘양보’가 불가피했으며, 기사 작성에 관여한 일본의 이노우에는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 귀국하는 선에서 당시 朝淸 양국관계를 긴장시켰던 필화사건은 일단락을 짓게 되었다.

이상에 걸쳐 제1막과 제2막으로 구성되는 ‘崔藥局命案’에 관한 기존 연구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필화사건 국면에서의 李鴻章의 선도적인 역할을 비롯한 통설 가운데 일부 ‘오해’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다소의 보충과 보완 작업을 한 셈이다. 하지만 필자의 초보적인 검토에 의하면, 이 사건은 실은 여기서 종결되지 않는다. 최소한 제3막까지는 가야 마땅한데, 이에 대해서 기존 연구에서는 어느 누구도 아직 언급조차 한 적이 없다. 진수당과 원세개의 협력 하에 조선에 더 압박을 가하여 끝내는 사건 관련자들을 일제히 소환하여 조선과 청의 공동 審理가 열리는 등 사건의 파장은 상당 기간 그치지 않게 되는데, 본고에서는 미처 다룰 여력이 없었다. 물론 제1막과 제2막의 범위 내에서도 더 채워 넣어야 할 부분이 많다. 이러한 남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別稿를 통해 보완할 생각이다.



## 「1884년 ‘崔藥局命案’의 해체와 재편」 토론문

김희신

본 논문은 제목, 서론의 문제제기, 그리고 본문의 전개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듯이 1884년 한성에서 발생한 ‘崔藥局命案’이란 안건의 발생과 확대 과정의 전모를 복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방법 상으로는 1940년에 저술되어 지금까지 근대한중관계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인용되어 온 田保橋潔의 『近代日鮮關係研究』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한다. ‘崔藥局命案’에 대해 田保橋潔이 해석한 문장 하나 하나에 대한 문제 제기로부터 출발하여, 그가 인용한 한중 외교문서 4건(『淸案』), 신문기사 2건(『漢城旬報』), 필화사건의 중심에 있던 『한성순보』 기사의 주필자 회고록(『漢城之殘夢』) 등에 대한 비교 분석과 함께, 새로운 자료로서 <淸季駐韓使館檔案>내 소송안건 자료를 근거로 치밀한 분석을 시도하여, 기존의 해석을 완전히 해체하고 새롭게 해석하는 것으로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다.

실제 근현대사나 관계사 연구에서 정부기록, 신문, 회고록 등은 지금도 1차 자료로 주로 이용되지만,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원래 정부기록의 주된 기능이 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있고, 신문기사나 회고록은 모두 사실의 정확성이란 측면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외교문서는 각국 간에 상호 收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서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 사안의 전모를 분명히 하거나 동일사안에 대한 동시대 양국의 입장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없다. 필자는 새로운 외교당안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여 기존 연구의 자료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필자만의 탁월한 사료해독 능력과 이를 근거로 한 치밀한 논리전개로 ‘崔藥局命案’을 성공적으로 복원해냄으로써 본 논문이 향후 관련 분야의 후속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래에서는 ‘최약국명안’의 이해와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문제에 대해 발표자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 1. 복원 내용에 대한 의문점

필자가 복원한 내용 중, “..... 한편 이 기사(토론자-한성순보기사)를 포함하여 본 사건의 개요는 총판상무위원 진수당이 북양대신에게 재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稟文을 올리면서 이홍장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이홍장은 진수당에게 승인의 批文을 내려 실상을 조사한 뒤 보고하도록 하였다. ....”(p.17)

본문에는 ‘최약국명안’과 관련해서 이홍장과 진수당 간에 왕래된 문건이 총 3건, 즉 ①1월 25일 진수당의 稟文, ②(1월 25일 稟에 대한) 3월 13일 이홍장의 批文, ③3월 27일 진수당의 稟文이 등장한다. 1월 25일 진수당의 稟文에는 ‘한성순보 기사’ 내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현재 미해결

상태이므로 향후 防營과 협조하여 兵商을 불문하고 한성·인천 거주 중국인에 대한 일률 조사할 예정이라는 언급이 있을 뿐 ‘재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내용이 없다. 토론자가 판단하기에 1월 25일 진수당의 1차 稟文은 總辦商務委員으로서 ‘자국민에 대한 관리와 보고 의무’에 따라 본 안건의 경과에 대해 이홍장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3월 13일 이홍장의 批文에는 ‘1월 25일 稟文을 받고 사건을 인지하였고, 兵商을 불문하고 모두 조사하되 상인에 대한 휴대신분증 발급, 散勇의 화상점포 체류를 불허하여 소란 발생을 방지하라는 등’의 내용과 함께, ‘본 안건의 범인이 중국인인지 여부를 조사해서 처리하고 문서로 보고하라’는 적극적 지시가 내려졌다. 진수당이 이 지시를 받고서야 ‘중국인을 범인으로 지목했던 『한성순보』’ 기사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했고, 3월 18일·3월 24일·3월 26일 세 차례 조선독판과의 교섭을 거쳐 ‘중국인의 야간 통행금지’와 ‘범인체포 현상금’ 고시문을 각지에 내걸게 되었다. 이 교섭결과를 바탕으로 바로 다음날, 3월 27일(28일 송고) 이홍장에게 쓴 稟文에서 비로소 직접적으로 ‘중국인을 범인으로 지목했던 『漢城旬報』’ 신문기사의 공정치 못함을 언급하였다. 이는 ‘본 안건의 범인이 중국인인지 여부를 명확히 조사해서 처리하고 문서로 보고하라’는 적극적 지시에 대한 결과보고인 셈이었다. 이렇게 보면 이홍장의 ‘기사에 대한 인지’는 필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진수당의 稟을 통한 ‘정교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얘기가 된다. 기존의 연구가 아니라 <檔案>의 자료를 통해 보더라도, 오히려 중국인이 범인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는 3월 13일 이홍장의 批文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작은 부분이지만 『한성순보』 11호에 게재된 내용 중, 본 안건과 관련된 범인인지를 불문하고, 누군가 ‘참수’된 것은 사실인지 궁금하다. ‘참수’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면 조선 측에서도 ‘중국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기사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료나 본문 어디에서도 확인할 길이 없다.

## 2. 조선과의 교섭상에서 總辦商務委員의 위상 문제

필자는 사건 발생 당시, 조선 내 진수당의 위상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듯하다. (‘당시 조선현지에서 淸의 국익을 위해 商務와 외교 교섭 전반을 총괄하던 진수당이었고, 당시 조선에 주둔하던 청군의 실력자 원세개와 협력 하에 과연 범인이 淸兵인지 재조사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도 진수당이였다’, p.13)

‘최약국명안’이 발생한 것은 광서10년(1884) 1월 2일이며, 진수당이 조선에 總辦(交涉)通商事務로 파견(광서9년 9월)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또한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당시 조선정부에서 防軍統領 吳 제독에게 조사토록 하였다. 1월 25일 현재 진수당이 함께 회동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1월 25일 稟文) 실제로는 조사 상황에 대해 조선과 防營이 상황을 알려주고 있지 않으니, 이홍장에게 함께 조사할 수 있고 또 수시로 상황을 알려주도록 조선국왕과 防軍에게 조치를 내려줄 것을 청하고 있다. (3월 27일 稟文) 실제 이홍장은 동일내용으로 원세개에게 지시를 내렸고(4월 17일 札飭), 진수당에게는 조선국왕에게도 照會하겠다고 답변하였다. (4월 27일 批文)

진수당이 조선독판에게 보내는 照會에서 이홍장의 ‘札飭’ 운운했던 부분에 대한 필자의 해석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안건의 조사처리에 실질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로부터 볼 때 본 안건은 조선과의 교섭창구가 단일화되지 못했던 부임 초기에 발생하였고, 안건의 교섭과정에서 진수당의 위상은 그다지 강력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 3. ‘최약국명안’의 복원과 후속 연구

필자가 논문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본 논문은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과 복원이라는 주요한 목적 외에도 더 나아가 후속 연구를 위한 토대작업으로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 논문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토론자도 글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문제, 과연 필자가 이 논문을 토대로 어떠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지에 대해 고견을 구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



## 19세기말 華商의 朝鮮 진출과 朝鮮人과의 충돌

발표자 : 李學魯

- I. 머리말
- II. 袁世凱 시기 華商과 朝鮮人의 갈등 양상
- III. 袁世凱 시기 華商의 사망 사건과 訴訟의 처리 과정
  - 1. 德興號의 鄭耀 사망 사건
  - 2. 慶興府의 趙春發 사망 사건
  - 3. 劉永貴, 孫達廷과 初學仁 사망 사건
- IV. 맺음말

## I. 머리말

華商의 조선 진출은 19세기말 조선 사회의 변화를 읽는 하나의 키워드이다. 조선의 개항과 함께 전통적인 양국 관계에서 변화가 발생하였다. 개방된 한국 사회로 중국 華商들이 진출한 것은 새로운 자극이었다. 그들의 등장 배경에는 韓中 양국간의 정치 외교적 관계의 변화와 경제적 변화의 축이 작동하고 있었다. 화상의 조선 진출 과정과 그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19세기말에 시작된 한국근대사의 흐름 속에서 韓中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華商의 조선 진출은 불평등 조약에 기초한 것이었다. 바로 1882년에 체결한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이다.<sup>1)</sup> 임오군란을 계기로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에 나선 청나라는 조선의 지배를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이 조약을 체결하였다. 전통적 조공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에서 청나라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입장에서 이 章程을 통해 조선의 지배를 강화하려한 의도였던 것이다.<sup>2)</sup> 이 조약으로 조선의 수도 漢陽이 외국 상인들에게 개방되었고 주요 항구도 개방되고 화상들이 조선 각지에서 활동하게 되었다.<sup>3)</sup>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개방 이후 중국 華商들의 조선 진출과 활동에 대한 관심은 그들과 조선인들과의 충돌 혹은 갈등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다. 일차적으로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1) 鄭台燮, 韓成敏, 「開港 후(1882~1894) 淸國의 治外法權 행사와 朝鮮의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43, 2007; 이은자, 「韓淸通商條約 시기(1900~1905) 중국의 在韓 治외법권 연구」, 『명청사연구』 26; 이은자, 「韓中 近代 外交의 실험, 1895-1905年」, 『중국근현대사연구』 58; 鄭台燮, 韓成敏, 「乙巳條約 이후 韓淸간 治外法權 연구(1906~1910)」, 『한국근현대사연구』 46, 2008 참조.

2) 이영옥, 「조청관계에 대한 편의적 이해 사례」, 『동북아역사논총』 35호, p.186.

3) 박정현, 「19세기 말 仁川과 漢城의 중국인 居留地 운영체제」, 『동양사학연구』 113; 김희신, 「漢城 開設行棧 조항 개정」 교섭과 중국의 대응」, 『동양사학연구』 113 참조.

불평등조약에서 찾았다. 그것은 굴욕적인 조약일 뿐만 아니라 중국 상인들에 대한 일방적인 보호였기 때문이다.<sup>4)</sup> 그러한 상황은 적어도 청일전쟁 전까지는 계속되었다. 청일전쟁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중국의 간섭이 완화되었다.<sup>5)</sup> 하지만 중국 등 열강의 조선에 대한 침탈은 여전하였으니 조선 상민들의 상황은 그다지 달라질 것이 없었다.

따라서 청일전쟁 이전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자세는 고압적이었고 중국 華商들은 불평등조약의 보호 아래 적극 보호 받고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 점은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바이다. 그런데 그 힘이 실제로 韓中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었는지 살펴볼 수단은 그다지 많지 않다. 華商들의 진출에 조선 관리들과 상민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찾아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미이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양국 상인들 간에 전개된 소송이 아닐까 한다. 韓中間에 진행된 訴訟의 양상과 그 전개 과정 속에 그 구체적 실상이 감추어져 있을 것 같다. 양국 상인들간 충돌이 발생하였을 때 조약에 따라 華商들에게 유리한 조치가 취해질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sup>6)</sup> 실제로 현실에서도 중국측의 의도대로 소송이 진행되어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사료가 허락한다면 부분적일지라도 그 점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바로 본고에서 활용하는 [駐朝鮮使館檔]을 두고 하는 말이다.<sup>7)</sup>

지금까지 19세기말 한중관계를 연구하는 자료로는 주로 [淸案], [淸季中日韓關係史料], [日本外交文書] 등을 활용하였다. [淸案]은 조선독판과 중국총리교섭통상사의 사이에 왕래한 문건이고, [淸季中日韓關係史料]는 총리교섭통상사가 북양대신에게 보고한 문건들이다. 이에 비해, 본고에서 주로 이용하려는 [駐朝鮮使館檔]은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다.<sup>8)</sup> 여기에 포함된 청일전쟁 이전 시기의 문서는 주로, 陳樹棠 시기의 駐筭朝鮮公署, 袁世凱 시기의 駐筭朝鮮公署, 龍山公署에서 생성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기관에서 축적된 문건들은 중국의 조선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訴訟 등 다양한 방면의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어 활용 가치가 크다고 하겠

4) 鄭台燮, 韓成敏, 「開港 후(1882~1894) 淸國의 治外法權 행사와 朝鮮의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43, 2007 참조.

5) 이은자, 「'訴訟' 안건을 통해 본 청일전쟁 이후(1895-1899) 韓中關係 연구」, 『중국근현대사연구』 제38집, pp.27~28).

6)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 시기(1882~1894) 한중 양국민의 소송 안건은 중국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이은자, 「'訴訟' 안건을 통해 본 청일전쟁 이후(1895-1899) 韓中關係 연구」, 『중국근현대사연구』 제38집, p.56).

7) 「駐韓使館檔案」을 활용한 연구는 이영옥, 「한중 민간소송연구, 1906-1910;張導之案,姚貴春案,劉金有案 등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35; 김희신, 「駐朝鮮使館의 화교 실태조사와 관리; 청일전쟁 이전 한성,인천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34; 김희신, 「淸末(1882~1894) 漢城 華商組織과 그 位相」, 『중국근현대사연구』 46; 김희신, 「근대 한중관계의 변화와 외교당안의 생성-[淸季駐韓使館保存檔]을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제50집; 박정현, 「1882~1894년 조선인과 중국인의 갈등 해결방식을 통해 본 한중관계」, 『중국근현대사연구』 제45집; 박정현 외, 『중국 근대 공문서에 나타난 韓中關係-「淸季駐韓使館檔案」解題』, 한국학술정보, 2013 등의 연구성과들이 있어 도움된다.

8) 「淸季駐韓使館檔案」은 訴訟, 人事, 商務, 任內往來, 中韓交涉, 修建工程, 護照·執照, 僑務, 禁令, 各國交涉, 稅務, 輪船招商, 煙賭, 條約, 學務, 軍事, 鑛務, 租界, 開埠, 邊界, 漁業, 기타 등 모두 21개 항목, 총 856冊의 안건을 포함하고 있다. 각 冊은 안건의 중요도나 남아 있는 자료의 양에 따라 적게는 5쪽, 많게는 200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檔案의 전체 분량은 42,183쪽에 달한다(박정현 외, 『중국 근대 공문서에 나타난 韓中關係-「淸季駐韓使館檔案」解題』, 한국학술정보, 2013.6, p.25).

다.9)

[駐朝鮮使館檔]의 訴訟 자료의 가치는 이 시기의 한중관계를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소송 자료는 양국간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보여주는 민감한 문제이다. 소송이 발생하는 배경과 그 양상을 통해서 불평등조약체제 하에서의 양국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충돌 양상을 찾아볼 수 있으며, 소송을 진행하고 매듭짓는 과정에서 양국간의 실질적인 양국관계의 내면도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10)

본고에서는 불평등조약체제 초기인 陳樹棠가 總辦商務委員으로 재임하던 시기(1883년 3월~1885년 9월)보다는 소송 안건이 상대적으로 많고 조선에 대한 간섭에 보다 적극적이었던 것은 袁世凱 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그가 總理交涉通商事宜로 파견된 이후 청의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은 매우 적극적이었기 때문이다.11) 그의 재임시기인 1885년 9월에서 1894년 6월 사이의 소송 안건을 분석해 본다면 19세기말 韓中 관계의 성격 변화의 이해에 필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II. 袁世凱 시기 華商과 朝鮮人の 갈등 양상

19세기말 조선에 대한 외교를 주도하고 있던 李鴻章의 대조선 정책 중점은 조선에 대한 야욕이 있는 일본과의 외교에 두었다. 그는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조선에서 일본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화상을 통한 경제적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12) 이를 위해 袁世凱를 적임자로 보고 파견하였던 것이다. 李鴻章이 袁世凱를 적임자로 본 것은 임오군란이후 그의 대처 능력과 조선의 내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 등의 이유였을 것이다. 일본과의 경쟁구도 아래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조선을 청의 지배 아래 두려는 의도에 적합한 인물이었다.13)

청조의 정책적 보호에 따라 조선에 진출한 화상의 활동으로 한중간의 교역 규모는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청나라와 조선의 무역량은 1888년부터 급증하여 일본과의 교역 규모를 따라잡을 정도였다.14) 1892년도에 이르면 개항지 무역액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불과 10여 년 만에 이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청 정부의 보호 때문이었다.15)

이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과 함께 조선인들과의 충돌 또한 늘어났다. 그들이 조선에서 야기한 충돌과 갈등 양상이 어떠한지 이 시기의 訴訟 안건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

9) 김희신, 「漢城 開設行棧 조항 개정」 교섭과 중국의 대응, 『東洋史學研究』 113집.

10) 이영옥, 「한중 민간소송연구, 1906-1910;張導之案,姚貴春案,劉金有案 등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35, p.2.

11) 具仙姬, 『韓國近代 對清政策史 研究』, 혜안, 1999, p.125.

12) 박정현, 「1882~1894년 조선인과 중국인의 갈등 해결방식을 통해 본 한중관계」, 『중국근현대사연구』 제45집, pp.4~5.

13) 具仙姬, 『韓國近代 對清政策史 研究』, 혜안, 1999, pp.119~122.

14) 이시카와 료타(石川亮太), 「개항후 중국인 상인의 무역활동과 네트워크」, 『역사문제연구』 제20호, p.9.

15) 박정현, 위의 논문, p.7.

이유를 한 두 가지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청조의 조선 정책에 대한 저항의식이나 중국인에 대한 적대감도 있었고, 열등감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호 인식의 차이에다가 실질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로 갈등은 더욱 증폭되었다.<sup>16)</sup>

『駐朝鮮使館檔』에 포함되어 있는 袁世凱 시기의 소송안건들을 기초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駐朝鮮使館檔』의 각 宗名 속에 포함되어 있는 議題別 안건 분포를 보면 전체 858건 가운데 소송이 243건으로 28.3%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시기적으로 보면 소송 가운데서도 陳樹棠 시기가 28건, 袁世凱 시기가 41건, 唐紹儀 시기가 72건을 차지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袁世凱, 唐紹儀 시절에 364책으로 전체 안건 수의 42.4%에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이 시기에 양국간에 ‘소송’ 안건이 많았던 이유는 당시 조선에서 향유했던 중국의 영사재판권 문제와 관련이 있었음은<sup>17)</sup> 이미 지적된 바 있다. 다만 唐紹儀 시절의 소송 안건은 대체로 청일전쟁 이후의 시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하고 우선 袁世凱 시기에 일어난 소송 자료의 간략한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표1>참조).

< 표1 > 袁世凱 시기의 訴訟 안건

번호	안 건 제 목	기 간	분량	사건 내용 및 특징
1	山東船戶徐長增等駛至黃海被盜報案卷	광서11.1.~4.	27	조선인의 약탈
2	同裕號夥入內地被劫奏請照會拿賊追償卷	광서11.10.~12.5.	17	공주에서 강도
3	商人雜控各案	광서11.10.~17.11.	57	급여,사기,구타
4	朝鮮人李泰俊被劫案	광서11.11.~12.8.	22	조선인을 약탈
5	元山姚令稟到劉家驤吞烟自盡一案卷	광서12.3.~8.	98	중국인의 자살
6	審訊各案并洋員雇工各雜訟卷	광서12.3.~10.	15	구타
7	朝人姜德俊控華商牟文殿一案	광서12.9.~13.10.	19	조선인의 고소
8	華船在海州馬山浦滋事卷	광서13.4.	43	중국인, 촌민 구타
9	元山坐探委員稟報縛打日本商人卷	광서13.6.~14.3.	99	일본인을 구타
10	德商世昌行控陳同書侵吞韓電款	광서14.3.~5.	14	독일 상인이 고소
11	華商鮑豐緒等擅入朝文廟札飭提究示案	광서15.1.~2.	15	문묘 유린
12	華商德興號夥被人焚斃命并照催緝犯案	광서15.5.~16.1.	103	중국인 피살
13	華商于晏堂違章貿易貨物入韓官充公等情案	광서15.9.~10.	42	중국인 불법 무역

16) 박정현, 앞의 논문, pp.8~9.

17) 김희신, 「근대 한중관계의 변화와 외교당안의 생성-[淸季駐韓使館保存檔]을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제50집, pp.62~63.

14	華商買官參稟控各案	광서15.9.~10.	15	중국인 대금 미납
15	華商耿照賓等赴內地採辦土貨被劫	광서15.12.~16.6.	57	중국인을 약탈
16	仁川海關爲德國人馬士毆打華工劉延壽等照會外署將馬士革斥	광서16.4.~11.	87	독일인의 화공 구타
17	朝鮮平安道端川礦被賊劫金斃七命轉咨嚴緝卷	광서13.10.~17.9	60	중국인 밀수와 살인
18	遵札照會韓政府轉飭慶興府將戕斃華商之兇犯緝獲解究	광서16.8.~9.	22	중국인 살해
19	遵電轉飭將與商奇歷士拿獲移交禁辦等情	광서16.7.~12.	36	오스트리아상인 밀항
20	拿獲假冒差官勒騙之周明忠等訊辦咨辦卷	광서17.1.~2.	86	중국인의 사칭 행각
21	同順泰夥赴內地採買糧食被韓官扣留照會查辦案	광서17.3.~19.11.	74	미국 유통과 억류
22	華商在內地控追賠貨貨價並照提店主卷	광서17.9~20.4	180	중국인의 구타,사기
23	漢城府少尹示禁韓人昂價賣與華商房屋照請改銷卷	광서17.12.~18.2.	12	건물 매매법
24	華人劉永貴、孫達廷、初學仁等被盜劫死亡案	광서18.3.~19.2.	135	조선인의 중국인 살해
25	東興號在仁關失絲貨一件照飭查賠卷	광서18.6.~19.8	62	해관의 상품 배상
26	邊匪張德成等來韓滋擾搶奪案	광서18.6.~19.11.	95	중국 비적의 약탈
27	朝鮮通事金麟奎在山海關道衙門控追參價卷	광서18.7.~8.	14	중국인의 사기
28	鍾城、會寧各府使被民毆逐遵電照會韓政府擇賢明者派爲該兩府使卷	광서18.12.	9	조선 관리의 확정
29	華商李永泰等與韓人口角被韓官枷押派並前往查辦提訊卷	광서19.2.~3.	33	중국인의 구금
30	元山坐探委員稟報俄船在永興碰沉電飭往探卷	광서19.5.~9.	19	러시아 병선 사고
31	華船在內地遭風貨物被搶船戶商人被毆各案	광서19.10.~20.3.	51	중국인을 구타, 약탈
32	仁川海關華商滋事卷	광서11.12.~12.5.	151	인천 해관, 중국인 난동
33	商民糾紛：仁川	광서13.2.~19.6.	98	상민의 살인, 고소
34	商民糾紛：漢城	광서15.7.~17.6.	42	조선인과의 분쟁
35	商民糾紛：龍山	광서12.6.~19.2.	58	조선인과의 분쟁
36	華民滋事案	광서17.1.~20.3.	110	중국인의 분란
37	華商被焚案	광서13.10.~15.0.	195	화재와 중국인 사망
38	華商違禁冒入不通商口岸遭搶案	광서13.1.~7.	31	중국인을 약탈
39	增祥欠款案 (一)	광서16.5.~17.9.	202	상품 대금
40	裕增祥欠款案 (二)	광서18.윤6.~19.4.	107	상품 대금(후속조치)

<표1>의 소송 안건은 袁世凱 시기인 광서11년(1885)에서 광서 18년(1892) 사이에 발생한 각종 중국 華商과 관련된 분쟁을 보여준다.<sup>18)</sup>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袁世凱 시기의 華商들의 활동과 조선인들과의 충돌 사례는 다양했다. 당시의 충돌 사유의 다양성과 지역적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개략적으로 도식화의 방법으로 그 시대에 발생한 모든 충돌과 갈등의 사건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친 소송 안건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들 자료에서도 청국인들이 조선에서 얼마나 쉽게 불법 행위에 나설 수 있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이외에도 많은 사건이 있었겠지만 그러한 충돌과 분쟁이 너무 일반적이어서 사건화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1885년 11월 원세개 부임 이후 자국의 위세를 배경으로 침략성은 더욱 노골화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sup>19)</sup>

위의 표에서 확인된 소송 사례들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다라도 당시 華商들과 조선인들과의 충돌 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 적어도 문화적 갈등에서 시작하여 상업 거래를 포함하는 경제적 이해관계 뿐만 아니라 방화와 살인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충돌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華商들의 만행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표적인 사례가 화상 鮑豐緒 등이 조선의 文廟에 멋대로 들어가 소란을 피운 사건이다.<sup>20)</sup> 光緒15년(1889) 1월 12일 오전에 중국 상인 鮑豐緒 등 3명은 성균관 文廟를 멋대로 들어가 주먹질을 벌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성균관 측의 항의를 받았다. 범인들이 일부 잘못을 시인하고 중국인들의 분란 행위를 금지하는 告示를 내릴 것을 약속하는 데서 종결되었지만,<sup>21)</sup> 적지 않은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이것이 단순히 상호 문화적 충돌과 갈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오만에서 기인한 것으로 조선인들에게 주었을 굴욕감은 적지 않았을 것이다.

<표1>에서도 보듯이 소송안건의 다수는 조선인과 중국인의 분쟁은 절도, 사기, 등 상업거래와 관련된 것이었다.<sup>22)</sup> 주로 금전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중국 상인들이 한국인들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기 사건이나 임금 분쟁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sup>23)</sup> 淸商들이 사기와 자금 횡령 등의 이유로 피해를 당하게 되자 각각 고소한 사례들도 많았다. 폭행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과 관련된 사안들도 많았고, 중국인과 조선인뿐만 아니라 영국인 등과의 고소 고발 사건도 있었다.<sup>24)</sup>

중국인들이 조선에 진출하고 일어나는 갈등의 대표적인 것들은 내지로 들어가서 상업 활동을 하다가 발생하는 충돌이었다. 화상의 활동이 조선 내지까지 확대되면서 내지 상업을 둘러싸고 조선과

18) 『駐韓使館檔案』의 각 소송 안건에 대한 해제 작업의 결과 비교적 손쉽게 자료의 성격과 내용 및 특징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박정현 외, 『중국 근대 공문서에 나타난 韓中關係-「淸季駐韓使館檔案」解題』, 한국학술정보, 2013.6, 참조).

19) 鄭台燮, 韓成敏, 「開港 후(1882~1894) 淸國의 治外法權 행사와 朝鮮의 대응」, 『韓國近現代史研究』 43, 2007, p.18.

20) 「華商鮑豐緒等擅入朝文廟札飭提究示案」 『駐韓使館保存檔案, 袁世凱: 訴訟 11』.

21) 박정현 외, 『중국 근대 공문서에 나타난 韓中關係-「淸季駐韓使館檔案」解題』, 한국학술정보, 2013.6, p.140.

22) 박정현, 「1882~1894년 조선인과 중국인의 갈등 해결방식을 통해 본 한중관계」, 『중국근현대사연구』 제45집, p.14.

23) 「商人雜控各案」 『駐韓使館保存檔案, 袁世凱: 訴訟 3』.

24) 『중국 근대 공문서에 나타난 韓中關係』, pp.125-129.

의 청의 갈등이 빈번하였다.<sup>25)</sup>

내지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에서 조선인이 중국 화상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소송이 많았다. 중국 상인들이 公州 등 조선의 내지에서 조선인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사건도 있었다.<sup>26)</sup> 배를 이용해서 연안을 따라 불법 어로 활동하던 화상들이 현지 조선인에게 습격 받았다고 고소한 사건도 있었다.<sup>27)</sup> 심지어는 중국 선박 수십 척이 황해도 海州 馬山浦에 상륙하여 조선인을 약탈하기도 했다.<sup>28)</sup> 同裕號 소속의 解廷方이 護照를 받지 않은 상태로 충청도 公州에 가서 화물을 구매하고 돌아오다가 강도를 만나 약탈과 구타를 당한 사건도 있었다.<sup>29)</sup> 광서15년(1889) 8월에 미개항 지역인 長淵 苔灘浦로 잠입한 淸商 于晏堂이 체포되어 압수한 화물 명세서와 함께 압송되었다.<sup>30)</sup>

광서13년(1887) 1월에 중국 상인이 禁法을 어기고 통상이 인정되지 않는 평안도의 身彌島 일대로 들어갔다가 현지인들에게 약탈을 당하여 배가 불에 타고 화물 등을 빼앗겼다. 비록 중국 상인이 불법으로 현지에 들어간 것이기는 하지만 청조의 요구에 의해 조선측은 어쩔 수 없이 피해액을 보상해 줄 수밖에 없었다.<sup>31)</sup>

중국 화상들의 조선인에 대한 가해사건도 잇달았다. 光緒11년(1885) 11월 초에 京城居民 李泰俊은 황해도 長連에서 목화와 화물을 사서 배에 싣고 돌아오다 11월 2일 새벽에 瓮津 葛項浦에서 무기를 들고 배에 올라탄 중국인 6명에게 화물을 강탈당했다.<sup>32)</sup> 사건 해결을 위해 양국이 협조했지만 해를 넘겨서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sup>33)</sup> 중국의 匪賊 張德成 등이 무기를 들고 조선 함경도 지역에 와서 조선인을 공격하여 돈을 강탈한 사건도 있었다.<sup>34)</sup>

韓中 양국민들간의 충돌과 갈등의 결과로 짐작되는 사건 중 하나가 화상들의 점포에서 잇달아 발생한 화재 사건일지도 모른다. 화상들의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들을 청조측은 조선인의 방화와 범죄로 지목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인을 알지 못한 방화사건이 줄을 이으면서 그것이 중국인들에 대한 조선인들의 적대감에 기인한 방화가 아닐까 의심받았던 것이다.

실제로 광서13년(1887) 10월 7일에 漢城에서 중국 상인이 운영하는 점포 4곳이 잇달아 불에 타 그 가운데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광서15년(1889) 6월까지 각종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였다.<sup>35)</sup> 광서13년(1887) 10월 7일에는 北幫 華商 山東 平度州 출신의 張榮陞이 南門 내에 개설한 三和興號 잡화점 등에서 3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원세개가 수차례 나서서 조선측에 범인 체포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sup>36)</sup>

조선인들의 중국인들에 대한 적대 활동이 1884-1886년 사이에 집중되어 나타났다고 하지만, 이

25) 박정현, 위의 논문, p.13.

26) 「華商在內地控追賠貨價並照提店主卷」 『駐韓使館保存檔案, 袁世凱: 訴訟 22』.

27) 「山東船戶徐長增等駛至黃海被盜報案卷」 『駐韓使館保存檔案, 袁世凱: 訴訟 1』.

28) 「華船在海州馬山浦滋事卷」 『駐韓使館保存檔案, 袁世凱: 訴訟 8』.

29) 「同裕號夥入內地被劫奏請照會拿賊追償卷」 『駐韓使館保存檔案, 袁世凱: 訴訟 2』.

30) 「華商于晏堂違章貿易貨物入韓官充公等情案」 『駐韓使館保存檔案, 袁世凱: 訴訟 13』.

31) 『중국 근대 공문서에 나타난 韓中關係』, p.181.

32) 「朝鮮人李泰俊被劫案」 『駐韓使館保存檔案, 袁世凱: 訴訟 4』.

33) 『중국 근대 공문서에 나타난 韓中關係』, p.130.

34) 「邊匪張德成等來韓滋擾搶奪案」 『駐韓使館保存檔案, 袁世凱: 訴訟 26』.

35) 「華商被焚案」 『駐韓使館保存檔案, 袁世凱: 訴訟 37』.

36) 『중국 근대 공문서에 나타난 韓中關係』, p.179.

러한 사건 모두를 청국 상인들의 상권 침탈에 대한 조선인의 반발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袁世凱 시기에 들어 1887년부터는 청국인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일이 많아졌고 그 중에서 주목할 것이 防火와 같은 사건으로 보인다<sup>37)</sup> 견해는 무시할 수 없을 듯하다.

이처럼 중국 화상과 조선인의 갈등은 문화적 갈등을 넘어 상업 활동에서의 충돌을 불러 일으켰다. 불평등조약체제 아래에서의 상호 불신과 반감은 袁世凱 시기를 맞아 점차 더 노골적이고 심각한 행동으로 나아가기도 하였다. 그것은 청국인의 경제적 침략에 대한 조선인과 상인들의 저항의 한 형태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근대 조선의 정치계에서 청조를 끌어들이어 일본을 견제하려하는 등 전통과 근대화의 갈림길에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일반 조선인들의 反淸의식은 높아져 갔고 여러 가지 계기로 노골화되었다. 중국인과 조선인 사이의 구타와 살상이 일어나고, 화상들에 대한 조선인의 절도와 방화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심지어는 조선 관원에 대한 화상들의 횡포와 訴訟에서 중국인에게 유리하게 결론내리는 재판 결과와 중국인의 침탈 행위에 대한 조선의 미온적인 대응 등<sup>38)</sup>은 반청의식을 더욱 자극하였다.

그 와중에도 화상의 조선 진출과 관련한 조선인과의 충돌과 갈등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늘어났다. 청일전쟁 이후 빈번한 소송 안건은 살인 사건과 구타 상해, 유언비어 유포, 내지 통상 및 밀매, 토지 분쟁과 채무 관련 안건 등등이었다.<sup>39)</sup> 그 소송의 종류와 내용에서만 보면 韓中間의 갈등 양상은 淸日戰爭 이후에도 마찬가지로였다.

### III. 袁世凱 시기 華商의 사망 사건과 訴訟의 처리 과정

조선에 진출한 화상들의 활동 가운데 조선인들과의 갈등을 넘어 화상들이 살해되는 심각한 상황도 자주 발생하였다. 이 경우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갈등과 충돌의 양상에 비해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이 조성되어 韓中 간에 중요한 외교적 사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 해결 추이 역시 매우 민감하였다. 그 사망 사고의 배경과 처리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袁世凱 시기의 대표적 살해 사건은 다음 세 가지이다. 즉, 광서15(1889)년 5월의 「화상 덕흥호의 과반이 불에 타고 살해당하여 범인 체포를 독촉한 안건(被人焚斃命并照華商德興號夥被人焚斃命并照催緝犯案)」, 광서 16년(1890) 8월의 「찰문에 따라 조선 정부에게 경흥부에 지시하여 화상을 살해한 흉악범을 체포 압송하여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요청한 안건(遵札照會韓政府轉飭慶興府將戕斃華商之兇犯緝獲解究)」, 광서18(1892)년 3월의 「중국인 劉永貴, 孫達廷, 初學仁 등이 강도에 약탈당하고 사망한 안건(華人劉永貴,孫達廷,初學仁等被盜劫死亡案)」 등이다.

37) 鄭台燮, 韓成敏, 「開港 후(1882~1894) 淸國의 治外法權 행사와 朝鮮의 대응」, 『韓國近現代史研究』 43, 2007, pp.30-31.

38) 박정현, 「1882~1894년 조선인과 중국인의 갈등 해결방식을 통해 본 한중관계」, 『중국근현대사연구』 제45집, pp.10~11.

39) 이은자, 「訴訟」 안건을 통해 본 청일전쟁 이후(1895-1899) 韓中關係 연구」, 『중국근현대사연구』 제38집, p.36.

이러한 사망사고와 관련된 안전의 경우 그것이 실제 소송으로 전개되었을 때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가 하는 것은 일반 소송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소송과정에서 불평등조약의 하나인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에 의해 청조에 의해 일방적, 강압적으로 적용되어 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원세기 시기에는 더욱 그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때문에 실제 소송의 전개 과정에서 특히 그 결과를 확인해 봤을 때 모두 중국측의 의도대로 성과를 거두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駐朝鮮使館檔에 실려 있는 원세기 시기의 소송 자료가 가지는 사료적 가치를 확인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1. 德興號의 鄭耀 사망 사건

이 사건은 德興號의 舖夥인 鄭耀가 정체 불명의 조선인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상해로 사망하고 점포가 불에 타고 銀錢과 화물을 도둑맞았다는 사건이다. 광서 15년 5월 5일 밤에 발생한 이 사건은 다음날 5월 6일 德興號 鄭翼之가 품을 올림에 따라 알려지게 되었다. 그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德興號 鄭翼之는 廣東 香山縣人으로 한성에서 德興洋貨舖를 개설하고 장사를 시작하여 마침내 鐘樓 西街路 남쪽에 가게를 열게 되었다. 그러던 중 5월 5일 8시경에 동향인에게 고향에 보내는 서신을 부탁하기 위해 나섰다. 그가 나가면서 鄭耀에게 안에서 문을 잠그라고 했다. 그가 10시쯤 가게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기를 수 차례 하였지만 대답이 없었다. 점포 문틈 사이로 안쪽을 들여다보니 이미 불이 일어나 타고 있었고 鄭耀는 입구 쪽에 쓰러져 있었다. 그가 수차례 소리를 질러도 대답이 없어 죽은 것으로 알고 화염도 맹렬하여 급히 總署로 달려가 신고했다. 총서에서도 사람을 여러 명 보내어 점포를 구하려 했고 조선인과 일본인들도 와서 구출을 시도했지만 끝내 鄭耀는 불 속에서 구하지 못했다. 동향인들 3~4명이 시신을 찾아내어 보니 머리 쪽과 몸에 칼에 난 상처가 깊어 끔찍하였다. 점포에서 일하던 조선인 인부도 두 명 있었는데 그들은 점포에서 자지 않고 매일 저녁 귀가했다. 피해 물량은 소실된 점포와 銀錢이 1천 1백 원이고, 보존하던 화물들은 洋銀 6천백여 원 정도이며, 그 외에 장부상 1천 4백 원 정도 피해를 더 보았다. 결국 전체 피해 규모는 점원 1명 사망, 점포 소실, 현금 및 화물 등 모두 8천 수백여 원에 달했다.<sup>40)</sup>

이에 暫時代理龍山商務 吳禮堂은 袁世凱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고, 원세개는 관리를 보내 현장에서 조사하고 시신에 대해 철저하게 검시하고 상황을 확실히 파악할 것을 지시하였다.<sup>41)</sup> 이에 오례당은 조선 한성부에 함께 현장 조사와 검시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조선의 한성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그들이 差役들과 함께 현장에 도착해보니 도적은 이미 도망간 뒤였고, 겨우 불을 끄고 옆집으로 옮겨 불지 않게 했지만, 이미 그의 화물은 모두 불타버렸다. 다음날 불타죽은 鄭耀를 조사했더니 머리와 얼굴이 불타고 사지와 내장이 모두 완전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였다. 이에 刑律 전문가를 요청하여 다시 정확하게 조사하여 사실을 밝히기로 하고

40) 「華商德興號夥被人焚斃命並照催緝犯案」, 『駐韓使館保存檔案, 袁世凱 ; 訴訟 12』, pp.2-3.

41) 「華商德興號夥被人焚斃命並照催緝犯案」, 『駐韓使館保存檔案, 袁世凱 ; 訴訟 12』, p.5.

이에 뮈현승과 함께 가서 조사하였다. 시체의 검시를 위해서는 검시관인 作作이 필요한데 중국 측에 없으니 朝鮮 漢城府 衙門의 作作을 불러 조사하게 하고, 5월 7일에 아침에 오현승과 검시관들과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망자의 삼촌인 鄭渭生을 대동하여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이때 중국측이 조선의 검시관의 검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조선측의 검시관 金潤榮 등은 피해자의 상태가 머리와 얼굴, 사지가 제대로 보존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불 타 버린 관계로 제대로 검시하지 않고 또한 코와 입속에 재가 있는지 여부도 조사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조선의 검시법과 중국의 것이 다른 까닭에 상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sup>4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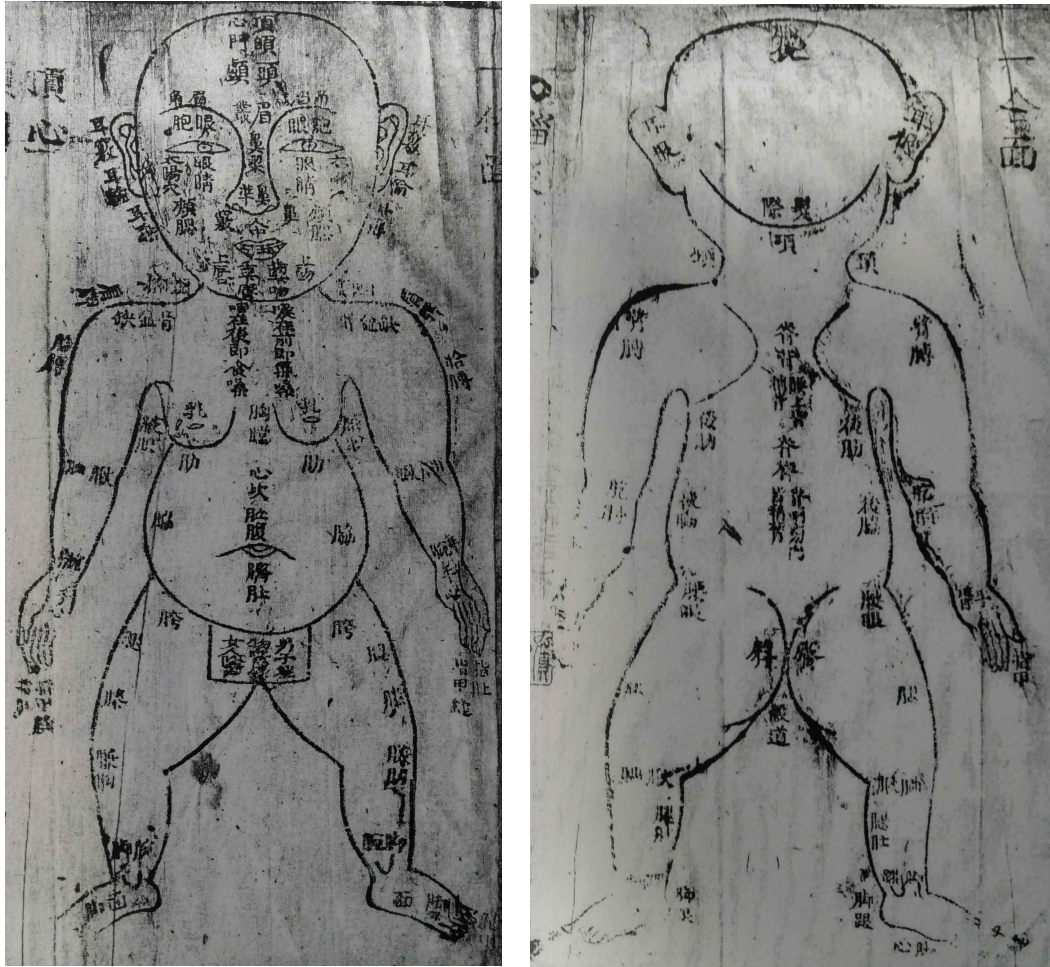
또한 시신의 위치를 두고 불 때도 鄭耀의 시신이 문 앞에 있으면서 머리는 거리 쪽 문을 향하고 발은 방문쪽으로 향하고, 얼굴은 위로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로 불 때 방 안에서 불이 일어나 덮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불이 방안에서 일어났다면 정요가 불을 보고 거리로 도망하여 살고자 하지 않고 무슨 이유로 방안에서 죽었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상황 등으로 보아 분명 피해자가 먼저 죽은 후에 불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해주는 물증도 발견되었다. 즉 시신의 의복과 신발바닥 등에 불타지 않은 부분이 있고, 주변에 혈흔이 많은 것으로 보아 이 또한 사망 흔적을 태워버리려 한 것 같다는 것이다. 이에 검시결과가 상황과 다르니 세밀한 조사를 다시 요청하였다. 鄭渭生 또한 조선의 검시관과 함께 미국 의사의 검시를 다시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5월 8일에 미국 의사 保察利는 서양 검시법에 근거하여 다시 조사하였다. 그의 검시에 따르면 칼에 찔린 상처를 보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심장을 찔렀고, 길이가 2촌 되는 예리한 칼이라고 했다. 그 외 상처로 보아 사망 전에 머리 쪽에 여러 곳에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미국 의사의 검시가 명확하다고 보고, 한국 검시관의 검시 결과와 비교해서 검시를 종결했다. 이후 시신은 가족에게 넘겨주었다.<sup>43)</sup>

미국 의사 保察利는 조선측의 檢律 金潤榮, 京兆府刑房執吏書吏 金仁植, 그리고 書記書吏 金鎮澤 등과 함께 연명으로 검시 결과와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에 따르면 두개골 부분과 심장 두 곳이 치명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시체가 이미 불에 타 버렸고 거기다가 부패가 진행되어 무엇 때문에 사망했는지 확실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덧붙였다.<sup>44)</sup> 아울러 시신의 도면과 세밀한 검시 결과를 제출하였다(아래 그림 참조).

42) 「華商德興號夥被人焚斃命並照催緝犯案」, 『駐韓使館保存檔案, 袁世凱 ; 訴訟 12』, p.9.

43) 「華商德興號夥被人焚斃命並照催緝犯案」, 『駐韓使館保存檔案, 袁世凱 ; 訴訟 12』, p.10.

44) 「華商德興號夥被人焚斃命並照催緝犯案」, 『駐韓使館保存檔案, 袁世凱 ; 訴訟 12』, p.13.



검시와 함께 현장 탐문 조사와 주변 상인들을 통해 사건의 진모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중 華商 和興成, 王鳳然, 義興號의 劉兆琦 등이 5월 7일에 품을 올려 당시 상황을 보고 하기도 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5일 밤 11시쯤 문을 닫고 마치고 쉬는데, 갑자기 큰 길에서 조선인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 보니 불났다는 소리였다. 즉각 직원들을 불러 알아보니 덕흥호에 불이 났고 조선 병사들이 구출 작업을 벌이는데 불길이 거세어 들어가 구해내 올 수가 없었다. 상인들은 덕흥호와 인근 건물이어서 마땅히 가서 구해야 하는데 당시 자신들을 지키기 바빠서 그들을 화재에서 도울 여가가 없었다. 불이 끝나고 보니 점원 한명이 사망했다고 들었다<sup>45)</sup> 라고 전했다.

원세개는 5월 9일 조선측에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하였다. 그는 검시결과와 현장에 파견했던 관리들이 보고한 바에 근거하여, 먼저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흉악한 범죄로 보았다. 즉, 머리 뒤쪽에 상처가 있고, 심장에 칼에 찔린 상처가 있으며, 의복이 아직 불타지 않은 것이 있고, 혈흔이 매우 많은 점을 그 이유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선측의 소극적인 자세에 대해 질책하였다. 즉 그보다 2년 전에 남문 안에서 화상이 3명이 불타 죽은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아직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는

45) 「華商德興號夥被人焚斃命並照催緝犯案」, 『駐韓使館保存檔案, 袁世凱; 訴訟 12』, p.21.

데도 지금 다시 사망 사건이 발생하였으니 조선 정부에는 법이 없는지, 체포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조선측의 적극적 해결 자세를 요청하였다.<sup>46)</sup> 韓 外署에 요청하여 범인 체포에 적극 나서고 현상금을 걸어서라도 서둘러 범인을 체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게 하라고 했고<sup>47)</sup> 마침내 현상금으로 洋銀 500원을 내건다고 화상들에게도 통지하였다.<sup>48)</sup>

한편 수사에 진척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덕흥호 희생자 가족들도 적극적 수사를 촉구하는 품문을 오렸다. 덕흥호의 鄭乃昌은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인천에서 德興을 열고 한국에 온 지 7년, 인력이 부족해서 조카 鄭耀를 불러와서 돕게 했는데, 5일 밤에 도적을 맞아 재물도 빼앗기고 목숨도 잃었습니다....조카 鄭耀는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살았는데, 그에게는 아들 하나뿐입니다. 20년 동안 수절하며 아들을 키웠는데, 다 자란 아들을 제가 데려와 금일에 이르러 이 참극을 맞아 죽었으니 형수가 알면 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죽은 형님 볼 면목도 없고, 한 가정이 도탄에 빠지게 되었으니, 서둘러 잡아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또한 漢城은 조선의 都會地이고 軍民들이 모이는 곳이며 순찰하는 병졸들도 곳곳에서 살피고 있어 행인들이 많고 상가들이 번성하는 중에 있는데 도적이 감히 공공연히 사람을 해치고 다시 멋대로 불을 질러 흔적을 감추었다니 실로 흉악하고 악독한 일입니다....”<sup>49)</sup>

그는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호소와 함께 그는 새로운 목격자를 제보하였다. 즉 상가 뒤쪽에 한국인이 주점을 열었는데 밤 새워 새벽까지 軍民들이 음주하는 일이 많으니 범행이 있던 10시쯤이면 주점이 한 창 술을 팔고 있었을 터이니 분명 목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선 外署에서 즉각 그 주점의 주인을 엄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sup>50)</sup> 라고 건의하였다. 이에 조선측에 요청하여 그 점포의 주인에 대해 조사하게 하였다. 그 결과 조선 한성부 소윤 金鶴鎭이 조사 결과를 보내왔다.

그에 따르면 한국인 주점 주인은 李明伯이라고 하며, 덕흥의 뒷문 맞은편에서 작은 주점으로 생업하는 자였다. 그는 5월 5일 저녁 막 옷을 벗고 자려는데 불났다는 소리에 일어나 버선발로 황급히 나가보니, 화염이 이미 오르고 있었다 한다. 무엇 때문에 불이 일어났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였고 불난 점포와 가까운 곳에서 술을 팔고 있지만 그 사람들과는 접촉이 없어 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들은 소문도 없다고 했다. 다만 현상금이 천원이라고 하는데 어찌 알면 고하지 않을 리 있겠는가 했다.<sup>51)</sup> 그를 통한 목격자 조사 역시 특별한 소득은 없었다.

이에 원세개는 7월 11일에는 朝鮮署督辦交涉通商事務 閔種默에게 두 달이 지나도록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적극 해결을 요청하였다.<sup>52)</sup> 원세개의 적극적인 수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해결은 요원하였다.

46) 「華商德興號夥被人焚斃命並照催緝犯案」, 『駐韓使館保存檔案, 袁世凱 ; 訴訟 12』, p.28.

47) 「華商德興號夥被人焚斃命並照催緝犯案」, 『駐韓使館保存檔案, 袁世凱 ; 訴訟 12』, p.22.

48) 「華商德興號夥被人焚斃命並照催緝犯案」, 『駐韓使館保存檔案, 袁世凱 ; 訴訟 12』, p.25.

49) 「華商德興號夥被人焚斃命並照催緝犯案」, 『駐韓使館保存檔案, 袁世凱 ; 訴訟 12』, p.56.

50) 「華商德興號夥被人焚斃命並照催緝犯案」, 『駐韓使館保存檔案, 袁世凱 ; 訴訟 12』, p.57.

51) 「華商德興號夥被人焚斃命並照催緝犯案」, 『駐韓使館保存檔案, 袁世凱 ; 訴訟 12』, p.68.

52) 「華商德興號夥被人焚斃命並照催緝犯案」, 『駐韓使館保存檔案, 袁世凱 ; 訴訟 12』, p.77.

사건의 해결이 지지부진 한 상황에서 당소위는 화상들의 건의에 따라 조선측에게 한성에서 발생한 한 화상들의 화재와 살인사건 미해결 된 사건들을 배상금의 지불로 일단 해결하고 매듭짓기를 제의하였다. 그가 언급한 대표적인 사건들은 光緒 13년 10월 6일 밤에 일어났던 華商 三和興號의 화재로 입은 재물 손실과 號夥 張榮陞 등 3명이 불타죽은 사건, 또 14년 5월 3일 밤 華商 同興號에 불이나 화물을 불태운 사건, 그리고 이번 華商 德興號 화재 사망사고 등이었다. 그는 “자본을 잃고 생업을 잃어 집안이 파탄하고 이역 땅에서 유리하게 되었으니 그 곤궁한 상황을 살펴보니 차마 눈을 뜨고 보지 못할 참극이라. 생각건대 조선과 중국은 본래 一氣에 속하니 한국에서 무역하는 화상들은 모든 재산은 조선 정부에서 뜻을 다하여 보호해야할 것인데, 화상들이 불의로 사람이 타 죽고 재산을 잃어버린 사건은 매우 엄중하고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상황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서로 책임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상인들이 스스로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라 호소하니”서둘러 화상들의 구휼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하며, 배상의 방법을 찾아보기를 요청하였다. 결국 범인을 잡아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손해배상으로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2. 慶興府의 趙春發 사망 사건

당시 화상들의 조선 진출과 비약적인 성장의 결과 조선인들과의 다양한 충돌과 갈등을 불러 일으켰다. 지역적으로도 한양에서 시작하여 경기, 충청, 황해, 평안, 함경도 등 각지로 확산되어갔다.<sup>53)</sup> 그 과정에서 중국인이 살해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내지에서 활동하던 중국 상인이 살해된 사건의 하나였다. 즉 함경도 慶興府에서 의문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華商 于德海 등이 품문을 올려 알려지게 되었다.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광서 16(1890)년 6월 23일 오전에 華商 于德海가 趙春發에게 갔더니 창문이 열려있지 않아 창틈으로 들여다보니 趙春發이 상처를 입고 방바닥에 누워 죽어 있었다. 동향인 杜振邦 등을 불러 함께 가보니, 온 몸이 상처투성이였으며 방안에 피 묻은 쇠도끼가 하나 놓여있고 언제 살해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했다. 이에 조선의 경흥부사와 중국측 知縣 吳賀桂 등과 함께 통역관 및 검시관을 대동하고 직접 가서 조사하였다.<sup>54)</sup> 검시 결과에 따르면 조춘발은 나이가 30여세로 얼굴과 머리 쪽에 치명적인 상처가 있다는 등 매우 구체적인 보고서를 작성하였다.<sup>55)</sup>

검시하는 작업과 동시에 于德海 등으로부터 공술도 받아내었다. 그의 공술에 따르면 조춘발은 홀로 경흥부에서 술을 판매하는 일로 생업으로 삼았고 가족도 데리고 오지 않았다. 누구에게 맞아 죽었는지 잃어버린 물건은 없는지 짐작할 수 없는데, 오직 조춘발이 6월 17일 에 慶興府 金府使의 轎夫에게 술 외상값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 다투었다는 것 외에 다른 상황은 모른다고 한다.<sup>56)</sup> 이 단서를 가지고 범인을 지목할 수는 없었다. 결국 이 검시 보고가 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53) 박정현, 앞의 논문, pp.8~9.

54) 「遵札照會韓政府轉飭慶興府將戕斃華商之凶犯緝獲解究」, 『駐韓使館保存檔案, 袁世凱 ; 訴訟 18』, pp.2-3.

55) 「遵札照會韓政府轉飭慶興府將戕斃華商之凶犯緝獲解究」, 『駐韓使館保存檔案, 袁世凱 ; 訴訟 18』, p.4.

56) 「遵札照會韓政府轉飭慶興府將戕斃華商之凶犯緝獲解究」, 『駐韓使館保存檔案, 袁世凱 ; 訴訟 18』, p.6.

袁世凱를 거쳐 北洋大臣 이홍장에게까지 보고되었다. 그것은 중국인 사망사건의 위중함 때문이었지만, 보고 날짜가 8월 25일자인 것으로 보아 사건 발생 이후 2달이 지난 뒤였다. 사건 현장이 외진 경흥부 라는 점도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사망 사건의 엄중함에 비해 처리 시간이 지체된 것은 틀림 없다.

원세개는 9월 5일 朝鮮議政府 沈舜澤에게 사건의 엄중함과 신속한 범인 체포 및 해결을 요청하였다.<sup>57)</sup> 북양대신 이홍장이 나서서 袁世凱에게 해결을 독촉하였지만, 사건의 결말은 쉽게 나지 않았다.<sup>58)</sup> 이 사건의 결말은 자료의 한계로 확인할 수 없지만, 경흥부라는 외진 지역에서 발생한 중국인 장사꾼 趙春發의 죽음을 둘러싸고 조선 정부에 그 해결을 강요하는 이홍장, 원세개 등 중국측의 고압적인 자세를 짐작할 수 있다.

### 3. 劉永貴, 孫達廷과 初學仁 사망 사건

#### 1) 劉永貴 사망 사건

세 번째 사례는 3명의 사망사고를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사례는 劉永貴가 조선인들에게 총격을 받아 부상당하였다가 결국 사망한 사건이다. 인천에서 한양으로 同順泰, 雙盛泰, 永來盛, 和順號 등의 화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화물이 약탈되고 여러 사람이 살상을 입는 위태로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중국 상인들은 仁川에서 于兆學의 배 한 척을 빌려 同順泰의 棉花와, 永來盛의 洋布 그리고 雙盛泰의 顏色과 和順號의 洋布 등을 한성으로 운반하려 하였다. 그런데 3월 22일 밤 10시경 通津地方에 이르렀을 때, 조선 선박 한척이 앞에서 갑자기 나타 앞을 가로막았다 한다. 이에 于兆學 등 3명이 상황이 위급함을 알고 방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적재된 화물을 지키기 위해 나갔더니, 조선인의 배에서 10여인이 배를 몰고 접근하여 멋대로 겁탈할 기세였다. 이에 于兆學 등은 엄히 방어하고 올라오지 못하게 하였다. 도적들은 돌을 던지고 조총을 쏘아 선원 3명이 상처를 입었다. 于兆學과 舵工 方璧潔은 몸에 상처를 입었고, 水手 劉永貴는 중상을 입는 위험한 상황이었다.<sup>59)</sup>

이에 광서18(1892)년 3월 廣幫 同順泰와 北幫 永來盛 등에서 稟을 올려, “조선 국법이 주밀하지 않아 도적이 날로 창궐하니 중국 상인들이 뜻하지 않는 해를 입게 되니 조선의 배들은 무역을 이룸 하다가 중국 배를 만나면 마음대로 약탈하고 총을 쏘고 사람을 해치니 상인들이 이후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위험한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劉永貴의 性命은 아직 알 수 없으니, 바라건데 朝鮮總署와 漢城府에 조회하여 조속히 도적을 체포하고 엄히 조치해주시기를”<sup>60)</sup> 요청하였다. 그들의 요청에 따라 관원을 보내어 피해 입은 선박을 조사하고 조선 외서에 照會하여 지방관들에게 엄히 조사하고 범죄자를 체포하도록 요청했다.<sup>61)</sup>

57) 「遵札照會韓政府轉飭慶興府將戕斃華商之凶犯緝獲解究」, 『駐韓使館保存檔案, 袁世凱 ; 訴訟 18』, p.9.

58) 「遵札照會韓政府轉飭慶興府將戕斃華商之凶犯緝獲解究」, 『駐韓使館保存檔案, 袁世凱 ; 訴訟 18』, p.18.

59) 「華人劉永貴,孫達廷,初學仁等被盜劫死亡案」, 『駐韓使館保存檔案, 袁世凱 ; 訴訟 24』, p.2.

60) 「華人劉永貴,孫達廷,初學仁等被盜劫死亡案」, 『駐韓使館保存檔案, 袁世凱 ; 訴訟 24』, p.3.

이에 우선 선박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였다. 그들은 모두 3명이었다. 당시 인천에 와서 갓 일을 시작한 山東 萊州府 출신의 42세 方璧潔과 이미 인천에서 일한 지 5년이 된 山東 登州府 출신 41세 于兆學과, 또 山東 登州府 출신의 30세인 劉永貴가 있었다. 劉永貴의 공술에 따르면, 그는 烟台에서 뱃사람 생활하다가 올 2월 仁川으로 와서 于兆學의 撥船에서 水手로 취업하였다. 그의 목격담에 따르면 사고 당일 그 배에서 10여명이 나타나 조총을 쏘았는데 좌측 복부에 10여 군데 상처가 났고, 왼쪽 앞가슴에도 상처가 있다고 했다. 특히 총알을 맞은 것은 중상이어서 치료 받고 있는 데 결과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당시 화물을 보호하려던 于兆學과 方璧潔 역시 상처를 입었지만 다행히 棉花包 뒤에 숨어 목숨을 건졌다 했다. 만일 면화포가 없었다면 화물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생명도 보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sup>62)</sup> 라고 했다.

3월 25일 원세개는 朝鮮外署督辦 閔種默에게 조회하기를 한강은 화물을 운송하는 통로이고 통진은 또한 한성으로 가는 요충인데 만일 도적이 함부로 날뛰고 총을 쏘고 살상한다면 실로 큰일이니, 서둘러 범인을 체포하여 엄히 다스려 화물 운송에 차질이 없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sup>63)</sup>라고 했다.

이때까지는 중상을 입은 유영귀는 서양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 결국 사망하였다. 駐紮朝鮮代理交涉通商事宜 唐紹儀는 朝鮮外署督辦 閔種默에게 보낸 조회문에서, 유영귀는 결국 4월 5일 아침에 사망하였으며, 10여 군데의 총상으로 인해 상처가 심각하여 의약도 별 소용이 없이 사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이미 사건 발생 후 10여일이 지났는데도 수사의 진척이 없음을 항의하였다.<sup>64)</sup> 袁世凱 역시 京畿觀察使로 하여금 해당 지방관들에게 轉飭하여 엄밀히 수사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고 요구하였다.<sup>65)</sup> 이 사건 역시 결말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총격에 의한 華商의 사망 사건은 청조측의 적극적인 간섭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하였다.

## 2) 孫建廷 사망 사건

두 번째 사건은 충청도에서 孫建廷이 사망한 사건이다. 광서 18년 5월 21일 華民 孫建寶의 품문에 따르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그의 동생 孫建廷이 3월 14일에 충청도에 토산품을 사러 갔는데 한 달여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가 가서 찾아보았으나 종적을 찾을 길이 없었다. 우연히 어떤 한국 사람을 만나 동생을 안다는 말을 들었다. 즉 동생이 충청도 洪州지방 將右島에서 어떤 한국 사람에게 속아서 그의 배를 탔다가 해를 입었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3월 28일 경에 그곳에서 배를 탔으며, 불량배들이 동생을 바다에 빠뜨려 익사시켜버렸는데 시신은 풍랑 때문에 떠내려 가버려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조사해보니 동생이 떠날 때 銀洋과 韓錢을 갖고 갔는데, 그 한국배가 그의 재물을 보고 욕심을 내어 생명을 해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가 알아 본 바로는 그 배는 濟州의 선박이며 船主는

61) 「華人劉永貴,孫達廷,初學仁等被盜劫死亡案」, 『駐韓使館保存檔案, 袁世凱 ; 訴訟 24』, p.4.

62) 「華人劉永貴,孫達廷,初學仁等被盜劫死亡案」, 『駐韓使館保存檔案, 袁世凱 ; 訴訟 24』, p.4.

63) 「華人劉永貴,孫達廷,初學仁等被盜劫死亡案」, 『駐韓使館保存檔案, 袁世凱 ; 訴訟 24』, pp.7-8.

64) 「華人劉永貴,孫達廷,初學仁等被盜劫死亡案」, 『駐韓使館保存檔案, 袁世凱 ; 訴訟 24』, p.14.

65) 「華人劉永貴,孫達廷,初學仁等被盜劫死亡案」, 『駐韓使館保存檔案, 袁世凱 ; 訴訟 24』, p.26.

高씨 라고 했다.<sup>66)</sup>

仁川 洪州彬은 품문을 올려, 이미 구체적인 사실이 파악되어 있으니 잡아들이기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外署에 조회하여 신속히 범인을 잡고 법에 따라 조치하고 그 동생의 생명을 보상해주고 원망을 풀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袁世凱는 한국 外署에 요청해서 洪州지방관에게 조사하고 조치하도록 엄중히 요청하라고 비답하였다.<sup>67)</sup>

그러나 조선측에서의 조사는 진척이 없었다. 袁世凱는 다시 韓外署督辦 閔種默에게 보낸 조회문에서, 지난번 사망 사건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지에서 활동하던 중국 상인이 사망하는 의혹 사건이 또 발생하였으니 심히 우려된다고 하며, 바다 도적의 피해가 빈발하니 법을 세워 도적들을 잡지 않으면 향후 그들은 더 큰 사건을 일으켜 중국과 한국 상인들을 위협할 터이니, 이번 사건을 잘 조사하여 그 형과 가서 자세히 조사한다면 조선에서는 쉽게 잡을 수 있을 것이다.<sup>68)</sup> 라고 적극적인 사건 해결을 요구하였다. 이홍장 역시 5월 26일에 總理衙門을 거쳐 韓外署에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였지만<sup>69)</sup> 이 역시 결과는 확인할 수 없지만 청조측의 사건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간섭은 분명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측도 자국에 불리할 경우 최대한 사건의 진상 파악을 늦추고 미온적인 처리하는 양상을 보였지만<sup>70)</sup> 조선측으로서도 진상 조사와 범인 검거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 3) 初學仁 사망 사건

세 번째 사건은 화상 初學仁이 漢江에서 돌에 맞아 죽은 일과 관련된 안전이었다. 화상 初文堦가 품문을 올렸다. 그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화상 初文堦의 조카인 初學仁은 8월 27일 인천에서 육로를 따라 王京으로 떠났다. 그는 다음날 바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지만 수 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初文堦는 걱정이 되어 길을 따라 왕경까지 찾아갔다. 왕경에서 잘 아는 곳으로 가서 어떤 위태로운 일이나 알 수 없는 사고가 없었는지 수소문하였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전날 저녁에 길 가던 한국 병사들에게 시중들다가 들었는데, 한강 남안에 한 시신이 놓여있었는데 복장이 중국인 형상이었다는 말을 했다. 이 소리를 듣자 조카 初學仁이 아닐까 의심스러웠다. 급히 그곳에 찾아가서 보니 틀림없었다. 원래 입고 있던 옷가지와 패물들은 약탈되었고, 옆에는 혈흔이 묻은 돌이 있었다. 던져서 때려죽인 돌로 보였다. 그 도적 무리들이 재산을 빼앗기 위해 목숨을 해친 것으로 보였다. 이에 중국측은 初文堦의 공술과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선 漢城府小尹에게 照會하여 협조를 요청하였다.<sup>71)</sup>

이 사건을 보고 받은 원세개는 한강은 인천과 한성을 연결하는 통로인데 도적 무리가 감히 돌로 중국 상인 初學仁을 때려 죽이고 옷가지와 돈을 빼앗았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신속한 조치를 취하라

66) 「華人劉永貴,孫達廷,初學仁等被盜劫死亡案」, 『駐韓使館保存檔案, 袁世凱 ; 訴訟 24』, p.33.

67) 「華人劉永貴,孫達廷,初學仁等被盜劫死亡案」, 『駐韓使館保存檔案, 袁世凱 ; 訴訟 24』, p.34.

68) 「華人劉永貴,孫達廷,初學仁等被盜劫死亡案」, 『駐韓使館保存檔案, 袁世凱 ; 訴訟 24』, p.35.

69) 「華人劉永貴,孫達廷,初學仁等被盜劫死亡案」, 『駐韓使館保存檔案, 袁世凱 ; 訴訟 24』, p.44.

70) 박정현, 앞의 논문, pp.13~14.

71) 「華人劉永貴,孫達廷,初學仁等被盜劫死亡案」, 『駐韓使館保存檔案, 袁世凱 ; 訴訟 24』, p.48.

고 비답하였다.<sup>72)</sup> 이에 劉永慶은 麻浦稽查委員 馮清廉을 파견하여 朝鮮漢城府 少尹 朴用元, 始興縣令 宋圭晉 등과 9월 17일에 모여 함께 조사하게 하였다. 당일 현장에 도착해서 조사하려 하니 始興縣令 宋圭晉의 관할 지역이 아니라 조사에 불편하여 다시 그를 통해 경기도의 다른 관리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과정에서 관련 문건을 보내고 하는 동안 하루가 지연되었다. 18일 오후에 경기도에서 비로소 北部都事官 丁大植이 書差와 作作人들을 거느리고 현장에 도착하여 즉시 함께 가서 상세히 시신을 조사하였다.<sup>73)</sup>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건 조사에서는 한중간의 협조가 원만히 이뤄졌지만 사건의 해결은 또 다시 지지부진되었다. 앞서 언급한 劉永貴 사망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고 于兆學 사건도 해결되지 않은 채 반년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初學仁 사건도 몇 달째 지지부진한 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중국측에서는 韓 外署에 여러 차례 照會文을 보내어 지방관들에게 흉악범을 잡아 해결해 달라고 했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고 있었다.<sup>74)</sup>

중국측의 대안은 다시 현상금을 걸어서라도 범인을 잡자는 것이었다. 중국과 한국 상인들에게 현상금을 내 건 사실을 모두 알리고 한편으로는 범인을 잡는데 노력하면서 한편으로는 상인들에게 현상금을 내건 사실을 알려 서둘러 범인을 잡자고 요청한 것이다. 그 결과 양측은 현상금으로 韓錢 1만 냥을 내걸게 되었다.<sup>75)</sup>

그 영향일까? 범인의 일부가 체포되었다. 조선의 右捕廳 軍官 李永植과 金君相 등이 범인 2명을 잡아들였다. 延安에 살던 閔仁信과 廣州에 살던 安成七 2명을 체포하였다. 그들은 바로 華人 初學仁을 돌로 쳐 죽인 범인들이라고 자백하였다.<sup>76)</sup> 이에 중국측은 해당 捕廳에게 閔仁信과 安成七을 龍山理事署로 압송하여 章程에 따라 唐紹儀와 함께 조사하겠다고 하였다.<sup>77)</sup>

唐紹儀는 조사에 참여한 과정과 그 결과를 자세히 보고하였다. 그는 범행 동기와 정황에 대해 조사함에 있어서 범인들이 진상을 숨기거나 모호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조사하기 위해 漢城府少尹 金思轍에게 범인을 내어주어 압송해 本署로 와서 함께 조사하였다. 그 날 오후 2시에 한성부 소윤이 두 범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조사를 시작하였다.

그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閔仁信은 42세로 黃海道人으로 서울에서 뿔감 장사하던 인물이었다. 그는 이름을 모르는 朴씨, 權씨, 金씨, 權씨 등 5명을 사귀었다. 8월 20일에 漢城에서 온 安成七 등과 함께 麻浦로 가서 7인이 강을 건너가서 약탈하기로 논의했다. 처음에는 한국인의 화물을 빼앗으려 했지만 실패하고 뒤따라오던 중국 상인을 돌로 쳐 죽이고 도망갔다. 이들은 그 뒤에도 30여명씩 무리를 지어 경기도 지방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빼앗는 등 노략을 일삼았다.<sup>78)</sup>

또 다른 범인 41세의 安成七은 약간 다른 진술을 하였다. 중국인이 먼저 돌로 치려하기에 閔仁信이 같이 돌을 들고 때렸으며, 나머지 일행들도 함께 돌을 던졌다고 했다. 해그림이라 보는 사람

72) 「華人劉永貴,孫達廷,初學仁等被盜劫死亡案」, 『駐韓使館保存檔案, 袁世凱 ; 訴訟 24』, p.50.

73) 「華人劉永貴,孫達廷,初學仁等被盜劫死亡案」, 『駐韓使館保存檔案, 袁世凱 ; 訴訟 24』, p.60.

74) 「華人劉永貴,孫達廷,初學仁等被盜劫死亡案」, 『駐韓使館保存檔案, 袁世凱 ; 訴訟 24』, pp.83-84.

75) 「華人劉永貴,孫達廷,初學仁等被盜劫死亡案」, 『駐韓使館保存檔案, 袁世凱 ; 訴訟 24』, p.90.

76) 「華人劉永貴,孫達廷,初學仁等被盜劫死亡案」, 『駐韓使館保存檔案, 袁世凱 ; 訴訟 24』, p.94.

77) 「華人劉永貴,孫達廷,初學仁等被盜劫死亡案」, 『駐韓使館保存檔案, 袁世凱 ; 訴訟 24』, p.97.

78) 「華人劉永貴,孫達廷,初學仁等被盜劫死亡案」, 『駐韓使館保存檔案, 袁世凱 ; 訴訟 24』, p.105.

이 없어 도망했다고 했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다시 만나지 못했다고 했다.<sup>79)</sup> 범행 동기와 진술에 일부 차이는 있지만 중국 상인을 죽였음은 분명하였다.

唐紹儀는 이들의 공술을 근거로 하여 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즉 범인들은 8월 27일 한강 모래밭에서 華商 初學仁을 처 죽였으며, 자신들이 그 죄로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조사에 거짓이 없음을 분명했다. 함께 조사에 참여한 한성부소윤 金思轍 역시 범인들의 공소사실을 확인하고, 두 범인을 데리고 돌아가려 했다. 이에 당소의는 이 사건은 인명에 관련된 중대한 범죄이니 本署에 7,8일 구금해 두고 수시로 조사하고 공소사실과 한성부 소윤이 조사한 것과 부합하지 않음이 없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면서 가두어 두겠다고 했다. 그 뒤 11월 28일에 그 둘을 압송하여 한성부 소윤에게 넘겨주고 처형 날짜를 논의하였다. 李永植과 金君相에게는 韓錢 1,000吊(庫平銀 200兩)을 지급하도록 하고 2명을 제외하고 추가로 나머지 5명도 조속히 검거하도록 한성부에 독촉하였다.<sup>80)</sup>

두 명의 범인 閔仁信과 安成七 등은 軍民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沙阿里에서 효수되었다.<sup>81)</sup> 이러한 상황을 보고 받은 이홍장은 2명을 효수한 외에 모두 7명 중 달아난 나머지 5명도 韓外署에 照催하여 방심함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sup>82)</sup>

이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서 비교적 빠르게 범인의 일부를 체포하고 범행 사실을 확인한 사례였다. 목격자도 있고 사건의 단서도 있었던 다른 사건들이 오히려 해결되지 않고 시간만 끌면서 지부진했던 것과 대비되는 경우였다. 그것은 韓中 양국간의 수사 협조도 있었지만 현상금을 내 걸고 범인 색출에 적극적이었던 측면도 있었으며 한양이라는 지역적 상황도 범인 체포와 사건 해결에 작용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IV. 맺음말

지금까지 19세기말 중국 화상들의 조선 진출과 조선인들과의 충돌과 갈등 사례를 살펴보았다. 주로 袁世凱가 總理交涉通商事宜로 재임하고 있던 시기인 1885년 9월에서 1894년 6월 사이의 韓中間의 訴訟 안건을 분석해 보았다. 특히 [駐朝鮮使館檔]에 실려 있는 소송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간섭이 심하였던 대표적 시기의 소송 안건의 종류와 특징 및 그 소송 전개 과정을 통해서 한중 관계의 한 단면을 살펴보고자 했다.

[駐朝鮮使館檔]의 소송 안건들은 袁世凱 시기 다양한 한중 양국간의 갈등과 충돌 양상을 보여주었다. 화상들이 文廟에서 소란을 피운 문화적 갈등에서부터 일상적인 상업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소송도 있었다. 그 가운데 수량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중국 화상들이 조선 각지 내지로 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발생한 충돌이었다. 심지어는 개방되지 않는 지역에서 불법 활동을 하다가 갈등을

79) 「華人劉永貴,孫達廷,初學仁等被盜劫死亡案」, 『駐韓使館保存檔案, 袁世凱 ; 訴訟 24』, p.105.

80) 「華人劉永貴,孫達廷,初學仁等被盜劫死亡案」, 『駐韓使館保存檔案, 袁世凱 ; 訴訟 24』, pp.102-103.

81) 「華人劉永貴,孫達廷,初學仁等被盜劫死亡案」, 『駐韓使館保存檔案, 袁世凱 ; 訴訟 24』, p.122.

82) 「華人劉永貴,孫達廷,初學仁等被盜劫死亡案」, 『駐韓使館保存檔案, 袁世凱 ; 訴訟 24』, p.127.

초래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국 화상들에 의한 조선인에 대한 위해도 적지 않았다. 그것이 수적으로 많지 않았지만 양국 상민들 사이의 갈등과 충돌 양상에 영향을 주었음은 분명하다.

경우에 따라 화상들의 점포에 대한 방화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대부분 범인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동기와 실체를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조선에 진출한 화상들의 활동에 대한 저항 일 가능성도 높다고 하겠다.

조선인과 화상들의 갈등과 충돌은 사망사고까지 불러 일으켰다. [駐朝鮮使館檔]의 소송안건 중 袁世凱 시기의 대표적 사망사고는 3건이었다. 이들 3건의 사망 사고는 수도권과 충청도 및 함경도 등 서로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모두 조선인에 의한 중국 화상 살해사건으로 추정되는 것이었다. 사건이 발생하자 즉각 현장 조사와 목격자 조사 및 정황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 과정에서 韓中 당국의 협조는 비교적 신속하였다.

다만 처리과정에서는 각각 차이를 보였다. 慶興府의 趙春發 사망 사건의 경우처럼 중국측의 적극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조선측의 소극적 대응으로 결국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였다. 德興號의 鄭耀 사망 사건의 경우는 한중 양국의 신속한 조사와 대응으로 사건의 실체는 파악되었으나 범인을 잡아내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 과정에서 청조측의 입장은 분명 고압적이었다. 그렇지만 결국 범인을 잡지는 못하고 조선측에서 화상들에게 적절히 배상해주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初學仁 사망 사건의 경우는 한중 양국의 수사에 따라 범인을 체포하게 되면서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성과를 거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건 발생 지역이 한성의 한강 부근이었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지만 한중 당국의 신속한 협력 수사와 현상금을 내건 수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체포된 2명은 결국 효수형에 처해졌다. 같이 범행에 참여한 것으로 지목된 나머지 5명은 잡아들이지 못하였다.

[駐朝鮮使館檔]의 소송 안건 중에서 중국 華商의 사망사건을 살펴봄으로써 19세기말 한중 관계의 일면을 찾아볼 수 있었다.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의 체제 아래에서 특히 袁世凱를 앞세운 청조의 간섭 속에서 청조측의 보호 속에 중국 화상들과 관련된 다양한 소송사례들과 그 전개 과정을 살펴 보았다.

청나라 측에서는 조선 정부에 줄곧 굴종적인 자세를 강요하였고, 그에 편승하여 華商들의 오만한 자세는 조선 상민들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양 국민들 사이의 訴訟은 중국인에게 유리한 재판이나 판결로 종결되기도 했다. 중국 화상들을 더욱 오만하게 만들었으며, 조선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소송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된 것만은 아니었다. 중국측의 고압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송은 지지부진하였다. 중국 화상의 사망사고에서도 범인을 잡지 못하고 수사가 흐지부지 종결되기도 했다. 중국측의 뜻대로 된 소송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를 볼 때 적어도 다음의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조선측은 소극적인 자세로 청조의 강압에 대응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조선 관원들로서는 불평등조약의 하나인 章程에 따른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었다. 그들의 요구가 무리하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필요하면 현장조사도 하고 관원을 파견하여 수사도 했으며, 청조의 요구에 따라 범인도 잡아 효수형에 처하기도 하고 배상금을 물어주

기도 했다. 하지만 적어도 무기력하게 그저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좀 더 다양한 자료의 섭렵을 통해서 자세히 천착하고 보완되어야 할 필요는 있다.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다. 다만 [駐朝鮮使館檔]의 소송 안전의 분석을 통해서 그 가능성은 찾은 것은 성과의 하나가 아닐까 한다.

## 19세기말 華商의 朝鮮 진출과 朝鮮人과의 충돌 - 토론문

이화승 (서울 디지털대 중국학과)

중국 상업사 분야에서 주변 국가와의 교역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송대이후 동남아시아, 고려, 일본과는 물론 북방 이민족과의 교역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상업사 연구는 각 시대별로 진행되지만 향후에는 공간을 보는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시대를 넘어 한중일의 삼국 무역과 해상무역 등이 그런 예일 것입니다. 오래전 한국 화교와 상해의 상업분쟁에 관한 글을 쓴 적도 있지만 한국에서의 화상문제는 다루어 보고 싶은 주제였습니다. 이학노선생님의 본 연구에 관한 설명을 듣고 매우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자료의 특성상 19세기 말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주로 淸案과 中日韓關係史料가 주된 자료인데 이 자료들은 조선에서의 정치적 사건과 중국인에 관련된 형사 사건의 사법 처리과정과 사후 외교적인 해결책등에 집중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도 애초 기대했던 ‘상업적 내용’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형사 사건이 주로 다루어진 느낌입니다. 표를 통해 40건의 사건이 나열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상업 분쟁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은 많지 않습니다. 당시 양국간의 교역에서 나타나는 시대상을 읽을 수 있는 사건은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주된 관심이 상업사 분야라면 분명한 논문 지향점과 자료의 확보, 세밀한 분석등이 요구됩니다. 이미 몇 편의 논문이 있지만 당시 규모가 큰 화상들은 장부도 보존되어 있고 그와 연계된 거래 상황도 부분적으로 밝혀진바가 있습니다. 문장에서 언급했던 北幫 등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밝힌다면 전체 화상 네트워크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케이스를 가지고 계량적 분석을 하면 일정 부분 화상들의 움직임을 알 수 있고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결론에서 “청나라 측에서는 조선 정부에 줄곧 굴종적인 자세를 강요하였고 그에 편승하여 화상들의 오만한 자세는 조선 상민들과의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양 국민들 사이의 소송은 중국인에게 유리한 재판이나 판결로 종결되기도 했다. 중국 화상들을 더욱 오만하게 만들었으며 조선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고 하였는데 바로 밑에서는 “중국측의 뜻대로 된 소송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다른 해석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조선측은 소극적인 자세로 청조의 강압에 대응하기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의도된 전략이라는 말인지도 애매합니다. 이에 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시하는 것이 앞으로의 작업이 될 것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진일보한 연구를 기대합니다.

문장에서 보이는 몇가지 사소한 표현의 문제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1. 우선 제목과 문장중에 ‘조선 진출’이라는 표현이 여러차례 등장합니다. 이미 기존에도 교역이 진행되었고 교역이 확대되는 국면으로 본다면 ‘진출’이라는 말이 적절할 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중국 華裔이란 말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3.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일치되지 않은 표현들이 많습니다.  
화상, 중국 상인, 清裔, 청국상인, 청국인, 중국인  
내지로 들어가서  
경성, 한성, 王京, 조선, 한국 검시관  
한국인, 조선 외서, 한국 외서, 한국 병사, 조선 관리  
한국에서 무역하는 화상들은 모든 재산은 조선 정부에서  
뜻을 다하여 보호  
중국과 한국 상인들  
19세기 말의 한중관계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칙에 의해 일관된 표현이 요구됩니다.. 부족한 토론 줄이겠습니다.

## 인천지역 華商의 仁川海關 습격사건

이헌주(국사편찬위원회)

1. 머리말
2. 인천 거류 華商들의 인천해관 습격사건
  - 1) 인천해관 습격사건의 진행과정
  - 2) 사건의 배경과 성격
3. 사건의 수습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적용
5. 맺음말

### 1. 머리말

1886년 1월 인천해관의 서양인 海關員과 조선인 巡監이 청국 군함을 타고 온 華商 呂裕生을 홍삼 밀수혐의로 연행하여 심문하다가 소문을 듣고 몰려든 수십 명의 華商들이 해관에 난입하여 해관원들을 구타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외국인이 주재국의 국가기관을 습격하여 통치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을 무력화시켰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었고,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거치면서 조선에 대해 사실상의 식민지 지배를 추구했던 청국 정부와 그 위세에 가탁한 청국인들이 조선에서 자행했던 횡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청국이 조선해관의 인사권과 운영권을 통제함으로써 조선해관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가는 가운데 이를 기회로 한 조선해관에 대한 청국인의 만연한 횡포를 보여주는 사례로 간략히 소개한다(거나<sup>1)</sup>), 1882년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 체결 이후 청국 측이 제2조의 常務委員裁判權이라는 변형된 領事裁判權을 행사하였던 실상이 잘 드러난 대표적 사건의 하나로 개략적으로 소개한 수준에 머물렀을 뿐 사건 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sup>2)</sup>

본 논문에서는 1886년 발생한 개항장 인천에 거류하는 華商들의 조선해관 습격사건의 내용과 사건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사건의 발생 배경과 성격 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 사건은 무역장정에서 금지되어 있는 화상에 의한 홍삼 밀무역이 이뤄졌고, 이들이 밀수품의 수송 수단으로 민간 선박이 아닌 청국 군함을 이용함으로써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는 사건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둘러싼 소송에서 무역장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나아가 양국 정부가 이

1) 具仙姬, 1999, 『韓國近代 對淸政策史 研究』, 해안, 209~210쪽.

2) 정태섭·한성민, 2007, 「開港 후(1882~1894) 淸國의 治外法權 행사와 朝鮮의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43, 25~27쪽.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국의 이익을 관철해 나가려 했는지 주목할 것이다. 아울러 이 사건은 조선과 청국이 세계 각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여 만국공법 질서 속에 들어가 있는 가운데 양국인 간에 벌어진 분쟁과 소송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서 조선을 ‘屬邦’이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던 청국이 양국 간의 분류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자 했고 그러한 입장이 이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는 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2. 인천 거류 華商들의 인천해관 습격사건

1886년 1월 25일(음력 1885년 12월 21일) 인천해관의 서양인 해관원과 조선인 巡監인이 삼 등 화물 밀수를 조사하던 중 申時에 미삼 7근을 소지한 華商을 붙잡았고, 酉時에는 의심스럽게 짐을 맨 채 해관 뒤편으로 지나는 화상 呂裕生을 붙들어 조사하고자 했으나 조사를 거부하며 순감을 구타하고 서양인 해관원과 힐난하며 다투다 해관에 끌고 가 심문하였다. 이 사실은 곧 인천 거류 화상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체포된 화상이 서양인 해관원에게 두들겨 맞아 위협에 처해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에 화상 삼십여 명이 인천해관에 난입하여 해관의 기물을 파손하고 관련자들을 끌어내어 구타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sup>3)</sup> 이튿날에도 화상 여러 사람이 모여 搜驗所에 투석하여 유리창을 깨뜨리고 건물을 무너뜨린 후 해관 수호를 위해 理事署에서 보내준 병력과 대치하기도 하였다.<sup>4)</sup>

인천해관 습격을 주도한 것은 인천의 청국상업회의소 會頭 林松唐이었는데, 그는 평소 인천해관의 밀수 단속에 불만을 품고 있던 청국 상인들을 이끌고 해관을 습격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해관 직원들을 구타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을 진정시키려 했던 해관세무사 스트리플링(Stripling, A. B., 薛必林)도 부상당하였다. 그 이후 해관에서는 앞서 진행하지 못했던 밀수조사를 청국 군함 鎮海號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군함의 회계책임자 陳日昇에 대한 몸수색을 단행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진일승의 주도 아래 또 다시 청국 상인들이 해관을 습격하고 해안에 있는 朝鮮巡監所를 파괴하였다.<sup>5)</sup> 이에 스트리플링은 인천에 정박 중이던 영국 군함에 지원 요청을 하여 청국 상인들을 진압하고, 통리아문에 보고하였다.<sup>6)</sup>

### 사건의 배경

화상들은 조선해관이 공평하지 않게 일을 처리하며, 평소에 화상을 억누르고 학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화상들의 官府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독일인 세관원 馬士의 가학에 대한 불만

3) 『駐朝鮮使館檔』, 袁世凱 : 訴訟 32, 仁川海關華商滋事卷, 31~35쪽 ; 『統署日記』 1, 高宗22년 12월 22일(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구한국외교관계부속문서 권3).

4) 『駐朝鮮使館檔』, 袁世凱 : 訴訟 32, 仁川海關華商滋事卷, 33쪽.

5) 정대섭·한성민, 2007, 앞의 논문, 25~26쪽.

6) 『統署日記』 1, 高宗22년 12월 22일(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구한국외교관계부속문서 권3).

조선의 공권력에 대한 경시로 청국인에 의한 밀무역 확대 경향

### 3. 사건의 수습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적용

조선 해관에서는 화상들의 해관 공격사건과 공공기관 기물 파손, 불법으로 홍삼을 무역한 사안, 화상의 군함 탑승과 홍삼 밀매, 탈세 등을 들어 해당 화상을 고소하였다. 이에 해당 화상들은 군함 탑승은 공사관에 필요한 食物과 물품을 공급하는 것이고, 인삼 등은 소량을 약으로 복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였다. 그리고 세무사가 강제로 조약의 율을 적용하는 사례라고 반박하였다. 중국 측에서는 군함의 왕래를 조사하는 것은 만무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조례에 합당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조선 정부는 袁世凱에게 사건의 진상조사와 함께 관련자의 처벌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원세개는 청국 상인들의 인삼 밀수와 해관 습격보다는 오히려 해관에 의한 청국 상인들의 체포를 더욱 문제시하였다. 그는 해관이 체포권이 없음에도 청국상인들을 불법 체포한 것이라며 해당 순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면서 해관을 습격한 청국 상인들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sup>7)</sup> 조선정부의 외무독판 김윤식은 적반하장격인 원세개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해관원에 대한 처벌을 지시하였다.<sup>8)</sup> 조선의 국가기관을 습격한 청국인들을 직접적으로 비호하는 원세개의 횡포는 해관의 공권력을 무력화시켰을 뿐 아니라 조선의 주권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였고, 이 같은 횡포는 당시 청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조선에 파견된 외국인 고용관리들까지 반발하게 만들었다. 조선해관 총세무사 메틸은 “군함을 이용한 인삼의 밀수는 더러운 짓이며, 이러한 밀수를 해관의 순감이 단속하지 못한다면 밀수의 폐단은 증가할 것이고 해관의 권한은 완전히 경시될 것”이라고 하여 해관습격 사건을 청국의 李鴻章에게 보고하였다. 결국 이홍장의 지시에 따라 원세개는 어쩔 수 없이 해관 습격을 주도한 청국 상인들을 처벌하였는데, 당시 이들에게 내려진 처벌은 林松唐 등 주모자 6명의 본국 송환과 해관의 기물 파손에 대한 배상금 80달러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청국 측의 해관 순감에 대한 처벌 요구에 따라 조선 정부에서는 “法理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단속으로 많은 사람을 분노케 했다”는 이유로 呂裕生을 해관으로 引致했던 순감 2명을 처벌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은 외국인이 주재국의 국가기관을 습격해 국가 통치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을 무력화시킨 중대한 사건이었고, 당시 청국 정부와 청국인들이 조선에서 자행한 횡포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하지만 무역장정의 제2조에 의해 조선 측은 관련자들의 재판과 처벌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없었고, 가능한 것은 단지 범인에 대한 처벌 요청뿐이었다. 반면 청국

7) 『淸案』 1, #468. 同上件閱悉 및 起關巡監處罰에 關한 回答, 高宗22년 12월 26일(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구한국외교문서 권8).

8) 총세무사 메틸은 이홍장에게 올린 보고에서 청 官民이 모두 조선의 관헌이나 제도를 멸시하고 있고 조선측은 너무 저자세라며 외무독판 김윤식의 심한 친청적인 태도로 인하여 오히려 청국에 해가 되고 있다고까지 하였다(박봉식, 1969, 「메틸」 書簡』 『김재원박사회갑기념논총』, 을유문화사, 366~377쪽).

|| 학술회의 <‘駐朝鮮使館檔’의 소송 안건을 통해 본 근대 한중관계>

측은 분쟁의 성격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내려 자국민을 보호하였다.

※ 학술회의 당일 보완된 새 발표문 배포 예정

## 인천 해관의 華船 구류사건과 章程의 적용 논쟁

- 1884년 2월 李名振船 구류사건을 중심으로 -

박은숙(고려대)

1. 머리말
2.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과 한성·양화진 開設行棧
  - 1) 조중수륙무역장정과 변질된 조중관계
  - 2) 한성·양화진 開設行棧과 장정 개정 요구
3. 華船 구류사건과 장정의 법리 논쟁
  - 1) 李名振 선박 구류사건의 발생과 그 배경
  - 2) 사건 관련 장정 조항에 대한 법리 논쟁
  - 3) 한시적 마포 진입 허용
4. 중국의 외압과 조선의 대응
  - 1) 중국의 '속방' 길들이기와 정치적 타결
  - 2) 조선의 '자주'적 대응과 굴복
5. 맺음말

### 1. 머리말

1884년 2월초<sup>1)</sup> 조선정부는 중국 상선을 인천항에 구류하고 한강 진입을 금지시켰다. 전통적 조공체제와 근대적 조약체제 사이에 자리한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이하 장정)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가던 시기였다. 중국 측은 '갑작스런' 조선의 조치에 대해 장정의 한성·양화진 開設行棧 조항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조선은 장정의 법리로 맞대응하는 한편, 만국공법의 자주권을 내세워 장정의 '폐지'를 도모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 상선의 한강 진입 문제를 둘러싼 장정의 법리 논쟁과 설전이 계속되었지만, 그 배후에는 자주를 내세워 속국의 틀에서 벗어나려는 조선의 목소리와 속국의 틀에 조선을 가두려는 중국의 은밀한 손길이 치열하게 맞부딪히고 있었다. 조선으로서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한판 승부이자 모험이었다.

그간 학계에서 '李名振선박 구류사건'을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었다. 사건을 둘러싸고 전개된 장정 논쟁과 조선 외아문의 自主權 주장, 중국의 속방 길들이기와 대원군 문제 등에 대한 분석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시기 조중 관계 이해에 매우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이 연구되지 않은 것은 자료의 문제도 있지만, 장정 체결 이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홀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1) 본 논문의 연월일은 음력을 기준으로 하였다.

본 논문은 먼저 사건의 발단이 된 장정의 한성 개설행잔 조항과 도성의 잡거지화를 우려한 청상철수 요구 및 장정 개정 요구를 살펴보고,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대두된 장정에 대한 양국의 논쟁을 고찰하고자 한다. 논점이 된 開設行棧·通商口岸 조항에 대한 해석과 개념 차이 등을 추적하고, 이면에 작동하는 양국의 정치·경제적 속셈도 눈여겨 볼 것이다. 또한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조선 '新黨'의 속방 규정에 대한 불만과 自主權 주장, 조선이 '進歩의 길'에 들어설까 두려운 중국의 협박과 회유, 대원군 귀국설에 대한 조선 정계의 대응방식 등을 분석 고찰할 것이다. 특히 장정 논쟁은 국가 간 합의문서의 해석을 둘러싼 국제적 법리 논쟁이라는 점에서, 만국공법의 自主 개념을 원용하여 장정의 속방 조항을 폐지하려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연구를 통해 이명진선박 구류사건의 배경과 실체를 밝히고, 양국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현장에서 장정이 어떻게 적용되어 가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속방을 규정한 장정체제에 대한 조선 외아문의 저항과 '平行'한 조약체제로 전환하려 했던 의도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대원군 카드로 왕권을 위협하여 조선을 굴복시킨 이홍장의 은밀한 정치적 전략을 들여다보고, 이후 反淸自主 세력을 내치고 親淸·중속을 강화하여 1894년까지 장정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자 한다.

## 2.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과 한성·양화진 개설행잔

### 1) 조중수륙무역장정과 변질된 조중관계

한국과 중국은 예로부터 국경을 맞대고 문화를 교류하면서 특별한 관계를 맺어 왔다. 두 나라 관계는 19세기 후반까지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 이른바 朝貢체제의 틀 내에서 공물을 주고 받는 宗主國과 屬國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양국의 조공 관계는 의례적인 것으로, 상대의 내치와 외교에 직접 간섭하지 않았다.

그러나 西勢東漸의 침략적 물결이 내습하면서 동아시아 정세는 요동치고 있었다. 동아시아 맹주로 자처했던 중국의 위상은 아편전쟁 후 계속 추락하였으며, 조선은 열강과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되었다. 이 시기 조선에는 조공체제와 세계체제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으며, 조선과 중국은 정세 변화에 따른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있었다.

1882년 6월 조선에서 壬午軍變이 일어나자, 중국은 3천 명의 군사를 파견하고, 조선의 내치와 외교에 간섭하고 제국주의적 침탈을 자행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정치적으로 전통적 조공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는 근대적 통상관계로 전환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 했다. 중국의 이원적 전략의 산물이 바로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이다.

1882년 8월 23일 조선과 중국은 조중상민수륙무역장정(이하 장정)을 체결했다.<sup>2)</sup> 장정은 조선·중

2) 장정에 대한 서술은 다음 연구를 참조하였다. 전해중, 1970, 『한중관계사연구』, 일조각 ; 송병기, 1985, 『근대 한중관계사연구』, 단대출판부 ; 손정목, 1994, 『한국 개항기 도시변화과정연구』, 일지사 ; 구선희,

국 상인의 水陸 통상무역에 관한 규정으로, 前文과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정은 표면상 근대적 조약의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조선정부의 비준조차 목살하고 시종일관 변질된 중주국의 특권을 강요한 불평등조약이었다.

장정의 前文은 양국 商民의 통상무역을 언급하고, 조선을 ‘藩封’ ‘屬邦’으로 명시하였으며, 다른 나라와 균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1조는 北洋大臣과 조선국왕을 동급으로 열거하고, 商務委員의 파견·처우를 규정했다. 제2조는 중국 상무위원의 치외법권 인정, 제3조는 양국 商船의 通商口岸 교역 허락, 평안·황해도와 山東·奉天 연안의 漁採 허용, 제4조는 한성·양화진 지역의 開設行棧과 執照 소지 시 내지교역 승인, 제5조는 관세 및 양국 邊界 무역 규정, 제6조는 홍삼 무역, 제7조는 중국 商局 輪船과 兵船의 왕래, 8조는 장정 수정 시 북양대신과 조선국왕의 협의 등을 규정했다.

장정은 속방을 명시했지만, 현실적으로 조선이 내정·외교의 자주권을 가진 ‘외국’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다.<sup>3)</sup> 중국의 배타적 특권을 규정한 장정은 他國의 균점을 불허했지만, 이는 열강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열강은 앞 다투어 장정의 특권을 균점하려 했으며, 조영조약은 장정을 상회하는 특권을 얻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은 속방 규정으로 최혜국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장정을 넘어서는 특권이 출현할 때마다 장정을 개정해야 하는 딜레마를 벗어날 수 없었다.

장정은 조선에 대한 중국의 식민지적 외압이 본격화되는 명분이 되었고, 심화된 내정간섭은 조선의 개화정책을 좌절시켜 자주적 근대화를 저해하였다. 특히 장정에 기초한 청상의 경제적 침투는 日商의 상권 침탈과 맞물려 조선의 유통·산업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였다. 장정은 전통적 조공체제와 근대적 조약체제가 교묘하게 착종된 것으로, 변질된 양국관계의 모순과 실체를 잘 보여주고 있다.

## 2) 한성·양화진 開設行棧과 장정 개정 요구

장정 제4조는 “중국 商民이 조선 양화진·한성에 들어가 開設行棧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이는 최초로 외국인에게 도성 내 거주·통상권을 허용한 것이다.

장정의 ‘양화진·한성 개설행잔’ 규정은 淸商이 서울에 진출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에 앞서 임오 군변 진압을 위해 파견된 淸軍을 따라 軍役상인 40여 명이 들어왔지만, 공식 허용된 것은 아니었다. 장정 체결 후 중국 상인들은 자국 범선에 화물을 싣고 한강에 들어와 하역하고, 도성 안 점포로 운반하여 판매하였다. 1883년 한강에 진입하여 하역한 중국 商船은 6~7척을 상회하였고, 1884

1999, 『한국근대 대청정책사 연구』, 해안 ; 김종원, 1999, 『근세 동아시아관계사 연구』, 해안 ; 권혁수, 『19세기말 한중 관계사 연구』, 백산자료원 ; 최덕수 외, 2010, 『조약으로 보는 한국 근대사』, 열린책들 ; 김종원, 1966, 「조중상민수륙무역장정에 대하여」 『역사학보』 32 ; 이양자, 1987, 「청의 대조선경제정책과 원세개」 『동지사학』 3 ; 한승훈, 2010, 「조선의 불평등조약체제 편입에 관여한 영국외교관의 활동과 그 의의」 『한국근현대사연구』 52 ; 김형근, 2011, 「한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개정 과정과 의미(1882~1884)」,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등

3) 김형근, 위 논문 9~11쪽

년 초 서울에 거주·통상하고 있는 청상은 수십 호, 200여 명에 달했다.<sup>4)</sup>

한성·양화진 개설행잔권은 1883년 10월 17일 체결된 조영·조독수호조약에도 그대로 보장되어 영국과 독일인이 ‘漢陽 京城 楊花津’에 ‘왕래 무역’하는 것을 허가했다.<sup>5)</sup> 이 내용은 최혜국 조항에 의거하여 미국·일본 등 다른 열강도 균점하였다. 이로써 수도 서울은 각국 외교관과 주둔군, 상민의 거주·통상이 이루어지는 雜居地로 전락하였다. 조선시대 500여 년간 외국인의 거주가 철저히 금지되었던 한성이 전면 개방되어 개시장이 된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수도에서는 볼 수 없는 충격적 사건이었다.

금단의 땅이었던 서울에 외국인의 침략적 손길이 뻗치자, 반외세 정서가 확산되고 각종 사회적·민족적 문제가 야기되었다. 특히 청상들은 가옥·토지를 매입하여 상점을 차리고 상권을 침탈하였으며, 護照를 발급 받아 지방에 가서 토산품을 매입하기도 했다. 이에 조선 상인들의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중국 상인의 증가와 상권 침탈을 계기로 조선 정부는 청상을 한성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장정 개정을 요구했다. 진수당이 1884년 3월초 이홍장에게 보낸 서한을 보면 다음과 같다.

該 정부는 華商을 인천으로 나가도록 했는데, 한성에 다른 나라가 이를 빌미로 들어올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답하기를, 이 장정은 양국 간의 특별 조약[專條]으로, 각국은 그 예를 따져 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저는 定章을 개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후에 憲臺에게 장정 개정을 요청했으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계획을 변경하여 홀연히 2월 초에 聲色을 드러내지 않고 인천 해관에 密書를 내려 산동 貨船을 구류하고, 마포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sup>6)</sup>

1884년 2월 이전에 該 정부, 곧 조선 정부가 ‘華商을 인천으로 나가도록’ 요구하고, 장정 개정을 추진한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의 요구로 진수당은 본국의 이홍장에게 장정 개정을 요청했지만, 이홍장이 허락하지 않았던 사실도 드러나 있다. 중국 선박 구류사건 또한 한성의 개설행잔 및 장정 개정 요구와 맞물려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同日 진수당이 이홍장에게 보낸 密稟에서 “반드시 陸路 및 漢城章程을 개정할 것이다.”는 조선 정부의 말을 전한 것을 보면,<sup>7)</sup> 한성개잔 관련 장정을 개정하려는 조선 정부의 의지가 매우 확고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조선의 장정 개정 요구를 묵살했지만, 장정의 특권을 뛰어넘는 조영수호조약의 내지행상권을 획득하기 위해 1883년 12월~1884년 2월에 걸쳐 장정 개정을 관철시켰다.<sup>8)</sup> 자국의 이익을 향한 제국주의적 행태가 잘 드러나 있다.

4) 본 소송 안건 21면, 1884년 2월 17일, 청상 孫慶餘가 진수당에게 보내는 稟 ; 본 소송 안건 68~69면, 3월 12일 발송, 진수당이 北洋에게 보내는 稟

5) 『고종실록』 고종 20년(1883) 10월 27일(양 11.26)

6) 본 소송 안건 68~69쪽, 3월 12일, 진수당이 北洋에게 보내는 稟

7) 본 소송 안건 70~71쪽, 3월 12일, 진수당이 북양에게 보내는 密稟

8) 김형근, 위 논문 29~30쪽

장정 체결 직후 조선정부가 청상의 도성 철수를 요구하고 장정을 개정하려 한 것은 연구사적으로도 주목된다. 그간 연구는 청상의 도성 철수 요구가 1885년 말 시전 상인의 요구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미 1883년 단계에서 조선정부는 상권 침탈과 외국인의 잡거를 우려하여 그 원천인 청상 철수와 장정 개정을 추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9)</sup> 근대 이행기, 한중 관계의 전환점이 된 장정의 체결과 개정 논의는 이시기 한중관계의 성격과 변화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 3. 華船 구류사건과 장정의 법리 논쟁

#### 1) 李名振 선박 구류사건의 발생과 그 배경

1884년 2월 7일 중국 山東 帆船 源順泰(일명 新順泰, 李明進船)<sup>10)</sup>는 조선의 수도 한성에서 판매할 貨物 445건을 싣고 인천항에 도착했다. 이튿날 원순태는 규정대로 海關에 납세하고, 한강 마포에 들어가 짐을 부리고 돌아갈 계획이었다. 그런데 인천 해관에서 華船의 한강 진입을 허용할 수 없다고 고지하고, 인천 부두에 화물을 부릴 것을 요구했다. 이명진은 곧바로 자국 仁川商務委員 李乃榮을 찾아가 사건의 전말을 보고했다.

그 배에는 서울 貞洞에 자리 잡고 장사하는 孫慶餘의 화물이 실려 있었다. 손경여는 1883년 8월에도 연태에서 상품을 싣고 한강 마포에 하역한 후, 도성 안 가게로 옮긴 경험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구류됨으로써 자신의 상품이 모래사장[海灘]에 풀어 흩어져 방치되자, 손경여는 이내영에게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했다.

이에 앞서 산동 범선 源順興 또한 연태에서 화물 1천여 건을 싣고 1월 30일 인천에 도착하였으나, 구류되어 있었다. 원순흥도 1883년 8월에도 인천 해관을 거쳐 마포에 화물을 부린 적이 있었다.<sup>11)</sup> 소송과 외교전으로 비화한 계기는 이명진 선박이었지만, 조선정부의 화선 구류는 이미 2월 1일경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전에 자유롭게 한강을 내왕했던 중국 상인들은 인천 해관의 구류 조치에 당황하였으며, 이내영을 찾아가 사건 해결을 하소연하였다. 이에 이내영은 해관을 방문하여 華船의 양화진 진입은 장정

9) 김정기, 1989, 「1890년 서울상인의 철시동맹파업과 시위투쟁」 『한국사연구』 67, 80~81쪽 ; 손정목, 앞의 책, 182~183쪽, 194~201쪽. 한성개항 이후 조선에는 청·일상의 상권 침탈과 서울 잡거지화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이는 1885년부터 지속된 서울 상인의 외국상인 철시 요구와 1895년 한성 거주 외국인의 철수를 추진한 것에도 잘 나타나 있다. 1895년 외국인 철수 주장은 토지·가옥의 이전비용 때문에 추진되지 못했고, 대신 ‘한성 내 외국인 잡거지를 한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10) 이 산동 범선의 명칭은 초기에 新順泰, 李明進船으로 지칭되었으나, 新順泰는 源順泰의 오류이고, 李明進은 李名振의 오기이며 배의 조타수[舵工]로 확인되었다.(본 소송 안건 27쪽, 1884년 2월 19일, 진수당이 민영목에게 보낸 照會). 해당 범선이 인천항에 도착한 날짜는 문서에 따라 7일, 8일로 혼동되어 있는데, 당사자인 손경여 품문에 근거하여, 본 논문에서는 7일로 서술했다.(본 소송 안건 21쪽, 2월 17일, 손경여가 진수당에게 보낸 稟)

11) 본 소송 안건 21쪽, 1884년 2월 17일, 손경여가 진수당에게 보낸 稟. 그 후에도 梁永興船·協隆泰船·苗新春船 등의 중국 배가 인천항에 들어왔다. 1월 30일 도착한 源順興은 2월 1일경 구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에 수록되어 있고, 마포에 왕래한 전례를 들어 중국 상선의 한강 출입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해관의 선박 구류가 장정을 위배하는 부당한 처사임을 강조했다. 인천 해관에서는 華船이 貨稅를 납부하지 않고 偷漏하는 폐단을 지적하고, 목린덕의 허락이 있어야 출항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2월 10일 목린덕은 總辦朝鮮商務 陳樹棠에게 편지를 보내 화선 구류에 대한 조선 측의 입장을 밝혔다.

芑南尊兄 대인각하, 삼가 친서를 받아보고 내용을 모두 잘 알았습니다. 山東 民船이 지난해 마포에 이른 것은 이미 두 차례 있었습니다. 비록 風冰을 만난 사정 등으로 그 사이 만나지 못했지만, 偷漏營私하는 폐단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상인들에게 명령하여 인천에서 納稅하고 이번에는 지시에 따라 행하고, 이후 만약 民船이 다시 사사로이 마포에 정박하면 장차 船貨를 몰수하여 官에 귀속시킬 것입니다. 번거롭더라도 장차 이러한 뜻으로 통지하기 바랍니다. 愚弟 목린덕 頓首 10일<sup>12)</sup>

목린덕은 關稅를 납부하지 않는 華船의 ‘偷漏營私’하는 폐단을 바로잡겠다는 점을 밝히고, 이후 청의 民船이 마포에 정박하면 그 화물을 몰수하여 ‘入官’할 것이라고 통고했다. 그는 관세 탈루 문제를 지적했을 뿐, 장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서신은 진수당의 친서에 대한 답장이므로, 진수당은 이미 사건을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건 발생 직후 중국 측은 장정에 근거하여 선박 구류 조치에 항의하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했다. 이내영은 “我國 商船이 양화진 지방에서 화물을 하역하고 점포에 앉아 판매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분명하게 되어 있다.”<sup>13)</sup>고 주장하고, 해관의 선박 구류가 장정을 위배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한 “무슨 까닭으로 改變하여 심상치 않은 사고를 일으키는가?”라고 하여 그 배경에 의구심을 품었다. 한편으로 선박 구류가 관세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양화진에 稅關을 설치하여 偷漏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중국 商務署는 초기 단계에서 인천해관을 상대로 교섭을 벌였다. 그러나 사안이 단순히 해관 차원의 관세 문제가 아니라 조선 정부의 의도가 개입된 것임을 파악하고, 2월 15일 조선 외아문에 조회를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로써 이 사건을 둘러싼 양국의 장정 법리 논쟁과 공방전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조선정부는 왜 갑자기 중국 상선을 구류했으며, 이 시점을 선택한 것일까?

총세무사 목린덕이 지적한 것처럼 중국 배가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몰래 ‘偷漏’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 볼 수 있다. 이는 재정난에 허덕이는 조선정부가 관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탈루만의 문제라면 중국 측에서 제

12) 본 소송 안건 3쪽, 2월 19일, 목린덕이 진수당에게 보내는 서신. 이때 ‘芑南’은 진수당의 號다.

13) 본 소송 안건 7쪽, 2월 14일, 이내영이 진수당에게 보낸 稟

시한 것처럼, 한강에 세관을 설치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해결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조선정부가 이러한 방안을 수용하지 않고, 장정 조항을 들이대는 중국 측의 공세에 한 치의 양보 없이 장정의 법리로 맞받아치며 대응한 것은 다른 배경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진수당이 분석한 것처럼, 華船 구류사건에는 청상의 한성 퇴거와 장정 개정 요구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선전포고나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조선정부는 왜 1884년 2월초라는 시점에서 화선을 구류한 것일까? 이 시기는 청상의 한성 퇴거와 장정 개정을 주장한 조선의 요구가 묵살되고, 청상의 내지행상권 확대를 위한 청의 장정 개정 요구만 일방적으로 관철된 시점이었다. 또한 조영·조독조약 체결 과정에서 제기된 균점의 문제와 자주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때였고, 仁川口華商地界章程 체결이 진행되었던 시기였다. 베트남을 둘러싼 청불 간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였다는 점도 주목된다. 게다가 청국이 대원군 카드를 흔들면서 왕권을 압박하여 조선 정계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었다.

이명진 선박 구류사건은 1882년 이후 중국의 정치적 압력과 경제적 침탈에 대한 누적된 불만과 양국 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가 청불전쟁을 기회로 전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은 장정을 둘러싼 법리 논쟁으로 표면화되었지만, 이면에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었다. 이 공방전은 만국공법 체제 아래 양국의 새로운 관계 정립에 있어서 중요한 轉機가 되었다.

## 2) 사건 관련 장정 조항에 대한 법리 논쟁

사건 발생 1주일 후인 2월 15일, 華商 손경여는 자국 공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당일 진수당 또한 외교·통상을 담당한 조선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이하 外衙門)에 照會를 보내, 공식적으로 華船 구류의 문제를 제기했다.<sup>14)</sup> 이로써 그간 인천 해관 중심으로 진행되던 사건 공방이 외아문과 진수당의 장정 논쟁으로 확대되었다.

### ① 장정 제4조, 한성·양화진 開設行棧은 ‘商船’을 포함하는가?

장정을 근거로 논쟁의 포문을 연 것은 진수당이였다. 2월 15일 그는 조선 외아문에 照會를 보내, 장정에 부합하지 않는 처사를 비판하고 구류된 선박을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駐理仁川商務 李承이 보고하기를, “山東 商人 李明進 帆船이 漢城 貨物 445건을 싣고本月 8일 입항하여 인천해관에서 검사하고 貨稅를 받았는데, 해당 선박을 구류하고 運來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수일이나 구류하고 풀어주지 않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조사해보니, 中國朝鮮貿易章程 제4조에 “中國 商民이 조선 漢城楊花津에서 開設行棧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따라 華商 船隻은 마땅히 장정에 따라 화물을 싣고 한성·양화진 등에 왕래할 수 있는데, 인천해관에서 지금 홀연히 그 배를 구류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실로 定章에 부합하지 않는다.<sup>15)</sup>

14) 본 소송 안건 12쪽, 1884년 2월 15일 조회; 舊韓國外交文書 제8권, 淸案 1, 문서번호 67 ‘청국상선의 인천 해관구류에 대한 항의’; 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 제3권(統署日記 1권) 고종 21년(1884) 2월 15일

15) 본 소송 안건 12쪽, 진수당이 민영목에게 보낸 조회.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2월 15일 민영목의 조복

진수당은 장정 제4조의 “中國 商民이 조선 양화진·한성에서 開設行棧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들어, 華商 船隻이 한성·양화진에 왕래하는 것은 장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商民’에 대한 한성·양화진 개설행잔권을 ‘船隻’의 한강 출입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공문을 받은 그날, 조선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의 주장에 반박하는 照覆을 보냈다.

귀 總辦의 조회를 받아보니, “駐理仁川商務 李承이 보고하기를, …”라는 내용이다. 조사해보니, 중국조선무역장정 제4조에 ‘중국 상민은 조선 양화진·한성에 들어가 開設行棧할 수 있다’는 말은 있지만, 중국 商船이 한강에 들어온다는 明文은 없다. 해당 상인 李明進 범선이 작년에 왔을 때 다시는 진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러므로 마땅히 제물포에서 完稅하고 화물을 내려야 한다. 지금 인천해관에서 그 선박이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통상장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제4조의 ‘모든 것은 피차의 해관통행장정에 따라[悉照彼此海關通行章程]’라는 말은 중국 商船 또한 마땅히 통상장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sup>16)</sup>

조선 정부는 장정 4조 내 중국 상민의 양화진·한성 개설행잔권은 인정했다. 그러나 개설행잔은 ‘商民’에 해당될 뿐이며, 장정에 ‘중국 商船이 한강에 들어올 수 있다는 明文’이 없다는 점을 들어 華船의 한강 출입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점은 1883년 이명진범선이 한강에 왔을 때 언명했음을 상기시켰다. 한마디로 ‘商民’의 양화진·한성 개설행잔과 ‘商船’의 한강 출입은 별개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華船의 한강 출입을 불허하는 것은 장정에 근거한 것임을 강조하고, 중국 또한 장정에 따라 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楊花津 漢城 開設行棧’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었다. 중국 측은 장정에 화선의 한강 출입을 明文化하지 않은 것은 간명하게 개괄한 장정의 성격상 ‘쓸데없는 글[冗文]’을 생략한 것으로, 양화진·한성 개설행잔은 華船의 한강 진입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양에서도 개설행잔한 곳은 선박의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 통례임을 들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했다. 그러나 조선은 개설행잔은 商民에 관한 것이며, 商船의 통행은 해관이 설치된 곳에 한정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곧 “해관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상선의 내왕을 허락하지 않는다.”<sup>17)</sup>는 방침을 고수하였다. 이에 진수당은 해관의 설치 여부는 관여할 일이 아니지만, 무역을 허락하면 선박의 왕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민의 개설행잔이 상선의 왕래를 포함하는가에 대한 양국의 해석은 각각 나름대로 논리적 개연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성 내 청상을 인천으로 퇴거시키려 했던 조선정부는 화선의 한강 진입을 허용하기 어려운 입장이었다. 이 문제는 정치적 거래로 막을 내릴 때까지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었다.

이 발송된 것으로 보아 14일경으로 짐작된다.

16) 본 소송 안건 14쪽, 1884년 2월 15일, 민영목이 진수당에게 보낸 조복 ; 『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 제3권 (統署日記 1권) 고종 21년(1884) 2월 15일

17) 본 소송 안건 25쪽, 1884년 2월 19일, 진수당이 민영목에게 보낸 조회

## ② 제3조, ‘通商口岸’은 한성·양화진을 포괄하는가?

조선 정부의 반박으로 華船의 한강 통행 문제가 벽에 부딪히자, 진수당은 장정 제3조의 ‘通商口岸’ 조항을 들어 해결책을 모색했다. 2월 19일, 진수당은 민영목에게 조회를 보내 본격적으로 통상구안 문제를 제기했다.

앞드려 읽어보니, 8조 장정 내의 ‘彼此’ 두 글자는 중국과 조선이라는 것, ‘貿易’ 두 글자는 통상이라는 것, ‘華商開設行棧之處’는 通商口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리 없으며, 本道가 준수하는 장정의 해설은 이와 같다. 만약 이러한 해설이 옳다면, 장정 제3조의 ‘兩國商船은 피차 通商口岸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華船이 한강 양화진·마포·京江口 等處에 들어갈 수 있다는 明文으로 보는 게 옳다. 마포는 양화진에 연이어 있고, 京江口는 한성의 馬頭이며, 그 지역은 모두 10리 내에 있기 때문이다.<sup>18)</sup>

진수당은 ‘開設行棧之處’는 ‘通商口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장정 3조의 ‘兩國商船은 피차 通商口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구절에 대입했다. 그리고 개설행잔을 허용한 한성·양화진은 통상구안이기에 때문에 華船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나아가 한성·양화진에서 10리 내에 있는 마포·京江口 또한 중국 상선이 왕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주장했다.<sup>19)</sup>

2월 21일 조선정부는 그의 해석에 반박하는 회답을 보냈다.

본 督辦이 생각하건대, 귀 總辦이 보낸 공문의 의도는 ‘通商口岸’ 4자에 있다. 귀 총판의 뜻에 따르면 ‘開設行棧之處’는 즉 ‘通商口岸’의 문구[字樣]와 다름이 없다는 것이며, 공문이 거듭 말하는 것은 모두 이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조사해보니, 중국조선상민수륙무역장정 8조 내에 조선의 通商各口 지명을 하나하나 수대로 밝히지 않은 것은 이미 개항한 口岸이 원래 3항구뿐이기 때문이다. 중국 商民과 외국 商民은 일정한 通行의 예에 따라야 한다. 세관[關卡]을 설치하지 않은 지역은 즉 內地가 되는 것인데, 스스로 응하지 않고 口岸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口岸이 아닌 곳에 商船이 들어가면 폐단이 일어나고 검찰할 수 없다. 중국 상선이 지레 먼저 들어와서 각국의 빌미가 되는 단서를 여는 것은 좋지 않다. 제3조에 기재된 ‘兩國商船은 피차 通商口岸에 들어가 교역할 수 있다’에서 ‘통상구안’은 오로지 3항구를 가리키는 것이며, 다시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그 뜻이 매우 분명하다.<sup>20)</sup>

민영목은 진수당의 의도가 開設行棧之處를 通商口岸으로 보는데 있다는 것을 정확히 간파했다.

18) 본 소송 안건 24쪽, 1884년 2월 19일, 진수당이 민영목에게 보낸 조회

19) 이때 10리 규정은 1883년 11월 체결된 조영조약에서 규정된 ‘조계지에서 10리’ 내에서 토자가옥 구입의 허가권과 관련된 사안이다. 장정이 균점되지 않는 ‘專條’임을 내세우면서도 조영조약의 조계지 밖 10리 조항에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조영조약 제4관 4항(최덕수 외, 『조약으로 본 한국 근대사』, 열린책들, 2010, 177쪽)

20) 본 소송 안건 28~29쪽, 1884년 2월 21일, 민영목이 진수당에게 보낸 조부

그는 장정 3조의 ‘통상구안’은 개항한 3개의 항구(부산·원산·인천)를 가리키는 것이고, 세관[關卡]을 설치하지 않은 지역은 內地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한성·양화진은 내지에 속하기 때문에 華船이 한강에 진입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2월 23일 진수당은 다시 조회를 보내 장정의 통상구안은 3항구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개설 행잔한 곳도 해당된다고 항변했다. 따라서 한성·양화진 또한 통상구안에 해당하며, 장정에 通商各口를 낱낱이 열거하지 않은 것은 冗文을 생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華商이 개설행잔할 수 있고, 執照 없이 무역하는 한성·양화진은 內地가 아니라고 강변했다.<sup>21)</sup>

이러한 논쟁은 ‘通商口岸’과 ‘開設行棧’이라는 용어에 대한 양국의 개념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국에서는 통상구안이 ‘沿江·沿海 등 도시’에 설치되었고,<sup>22)</sup> 開設行棧之處 또한 通商口岸으로 간주되었으므로, 개설행잔을 허용한 한성·양화진을 통상구안으로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다만 중국의 通商口岸에는 세관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세관이 설치되지 않은 한성과 양화진은 통상구안이 아니라는 조선의 주장 또한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또한 조선에서는 민영목이 말한 바와 같이 통상구안을 부산·원산·인천 등 개항장의 의미로 사용하였고, 한성·양화진에 세관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성·양화진은 통상구안이 아닌 내지에 해당되는 것이다.<sup>23)</sup>

진수당과 민영목은 각기 유리한 자국의 개념으로 통상구안과 개설행잔을 해석했으므로 그 차이를 좁힐 수 없었다. 게다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경제·외교적 목적이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국의 개념 틀을 고집하였으며, 결국 정치적 거래로 중단될 때까지 평행선을 유지하다가 마무리 되었다.

이처럼 중국 측은 장정의 조항을 근거로 화선의 한강 통행을 관철시키려 했으나, 조선 정부의 완강한 반론에 부딪혀 문제의 해결이 난망해졌다. 이에 진수당은 한강 진입을 불허하는 조선의 조치가 公法 밖의 일로서 장정을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sup>2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외아문 관료들은 자주를 주장하면서 당당하게 맞섰다.

### ③ 장정 前文, 조선은 ‘속방’이며 장정은 ‘균점’하지 않는가?

華船의 한강 진입을 둘러싼 공방은 장정 제3,4조의 ‘통상구안’ ‘개설행잔’에 대한 해석에 집중되었지만, 일련의 논쟁 사이를 관통하고 있었던 근본적 문제는 바로 장정 前文의 ‘속방’과 ‘균점’에 대한 것이었다.

화선의 한강 진입 여부에 대한 논쟁 중 외아문 관원들은 “반드시 중국과 各國은 모두 동등[平行]해야 한다.” “중국 상민과 외국 상민은 마땅히 일정한 通行의 例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sup>25)</sup>

21) 본 소송 안건 35면, 1884년 2월 23일, 진수당이 민영목에게 보낸 조회

22) <http://www.baidu.com/> ‘通商口岸’

23) 한국에서는 1882년 조미조약에서 처음 공식 사용되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1881년 金允植이 중국에서 이홍장을 ‘通商口岸’을 언급한 것이 처음으로 보인다. [고종실록 고종 19년(1882) 4월 6일 ; 김윤식, 『陰晴史』 상, 1882년 12월. “但能堅拒 或不因此節誤約事萬國通例 通商口岸及內地 無論何國人民 寄居 皆歸本國地方官管理”]

24) 본 소송 안건 35쪽, 1884년 2월 23일, 진수당이 민영목에게 보낸 조회

25) 본 소송 안건 36쪽, 1884년 2월 23일, 진수당이 민영목에게 보낸 조회

이러한 주장은 중국과 各國이 동등해야 한다는 것, 중국 상민과 외국 상민은 똑같이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때 중국과 각국이 동등하다는 것은, 각국과 평등한 자격으로 조약을 체결한 조선과도 동등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즉 조선은 속방이 아니며, 중국과 조선은 평등한 관계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의중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진수당이 “지금까지 屬國 體制에 속하였고 받들었던 章程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하자, 외아문 관원들은 “屬國은 內事に 관계된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고 답하고, 商務官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sup>26)</sup> 이는 조공 관계의 현실을 ‘內事’로 제한하여 인정하고, 商務와 대외 관계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려는 고민의 산물로 보인다.

이러한 조선의 주장에 대해 진수당은 “한성·양화진 무역 專條를 폐지하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內地執照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그야말로 貿易章程을 모두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sup>27)</sup> 그는 조선의 ‘平行’ 주장을 장정의 폐지 내지 개정의 문제로 해석했으며, 이홍장에게도 ‘한성 무역을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는 외아문에 대한 엄포의 성격도 갖고 있지만, 당시 조선 정부의 의도를 꿰뚫어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속방에 대한 특권으로 일관한 장정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均霑의 문제를 제기했다. 조선 정부는 열강의 균점을 매우 우려했지만, 조영조약에서 장정의 특권을 대부분 허용했다. 華船의 한강 출입 문제 또한 열강의 균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의 우려에 대해 진수당은 장정 전문에 다른 나라와 균점하지 않는다고 명시했고, 장정이 양국의 특별조약[專條]이므로 다른 열강의 균점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누차 강조했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진수당의 말을 믿지 않았으며, 오히려 “중국 상선이 지레 먼저 들어와 각국의 빌미가 되는 단서를 여는 것은 좋지 않다.”<sup>28)</sup>고 지적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조선 정부가 장정 전문의 ‘屬邦’ 조항을 ‘內事’로 제한하려 하거나 중국과 각국의 ‘平行’을 주장함으로써 조선과 중국의 평등을 간접적으로 표출한 것은 진수당의 말처럼 장정의 개정 내지 폐지 요구로 볼 수 있다. 조선은 속방을 규정한 장정체제를 동등한 국가 간 조약체제로 전환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

#### ④ 사전 고지와 육로 통상의 문제

사건 발생 후 진수당은 그간 자유롭게 드나들던 華船의 한강 출입을 금지하고 구류한 것은 장정의 사전 통고를 위배한 것이라고 항의했다. 곧 총판인 자신에게 조회하여 알리고, 북양대신에게 보고하여 본토의 상민들에게 고지해야 할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다.<sup>29)</sup>

이에 대해 민영목은 “지난해 마포에 온 山東船은 본 독판이 진실로 허락하지 않았다.”<sup>30)</sup>고 밝혀 애초에 화선의 한강 출입을 허락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통상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여

26) 본 소송 안건 31쪽, 1884년 2월 21일, 진수당이 주북에게 보낸 서신

27) 본 소송 안건 26면, 1884년 2월 19일, 진수당이 민영목에게 보낸 조회 ; 같은 자료 31쪽, 1884년 2월 21일, 진수당이 주북에게 보낸 글 ; 같은 자료 35쪽, 1884년 2월 23일, 진수당이 민영목에게 보낸 조회

28) 본 소송 안건 28면, 1884년 2월 21일, 민영목이 진수당에게 보낸 조회

29) 본 소송 안건 16~17면, 1884년 2월 16일, 진수당이 민영목에게 보낸 조회

30) 본 소송 안건 29면, 1884년 2월 21일, 민영목이 진수당에게 보낸 조복

훈계하고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각국 商船은 進口할 때 반드시 먼저 본국 관원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은 중국 상선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전에 한강에 들어왔던 화선이 2척이라고 보고받았던 민영목은 진수당의 공문을 통해 6~7척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선이 신고하지 않고 走漏한 폐단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중국 측은 水路를 모르거나 運樞 등에 관련되어 부득이하게 신고하지 않았다고 변명하였다.

조선 정부는 화선의 한강 진입은 처음부터 허가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강출입 금지와 구류조치는 사전 통고할 의무도 없고 갑작스런 조치도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오히려 멋대로 들어온 중국 상선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측은 상선의 한강 진입을 불허할 경우 인천에서 서울까지 화물 운반의 어려움을 들어 선처를 부탁했다. 陸路 운반 시 인천~서울 간 車道の 미비와 牛馬의 부족을 지적하고, 水路 이용 시 鐵釘·油灰를 사용하지 않은 조선 土船은 육중한 화물을 운반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따라서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종일 걸리기 때문에 상품이 적체되어 통상무역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다.

### 3) 화선의 한시적 한강 출입 허용

진수당은 華船의 한강 진입 문제를 놓고 조선 정부와 공방전을 벌이는 한편, 본국에 사건의 전말을 보고하고 정치적 지원을 요청했다. 사건 발생 후 서울을 목표로 인천에 도착한 선박과 회항하려는 상선에 대해 그는 며칠 기다릴 것을 주문했다. 중국에는 조선이 중국 상선의 한강 출입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음을 짐작케 한다.

사건 발생 후 20여일 만에 조선은 한시적이지만 화선의 한강 출입을 허용했다. 2월 28일 조선 외아문은 한시적으로 1개월만 중국 선박의 마포 진입을 허가하기로 협의 결정했다. 목린덕은 이 소식을 새벽 4시에 진수당에게 ‘洋文’으로 전달했으며, 진수당은 당일 목린덕을 방문하겠다는 편지를 보냈다.<sup>31)</sup> 인천의 이내영에게 전달되어 상인들에게 알려졌다. 조선 외아문은 3월 2일 조회를 발송하여 화선의 한시적 한강 진입을 공식화했다.

山東 범선 一事는 무역장정 제3조의 의미에 따라 한강에 들어올 수 없음은 이미 설명하였다. 다만 該船을 가엾게 여겨 임시로 잠시 통행을 허가한다. 현재 정한 기한은 지금부터 1개월 후이며, 다시는 한강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귀 총판은 각 상민에게 알려서 定章을 준수하고, 명확히 인식하여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sup>32)</sup>

이처럼 조선 외부는 장정 3조에 따라 한강에 들어올 수 없음을 전제하고, 다만 구류된 선박을 가엾게 여겨 ‘임시로 잠시 허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1개월 후에는 화선이 한강에 들어오는 것을 허

31) 본 소송 안건 48쪽, 1884년 2월 28일 저녁 작성, 29일 새벽 발송, 진수당이 이내영에게 보낸 서신 ; 같은 자료 49쪽, 1884년 2월 28일, 진수당이 목린덕에게 보낸 서신. 이 두 문건은 조선 외아문에서 협의 결정된 날짜가 27일과 28일로 혼동되어 있으나, 정황상 28일로 판단되어 본 논문에서는 28일로 서술했다.

32) 본 소송 안건 53면, 1884년 3월 2일, 민영목이 진수당에게 보낸 조회

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이어 총세무사인 목린덕은 華船의 偷漏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이 내용은 이전에 중국 측에서 제시한 방안과 차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의 없이 수용되었다.

제1건, 該船은 船牌를 本署에 보존하며, 연후에 본서에 약조하고 해관에 도착하여 貨稅와 선세 [船鈔]를 납부하여야 바야흐로 통행을 허락하고 마포에 들어간다. 제2건, 該船이 마포에 화물을 내린 후 이내 인천에 돌아가 해관에서 검사하여 명백히 하고, 본서에 도착하여 선패를 청하여 出口한다. 제3건, 該船이 인천에 돌아가 해관에서 검사를 받는다는 등의 말을 담보하고, 卑職이 공함을 갖추어 覆文으로 알린다. 이러한 3事는 모두 따라야 한다.<sup>33)</sup>

한강 진입이 허용되자, 청상들은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구류된 화물을 하나하나 검사하여 훼손된 물건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외 인건비와 船租 등 또한 세세히 조사하여 명세서를 만들어 배상 청구에 대비했다.<sup>34)</sup> 당시 중국 商民들은 ‘약간 배상을 받는 것’은 ‘華人の 체면’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sup>35)</sup> 배상 문제를 조선 정부 압박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그들이 조선을 ‘藩屬’이라고 지칭하고 장정의 專條를 강조하며 특권을 누리려 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sup>36)</sup>

이때 진수당과 팽팽하게 맞서던 외아문이 왜 한시적 통행을 허가한 것일까? 공문에 언급한 바와 같이 ‘該船을 가엾게 여겨’서였을까, 진수당이 말한 것처럼 ‘장정에 따라 該 外部와 詰駁’했기 때문일까?<sup>37)</sup> 아니면 또 다른 배경이 있었던 것일까?

## 4. 중국의 은밀한 위협과 조선의 대응

### 1) 중국의 ‘속방’ 길들이기와 정치적 타결

사건 발생 2주일 후인 2월 21일, 진수당은 본국의 周馥에게 서한을 보냈다. 그는 화선구류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고, 조선 외아문과 주고받은 논쟁을 요약 보고했다. 그리고 반 이상을 조선 정계 동향과 ‘背章違理’하는 외아문 관료들을 비판하는데 할애했다. 이때 그는 외아문 관료들이 제기한 중국과 각국의 平行, 倭寇 위원의 品位, 속국체제의 문제 등을 언급하고 조언을 부탁했다. 주복은 북양대신 이홍장의 신임 받는 幕僚이자 津海關道로서 天津해관의 책임을 맡고 있었다. 주복에게 보낸 내용은 이홍장에게 보고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진수당이 주복에게 서신을 보낸 지 1주일여 만인 2월말 조선 외아문은 한시적으로 華船의 한강

33) 본 소송 안건 56면, 1884년 3월 2일, 이내영이 진수당에게 보낸 품

34) 본 소송 안건 65면, 1884년 3월 8일, 이내영이 진수당에게 보낸 再稟

35) 본 소송 안건 50쪽, 1884년 3월 1일, 중국 衆商이 진수당에게 보낸 품문

36) 본 소송 안건 60쪽, 1884년 3월 5일, 중국 衆商이 진수당에게 보낸 품문

37) 본 소송 안건 52쪽, 1884년 2월 28일, 진수당의 비답

진입을 허용했다. 그리고 3월 7일 외아문 협관 洪英植을 교체했으며, 이후 독관 민영목과 협관 이조연·목린덕이 줄줄이 물러났다.

진수당은 3월 11일자로 북양대신 이홍장에게 稟文을, 周馥과 佑民에게 密函을, 3월 12일자로 이홍장에게 稟과 密稟·再稟을 안건별로 보냈다. 3월 13일에는 다시 주북에게 再密啓를 올렸다. 그는 자신의 ‘密件’을 대외비로 하여 풍설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했다. 이때 품문과 密函이 집중된 것은 중국을 왕래하는 배의 일정과 관계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4월초부터 주북의 답장과 이홍장의 비답이 연달아 도착했다.

이때 진수당이 보낸 문건에서 주목되는 것은 사건을 둘러싼 장정 논쟁보다 조선 정계의 동향과 비판에 높은 비중을 두었다는 점이다. 그는 협상보다는 본국의 정치적 압력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이에 따라 華船의 한강 출입 문제는 외아문과 진수당의 章程 논쟁에서 고종과 이홍장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본 소송 안건과 관련하여 진수당과 본국 간에 왕래한 문건은 25건이 편철되어 있다. 진수당이 본국에 보낸 15건(이홍장 6, 주북 8, 佑民 1)과 본국에서 받은 8건(이홍장 5, 주북 3), 주북이 목린덕과 원세개에게 보낸 서신 각 1건이었다. 이홍장의 비답은 사건 해결의 방향을 지시한 것으로 함축적이고 간단명료한 반면, 주북은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조선의 정세를 분석 보고한 진수당의 문건은 이홍장이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기본 자료가 되었음에 틀림없다. 당시 진수당이 본국에 보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정 조항을 둘러싼 논쟁과 입장에 관한 것이다. 진수당은 장정 4조의 開設行棧之處는 船隻의 통행을 허용해야 하고, 3조의 通商口岸은 字句에 따라 상세히 설명했으나, 외아문이 未設關 등을 고집하여 타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수당은 전문의 ‘속방’ 규정에 대해 新黨을 중심으로 강력한 저항이 있으며, 조선 정부가 “自主의 뜻을 세워 屬國을 인정하지 않고 무역장정을 폐지하고자 한다.”<sup>38)</sup>고 보고했다. 또한 조선정부가 중국과 각국의 平行을 주장하면서 장정 1조의 규정에 따라 파견한 관리의 品位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을 전했다. 그는 장정 조항으로 설득하고 全權의 자격으로 압력을 행사해 보았지만, 자신의 선에서 해결할 수 없음을 하소연하고 본국 개입의 필요성을 암시했다.

둘째, 조선 정계의 동향에 대한 정보와 분석이다. 진수당은 조선의 정치세력을 新黨과 舊黨으로 구분하고, 자주국을 주장하는 신당을 집중 비판했다. 이때 신당은 “국왕과 閔姓, 그 심복인”<sup>39)</sup>으로, 고종과 세칭 민씨척족세력 일파를 지칭하고 있다. 그는 신당이 왕과 관리를 조종하여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화선 구류사건 또한 신당의 주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고종이 유약하여 왕비가 정사를 독단하며, 閔泳翊 閔泳穆 등 이른바 ‘閔黨’이 모든 정사를 좌우한다고 했다. 이에 세간에서는 ‘閔王’이라는 密語가 있다고 전했다.<sup>40)</sup>

또한 외아문 협관이자 해관 총세무사 목린덕이 조선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화선 구

38) 본 소송 안건 75쪽, 1884년 3월 11일, 진수당이 주북에게 보낸 密函

39) 본 소송 안건 71면, 1884년 3월 12일, 진수당이 某(이홍장)에게 보내는 密稟

40) 본 소송 안건 60면, 1884년 3월 5일, 중국 衆商이 진수당에게 보낸 稟 ; 같은 자료 71면, 1884년 3월 12일, 진수당이 某(이홍장)에게 보내는 密稟 등

류사건도 목린덕이 주도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목린덕은 이홍장의 추천으로 조선의 외교와 해관 업무를 맡았던 인물이지만, 사건이 진행 과정에서 청에 비협조적인 인물로 매도되었다.

그러나 조선은 거국적으로 ‘舊黨’이며, 대부분 조선인은 중국을 믿고 따른다고 보고했다. 신당과 구당은 원수처럼 대적하고 있어 형세가 변란이 일어날 형국이라고 내다보았다.

셋째, 대원군에 대한 민심의 동향 보고다. 대원군은 백성들의 신망이 매우 깊은 인물로, 청군이 대원군을 잡아간 후 청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었다고 보고했다. 華船 구류사건도 민간에서는 대원군을 압송하고 閔씨를 도운 중국의 자업자득이라는 密語가 있다고 전했다. 국면 전환에 대원군 카드를 이용할 필요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일본 영향력 증대에 대한 경계와 조선 정계의 친일화에 대한 우려이다. 진수당은 외아문이 ‘일본을 우대하고 華人을 가혹하게 한다.’고 평하고, 閔黨이 일본 사신과 密謀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인천해관의 관세를 일본은행에서 대신 수납하고, 청상이 일상보다 세금을 더 지불하는 폐단을 언급했다.

그 외에 조선에서 텐진에 파견된 역관 卞元圭와 商務委員 南廷哲을 경계할 것을 당부하고, 신당의 심복인 이들이 정세를 밀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수당의 보고를 접한 본국의 답변은 주로 장정의 문제로 국한되어 있었으며, 조선의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4월 5일 도착한 주복의 답장은 다음과 같다.

다만 內河와 海口는 원래 구별이 있는데, 당일 장정을 議訂할 때 海船이 한강에 직행하는 것은 알지 못했으므로 이번에 주장하지 못했다. 지금 저들이 장정에 明文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실로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오직 該國 민선은 載貨를 감당하지 못하고, 만약 華船의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 漢城貿易을 허락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반드시 힘써 싸워야 한다. 특별히 저들이 이와 같이 처리하였으니, 지금 만회하려면 마땅히 그 轉圜의 처지에 화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sup>41)</sup>

주복은 원래 內河와 海口의 구별이 있는 것이므로, 조선 정부에서 華船의 한강 진입을 불허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화선 진입을 불허하는 것은 한성무역을 불허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조일통상장정 21조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조언했다.

4월 13일 도착한 이홍장의 비답은 사건 처리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한성·양화진 개설행간이 양국의 ‘특별장정[專章]’임을 강조했다. 화선의 한강 진입 불허는 화상의 漢城貿易을 불허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定章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내용을 조선 정부에 轉飭하여 화선이 한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관련하여 주복은 이홍장의 자문이 도착하면 조선 정부가 ‘轉圜’할 것이라고 했다.

진수당은 4월 14일 조선 외아문에 조회하여 이홍장의 비답을 전달했다.

조선정부는 조회를 받은 당일 화선의 한강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문을 진수당에게 발송했다.

41) 본 소송 안건 95면, 1884년 4월 5일, 주복이 진수당에게 보낸 函

그간 속방을 거부하며 강력하게 맞서 왔던 외아문이 마치 이홍장의 비답을 기다리거나 한 듯이 곧바로 허용 조치를 내렸다. 이미 3월 6일부터 외아문 관료에 대한 물갈이가 시작되었으니, 이미 이홍장의 비답을 수용할 기반이 조성되어 있었다.

원하는 답을 얻어낸 진수당은 4월 15일 조회를 보내 이러한 조치는 ‘매우 공평 타당하다’고 평가하고, 나아가 200톤 이하라는 조건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선은 “商務가 번창할 때를 기다려서 다시 상의하여 결정하도록”<sup>42)</sup>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4월 19일 진수당은 이홍장에게 “조선은 이미 華船의 한강 진입을 허락했고, 지난해 多收한 貨稅는 다시 조회하여 반환토록 했다”고 보고하고, 사안이 이미 완결되었으므로 再言하지 않는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sup>43)</sup>

4월 21일 진수당은 조선 외아문과 회동하여 확정된 ‘華商船隻往來漢江章程’(이하 ‘한강장정’ 표기)을 화상들에게 고시하고 숙지하도록 했다. 한강장정은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천 해관을 거쳐 한강에 들어오기까지의 절차와 과정을 서술하였다. 주 내용은 인천 제물포항에 가서 관세를 완납하고, 船牌를 갖고 마포에 들어가 신고한 후 화물을 하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중국은 ‘不善’한 목린덕을 해임시킨 후 후임으로 조종 가능한 ‘洋人’을 물색했다. 이후 중국은 蘇兒士(Shulze)에게 의뢰하여 인천에서 한강에 이르는 河道의 深淺 등을 탐색하여 지도를 제작하도록 했다.<sup>44)</sup>

이처럼 중국은 자주국을 주장하면서 장정의 법리를 따지던 외아문 관료들을 교체시키고, 일거에 조선을 굴복시켜 화선의 한강 진입을 관철시켰다. 이로써 종주국으로서의 위력을 과시하고 장정체제를 확고히 구축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사회의 청에 대한 중속이 가속화되고, 정치세력의 친청화를 부추겼다. 그간 당당하게 자주국을 부르짖었던 조선의 목소리를 단번에 꺾어버린 비장의 카드는 무엇이였을까? 어떤 거래가 있었을까?

## 2) 조선 정부의 ‘自主’적 대응과 일방적 굴복

1884년 2월초부터 조선 정부는 중국 商船을 인천항에 구류하고 한강 진입을 금지시켰다. 진수당은 장정을 위반한 조치라고 맹렬히 비난하고, 압력과 회유를 병행하였다. 그러나 사건을 주도한 외아문 관료들은 장정의 법리로 맞대응하고, 自主를 주장하면서 당당하게 맞섰다. 진수당이 본국의 이홍장과 주북에게 보낸 비밀 문건을 들여다보자.

① 그 후 저들은 항상 서양의 예를 들어서 말하기를 “屬國은 自主를 얻을 수 없는데, 지금 高麗는 自主함으로 실로 속국이 아니다... 어찌 속국이 각국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는가? 自主를 인정받으면 곧 속국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제가 답하기를, “중국과 서양은 체제가 각기 다르고, 너희는 중국과 遊歷한지가 오래 되었는데, 어찌 전에 듣지 못했던 말인가”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중국

42) 본 소송 안건 109면, 1884년 4월 18일, 김병시가 진수당에게 보낸 조회

43) 본 소송 안건 112면, 1884년 4월 19일, 진수당이 이홍장에게 보낸 稟

44) 본 소송 안건 134면, 蘇兒士 보고문. 날짜 미상

체제를 좋아하지 않으며, 반드시 改變해야 한다고 하면서 분분함이 그치지 않습니다.<sup>45)</sup>

② 該國이 교섭에 무지하여 外人에게 의지하여 심복이 되어, 다른 사람의 말을 믿고 서양에서는 속국은 自主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드디어 自主의 뜻을 세워 屬國을 인정하지 않고 무역장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아는 것입니다.<sup>46)</sup>

이 자료를 보면, 외아문은 각국과 조약을 체결한 조선은 속국이 아니라 자주국임을 강조하고, 속국을 강요한 “중국체제를 좋아하지 않으며 반드시 改變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속방을 규정한 ‘무역장정을 폐지’하여, 명실 공히 자주국을 구현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진수당은 이러한 조선 측 주장의 배후에 外人, 곧 목린덕의 존재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때 조선이 각국과의 조약을 근거로 자주국을 주장한 것은, 『만국공법』의 국가의 主權과 自主之權·平行之權·立約之權 등의 논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sup>47)</sup> 장정의 법리 논쟁 과정에서 『만국공법』의 自主·平行·立約 등의 용어와 개념이 술하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 외아문 관료들은 『만국공법』의 개념을 이용하여 각국과 立約한 조선의 自主之權을 주장했으며, 不平行한 장정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장정 개정을 주장하는 논거로 활용하였다. 조선정부가 자주국을 주장하면서 장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진수당은 “저들이 進歩의 길을 가게 되면 만부득이 함에 이를까 두렵다.”<sup>48)</sup>고 우려했다.

장정 논쟁의 도화선이 된 화선 구류사건에 대한 조선 정부의 입장은 확고했으며, 조선 정계의 실력자들과 친밀했던 袁世凱를 통해 청상들에게 전달되기도 했다.

衆商이 防軍營務處同知 원세개가 國王과 新黨의 신망이 있어 중재를 부탁하였는데, 원세개가 상인들에게 諭示하기를, 「該國은 배의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니, 該國에서 별도로 제조한 土船으로 화물을 운반해야 한다.」고 하자, 衆商이 물러나 뒷말이 많았다.<sup>49)</sup>

이처럼 조선의 입장을 확인한 원세개는 자국 상인들에게 조선의 土船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을 당부했다. 그만큼 조선 정부의 방침이 확고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간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던 외아문이 2월 하순부터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진수당의 보고를 받은 이홍장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문서에 잘 드러나 있지 않았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강력한 손길이 작동하면서 조선 정계는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1884년 2월 28일 조선정부는 1개월 기한으로 화선의 한강 진입을 허용했다. 얼마 후 3월 6일 외아문 협판 홍영식이 갑자기 함경북도병마수군절도사겸안무사로 발령받았다. 이어 3월 13일 독판 민영목, 3월 16일 협판 이조연, 3월 17일 협판 목린덕이 연달아 외아문 직에서 물러났다.<sup>50)</sup>

45) 본 소송 안건 70면, 1884년 3월 12일, 진수당이 이홍장에게 보낸 密稟

46) 본 소송 안건 75면, 1884년 3월 11일, 진수당이 주복에게 보낸 密函

47) 『만국공법』 제2권 3장, 제3권 2장 등

48) 본 소송 안건 71면, 1884년 3월 12일, 진수당이 이홍장에게 보낸 密稟

49) 본 소송 안건 112면, 1884년 4월 19일, 진수당이 이홍장에게 보낸 稟

이시기 화선 구류사건을 주도한 외아문의 인적 구성을 보면, 독관 閔泳穆, 협관 金晚植·金弘集·李祖淵·洪英植·목린덕, 참의 李教榮·卞元圭, 주사 鄭憲時·高永喆·朴齊純 등이 있었다.<sup>51)</sup> 외아문의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독관 1인·협관 5인 가운데 2/3에 해당하는 4인을 전격 교체함으로써 조직의 근간을 흔들어 물갈이한 셈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름만 걸어놓은’ 金炳始를 독관으로, 親淸 인물인 金允植과 尹泰駿을 협관으로 들어앉혔다. 김윤식은 일찍이 속국을 인정하고 중국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sup>52)</sup>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외아문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바꾼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진수당이 “卞元圭가 텐진에서 돌아와 外部 3인이 경질되었다.”<sup>53)</sup>고 한 말이 주목된다. 이는 외아문 관료들의 경질이 중국에서 돌아온 역관 변원규의 어떤 정보에 의한 것임을 알려준다. 2월 1일 변원규는 欽差提督 오장경과 함께 텐진으로 출발했다가 이 무렵 귀국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변원규가 가져온 정보가 어떤 것인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중국 이홍장의 조선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집권층에 전달되었음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외아문 인사 직후 3월 17일자 윤치호의 일기를 보자.

胡奴 尹泰駿·金允植 등이 민태호와 함께 모의하여 날마다 참조하기를 “外務官은 적임자를 얻지 못하여 일을 많이 그르쳐서 중국인들이 좋아하지 않게 되었다. 만약 이와 같은 것을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중국에서 論罪할 때가 있을 것이며, 국가가 위태해질 것이다.”는 말을 하고, 王后를 위협[脅威]했다... 胡奴輩들이 “외아문에서 일을 잘못하여 中國人의 歡心을 잃게 되었다”고 비방한 것은 근래 중국 선박이 마포 등 京江에 닿을 내리고 정박하였기 때문에 외아문에서 그들이 조약 외의 일을 행함을 논박했기 때문이다.<sup>54)</sup>

청에 붙은 ‘胡奴’ 윤태준·김윤식과 민태호 등이 날마다 외아문 관료를 참조하고 비방했는데, 그것은 華船의 한강 진입 금지 조치로 중국인의 환심을 잃어 論罪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 시점에서 ‘중국의 논죄’와 ‘국가의 위태’를 들먹이며 외아문 관료를 비판하고 왕비를 위협했을까? 감히 조선의 권력을 ‘擅專’하는 王后를 위협하고 굴복시킬 수 있는 절대적 카드는 무엇이었을까? 그 시점과 위협적인 내용으로 보아, 변원규가 중국에서 가져온 정보와 결코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화선 구류사건이 일어난 1월 하순부터 3월 상순까지 고종와 왕후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초미의 관심사를 살펴보자.

50) 『고종실록』 고종 21년(1884) 3월 6일 ; 『승정원일기』 고종 21년(1884) 3월 13일, 16일, 21일 ; 『통서일기』 고종 21년(1884) 3월 17일, 3월 18일~3월 29일. 목린덕에 대한 조치는 드러나지 않는데, 3월 17일 외아문에 출근한 이후 출근 기록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3월 17일경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51) 『통서일기』 1권 1884년 1월~3월 출근 기록

52) 『고종실록』 고종 21년(1884) 3월 13일 ; 김윤식, 『陰晴史』 1881년 12월 27일 등

53) 본 소송 안건 115쪽, 1884년 4월 19일, 진수당이 주복에게 보낸 函 “自卞元圭津旋 更換外部三人”

54) 윤치호, 『윤치호일기』 1884년 3월 17일(양 4.12)

① 下教 내에 “石坡[대원군]가 淸廷과 모의하여 위세를 업고 귀국한다.”고 했다. 내가 아뢰기를 “만약 그렇다면 어찌 할 것입니까?” 하니, 상께서 “만약 그렇다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였다.<sup>55)</sup>

② 상께서 말하기를 “보정부에서 銀 6만 냥으로 순친왕의 마음을 사서, 자기가 귀국한 후 청국을 소탕하려는 外國黨을 일망타진하고, 외국 공사·영사를 쫓아낸 후 조선 땅을 헌납할 것을 중국에 청하였다. 청국도 그 말을 달게 여겨 장차 院位를 내보낼 것이라고 한다. 만약 원위가 한번 나오면 어찌 위태롭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하교를 마치자 三殿께서 매우 두려워하였다.<sup>56)</sup>

③ 밤에 入侍하니, 聖宮列位가 보정부 등의 일로 걱정이 그치지 않았다.<sup>57)</sup>

④ 이날 들으니, 보정부 等說은 虛傳이라고 하여 列位께서 걱정을 벗어나 다시 화평세계와 같이 天下泰平이라고 한다. 그 두려움은 무슨 일 때문이고, 그 기쁨은 무슨 일 때문인가? 한탄스럽고 한탄스럽다.<sup>58)</sup>

이처럼 고종과 왕후는 대원군이 청의 위세를 업고 귀국하여 정권을 장악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다. 그 두려움은 결국 권좌에서 밀려나는 것으로, 임오군란 때 대원군에게 권력을 빼기고 살해의 위협에 처했던 경험 때문에 불안감이 더욱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대원군이 순친왕에게 뇌물을 바치고 귀국하여 정권을 장악할 것이라는 소문을 믿고 공포감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보였다. 윤치호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자, 中原의 일을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당시 이 풍설은 조선 정계에 과다했는데, 대원군 심복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설이 있었다.<sup>59)</sup> 그러나 중국의 권력 암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담고 있고, 고종이 윤치호의 말을 일축한 것을 보면, 단순한 풍설로 보기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다. 믿을만한 중국 소식통으로부터 직접 접했거나 중국 측에서 소문의 형태로 흘렸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3월 9일까지도 대원군의 일로 걱정이 그치지 않았던 고종과 왕후가 3월 12일 갑자기 대원군 귀국에 관한 풍설이 ‘虛傳’임을 알고 천하태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윤치호는 고종의 두려움과 기쁨의 실체에 의문을 표하면서 한탄했다.

대원군 귀국설이 허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들었을까? 이때 3월 12일이라는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변원규의 귀국 일자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진수당이 3월 11일~13일에 걸쳐 본국에 서신을 집중 발송했는데, 이는 중국 선박의 출항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3월 11일쯤 그 배를 타고 온 변원규가 조선에 도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3월 12일 고종을 알현한 변원규가 대원군 동향을 비롯하여 중국의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날 3월 13일 외아문 독판 민영목이 사임하고, 이어 협판 이조연과 목린덕이 물러났다. 이러한 상황은 변원규가 돌아온 후 ‘外部 3인’이 경질되었다는 진수당의 보고와도 일치한다.

55) 윤치호, 『尹致昊日記』 1884년 1월 23일(양 2.19) “下教內 石坡將謀同淸廷, 率威歸國云云, 余奏曰, 若果然, 則何以爲之耶, 上曰, 若果然則國亡矣”

56) 윤치호, 『윤치호일기』 1884년 2월 22일(양 3. 19)

57) 윤치호, 『윤치호일기』 1884년 3월 9일(양 4. 4)

58) 윤치호, 『윤치호일기』 1884년 3월 12일(양 4. 7)

59) 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の研究』, 881~882쪽

그렇다면 변원규가 중국에서 들고 온 정보는 무엇이이었을까? 정황을 미루어보면, 일단 대원군을 귀국시키지 않는다는 것, 외아문 관료에 대한 책임 추궁, 華船의 한강 출입 허용 등이었을 판단된다. 그 외에 당시 양국 간 현안 문제에 대한 요구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 받아서인지 3월 28일 변원규는 외아문 참의에서 협판으로 승진 임명되었으며,<sup>60)</sup> 이후 중국 상선의 한강 진입을 허용하는데 일조했다.

3월 중순 경부터 김윤식·윤택준 등 친청파 중심 체제로 바꾼 외아문은 이홍장의 요구를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었다. 4월 14일 이홍장의 비문이 전달되자마자, 당일 華船의 한강 진입을 허용했다.

이후 본 衙門은 재삼 상의하여 商船이 양화진에 정박하는 것은 방해가 없을 듯하나, 通商 局面에 서는 이익을 균점하므로 본 아문은 200톤 이하의 배만 이후 양화진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결정하여 허가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에 방법은 新例에 속하므로, 무릇 商船은 제물포에 도달하면 반드시 전례대로 船牌를 理事衙門에 바치고, 該船이 進口稅項을 해관 선창에 완납하면 그 稅單을 갖고 양화진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고 해관 人員이 선창을 열어 화물을 내린다. 出口할 때는 제물포 해관에서 화물의 出口稅에 대한 납부 완료의 유무를 검사한 후 비로소 그 船牌를 영수하는 것을 허락하여 出洋토록 한다.<sup>61)</sup>

4월 14일 조선정부는 중국 상선의 한강 출입을 허용했다. 단 200톤 이하의 선박으로 제한했다. 그리고 화선의 관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船牌와 稅單을 발급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했다.

대원군 카드를 흔들며 화선의 한강 진입을 관철시킨 중국은 이후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은밀한 손길을 뻗었다. 주복이 원세개에게 보낸 서한을 보자.

(조선정부에서) 洋人을 고용하는 것은 반드시 부리기 좋은 쪽으로 하여 조종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만약 조선에 全權을 준다면 꼬리가 커서 흔들지 못하게 된다[尾大不掉]. 목린덕은 정말로 不善하고 韓人 또한 不善하여 제어[鈐制]하기에 이른 것이다.<sup>62)</sup>

이처럼 화선 구류사건을 계기로 중국은 조종되지 않는 洋人과 韓人의 ‘不善’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조선정부가 서양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의 조종이 가능한 인물을 추천하도록 했다. 또한 전권을 주어 ‘꼬리가 커서 흔들지 못하게’ 되지 않도록 조선을 속국의 틀에 묶어 중국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통제를 강화했다.

2월초 華船을 구류하여 한강 진입을 금지한 후부터 4월 14일 허용할 때까지 조선과 중국 간에 벌어진 논쟁과 외교전은 마치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숨가쁘게 전개되었다. 변태적 장정체제의 틀을 벗어나 자주국을 이루고자 했던 조선과 속방의 틀에 가두어 제국주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60) 『고종실록』 고종 21년(1884) 3월 28일

61) 본 소송 안건 99면, 1884년 4월 14일, 김병시가 진수당에게 보낸 조회

62) 본 소송 안건 122면, 날짜 미상, 주복이 원세개에게 보낸 글

는 중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중국은 대원군 카드를 이용하여 ‘중국체제’에 반기를 들었던 외아문세력을 일거에 교체하고, 화선의 한강 출입을 이끌어내었다. 이로써 외아문을 친청세력 중심으로 재편하고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였다. 고종과 왕후의 아킬레스건과 같았던 대원군 카드는 중국이 조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만능열쇠와 같은 것이었다.

## 5. 맺음말

지금까지 한강에 진입하려는 華船을 구류한 2월 초부터 양화진 출입을 허용한 4월 14일까지 사건을 둘러싼 조선과 중국의 공방전과 힘겨루기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사건은 화선의 한강 출입에 대한 조중수륙무역장정의 법리 논쟁으로 표면화되었지만, 속방을 규정한 장정체제를 벗어나 조약체제로 전환하려는 조선의 의지가 반영된 산물이었다. 장정체제가 정립되어 가는 초기 단계에서 벌어진 공방전은 이후 양국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시기 조선과 중국의 관계는 청군이 주둔한 가운데 장정체제가 작동되고 있었다. 서울에는 주둔군 이외에 200여명의 청상이 들어와 무역에 종사하고 있었다. 조선 정부는 이미 1883년경부터 상권 침탈과 외국인 잡거를 우려하여 도성 내 청상의 인천 퇴거와 장정 개정을 추진했다. 이홍장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었으며, 이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1884년 2월초 조선정부는 한강에 진입하려는 화선을 인천에 구류했다. 이때 구류 명분은 화선의 관세 탈루 방지였다. 중국 측은 화선 구류는 장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항의하는 한편, 자국 商船의 탈루를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조선정부는 관세 문제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장정을 근거로 화선의 한강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장정 조항의 해석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의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논점은 4조의 ‘양화진 한성의 開設行棧’과 3조의 ‘通商口岸’ 해석에 집중되었다. 중국 측은 개설행잔한 곳은 商船 출입이 허용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조선 정부는 商民에 대한 규정일 뿐 상선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통상구안에 대해서도 중국은 개설행잔한 곳이 곧 통상구안이므로 상선이 들어가 교역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조선은 통상구안이란 세관이 설치된 개항장을 의미하며, 한성·양화진은 內地이기 때문에 중국 상선의 진입을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양국은 자국에 유리한 개념 틀로 조항을 해석하였으며, 끝까지 평행선을 달렸다. 논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선은 중국과 각국의 평등[平行]을 주장하고, 장정 前文의 ‘屬邦’ 규정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진수당은 公法을 벗어난 장정 폐지 주장으로 간주하여 조선정부를 맹렬하게 비난하는 한편, 본국의 이홍장에게 정치적 해결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올렸다.

그간 자주를 주장하며 중국과 전면 승부를 펼쳤던 조선 정부는 2월 28일 한발 물러나 1개월간 화선의 한강 진입을 허용했다. 역관 변원규가 중국에서 돌아온 후 3월 13일 외아문 수장인 독판 민영목이 물러나고, 이어 협판 이조연·목련덕이 교체되었다. 그 자리는 친청파 김윤식과 윤태준·변원규로 채워졌다. 그리고 4월 14일 이홍장의 지침이 전달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화선의 한강 진

입을 허용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로써 화선 구류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양국의 한관 승부는 조선의 일방적 굴복으로 끝났다. 그러나 중국 상선의 관세 탈루의 문제를 바로잡아 관세수입을 확보하게 된 것은 성과라 할 수 있다.

조선이 굴복한 배경에는 이홍장의 노련한 정치적 전략과 손길이 개입되어 있었다. 고종의 아킬레스건이었던 대원군 카드를 흔들며 왕권을 위협하고, 장정체제에 반기를 들었던 외아문 관료들을 대거 축출한 후 자국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 정계의 친청화와 대청종속이 심화되었고, 반청자주의 목소리는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이후 청의 간섭과 영향력이 강화되자, 반청자주는 개화당의 이슈로 떠올라 갑신정변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이 사건으로 확고해진 장정체제는 1894년까지 속방 조선과 중국의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 틀로 작용하였다.

## <인천 해관의 華船 구류사건과 章程의 적용 논쟁> 토론문 - 1884년 2월 李名振船 구류사건을 중심으로 -

김윤희(가천대)

본 논문은 청 범선 구류사건이 갑신정변 이전 청의 속방정책과 조선의 자주노선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 다루어 졌는지를 분석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적용에서 내용의 해석 과정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이시기 조청관계 연구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884년 전반 조선 관료의 대외정책에서의 상반된 입장 차이, 조청무역의 특수성과 열강의 조약내용 균점 가능성 등과 연결된 사건을 다룸으로서 이와 관련한 연구에서 다양한 관점과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중국선박 구류사건의 고찰이 기존 연구성과에서 해명하고자 했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다양하게 펼쳐놓았기 때문에 논점의 형성이란 점에서 볼 때 방향성이 좀 더 분명했으면 좋을 것 같다.

### 1. 1884년 전후 산동성 범선의 운항 실태와 관련한 내용의 보완

1883년 11월 1일 朝中輪船往來合約章程으로 상해-인천 운항되던 기선이 3차례 운항하고 중지하였기 때문에 산동성 범선이 산동성과 인천간 무역수송에 보충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 산동성 범선이 마포에 정박했던 상황은 당시 인천-서울간 수송의 불편함과 관세납부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기도 한 것 같다. 이시기 산동성 범선의 인천, 한강포구 정박에 대한 실태에 대한 내용은 주로 『청계중일한관계사료』에 나타나 있는데 이를 통해 내용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 (1884년 경 강경포까지 산동성 범선이 정박한 사례도 있음)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이명진선박 구류 사건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이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산동성 범선의 불법정박 문제의 연결 선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참고로 서울의 중국상인 중 산동출신이 매우 많다는 점은 산동성 범선의 역할이 컸을 것으로 추측됨.(1883년 청상 82명 중 59명, 1884년 청상 352명 중 234명이 산동출신 상인)

### 2. 이명진선박 구류사건의 의도성 문제

선박구류사건의 발생이 조선정부 내 ‘신당’, 대청자주외교노선 세력의 의도성이 반영된 것이란 서

술은 다소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기존연구(김정기, 손정목 등)에서 1884년 전반 청에 대한 반감이 형성되는 분위기였음을 지적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관세확보의 문제(한강포구의 불법정박 문제), 서울의 청상확대에 대한 반감, 등 그리고 본문에 진수당이 '신당'을 '친일적'이라고 보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1884년 전반기 청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관세수납과정에 대한 엄격한 적용이 암묵적으로 동의되면서 나온 현상으로 이해되는 것이 좀 더 타당한 것이 아닐까? 조청관계의 변화를 노린 의도성이란 해석을 뒷받침할만한 전거가 다소 미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구류사건이 고종과 이홍장사이의 정치적 거래로 어이없게 해소되는 과정으로 볼 때 계획된 의도성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이시기 대청자주외교노선의 주체에 대해 기존연구에서는 이견이 존재하는데 민영목 등 민씨척족의 의도성을 부각할 경우, 기존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청자주외교노선 세력과 활동 및 실제 등등과 관련해서 좀 더 설득력 있는 부가적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 3. 통상구안, 개설행잔의 해석을 둘러싼 청과 조선의 해석상 차이

산동범선의 정박을 인천으로 한정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산동과 인천 사이에 범선의 운항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즉 일본 범선의 운항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산동범선의 운항 문제는 조청수륙무역장정이 갖고 있는 이중성이 표현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양화진의 기선정박 허용이 각 국에 허용될 가능성이 존재했기 때문에 조선정부는 각국 통상의 일반적 사례를 들어 이점을 방어하려고 했고, 반면 청은 조선과의 특수적 관계(속방)임을 강조하여 균점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양화진 정박을 허가받으려고 했다는 서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합의된 사항이 200톤 이하의 선박으로 규정되고 있었음을 볼 때 (적재량은 초상국 기선은 대략 300톤, 일본 우선회사의 기선은 대략 1000톤 이상, 러시아기선회사는 대략 900톤 이었고, 산동성 범선은 100톤 내외였음) 구류사건으로 촉발된 청 범선의 정박문제가 정치적 거래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

오히려 조선정부 관료 사이에 형성된 반청분위기를 방지했던 고종에 대한 이홍장의 정치적 전략이 먹히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즉 반청분위기 속에서 촉발된 선박구류문제가 쟁점화됨으로 해서 오히려 외아문을 친척세력으로 변화시키려는 이홍장의 의도가 관철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닌지?

예를 들어, 변원규가 신당의 정보원이란 평가와 달리 이홍장의 정치적 의도를 고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평가가 더 타당한 것이 아닌지?

#### 4. 이홍장과 고종의 정치적 거래와 조청수륙무역장정의 이중성 문제

선박구류사건의 해결과정이 조청수륙무역장정의 이중성이 드러난 사례라고 보기 보다는 오히려 조청수륙무역장정의 내용을 각국이 균점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청과 조선의 특수적 관계가 형해화 되었고, 이로 인해 이홍장이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서 대원군 카드라는 다른 정치적 수단이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본문에서도 서술했듯이 통상조건의 문제에서 조선은 각국과의 통상조약 내용의 일반적 사례를 적용하려 했고, 여기에 대해 ‘속방’규정은 사실상 구속력을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홍장이 대원군이라는 정치적 거래를 사용했다고 본다면, 조청수륙무역장정은 이중적인 내용과 달리 오히려 현실에서는 각국의 통상조건과 차이가 없었다고 평가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 대해 청이 개정하고 싶어 했다는 서술이 본문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 장정이 이미 조청의 특수적 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상황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점을 고려할 경우 장정의 현실적 적용문제는 ‘속방’ 규정과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된다.



## 청일전쟁 이후 한국인과 중국인의 분쟁과 해결방식의 변화

박 정 현

### 서론

근대 이후 한국<sup>1)</sup>과 중국 관계는 몇 차례 변화를 거쳤다. 청은 19세기 중엽까지 지속되었던 조선과의 조공관계를 19세기 후반 종속적인 속국관계로 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1895년 청일전쟁 이후 청의 정치적 영향력은 조선에서 더 이상 작용하지 않았다. 청일전쟁 이후 조선과 중국의 관계는 동등한 관계로 전환되었다. 한중관계의 변화와 함께 한국인의 중국인에 대한 감정도 나빠졌다. 기존의 연구들은 일제 강점기 이후 중국의 콜리들이 대거 조선으로 이주해오면서 일자리를 빼앗긴 조선의 노동자, 민중들이 중국인에 대해 적대시 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이해했다. 그리고 중국인들의 빈궁한 생활도 조선인들이 중국인을 무시하는 요소가 되었다고 보았다.<sup>2)</sup>

한국인의 중국인에 대한 인식은 청일전쟁 이후 표면화 되지만, 중국인이 조선에 진출한 1882년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청일전쟁 이전에도 조선인의 중국인에 대한 인식은 호의적이지 않았고, 이것은 중국인에 대한 공격과 비하로 나타났다. 조선인의 중국 인식은 전통적인 한국과 중국 사이의 중주관념에 대한 반감도 상당히 작용했고, 만주에 진출한 조선 이주민의 대우 문제도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한국인의 중국인에 대한 인식은 여러 가지 층차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일전쟁 이후 한중관계는 조청상민수륙장정에서 한청통상조약으로 조약의 내용만 바뀐 것이 아니었다. 물론 조약으로 양국 간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화했지만, 실제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한청통상조약은 청일전쟁 이후 한국과 중국의 분쟁을 처리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하지만 조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양국 간에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 한국정부는 청일전쟁 이전처럼 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한국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했다.

청일전쟁 이후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구한국외교문서』 「淸案」과 그 밖의 자료를 이용해서 점차 성과가 쌓이고 있다. 이들 논문은 주로 한청통상조약 체결의 의미와 한중관계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sup>3)</sup> 하지만 아직도 청일전쟁 이후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연구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淸季駐韓

- 1) 이 논문에서는 조선과 한국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시기는 주로 청일전쟁 이후인데 1897년 대한제국 이후에는 한국으로 불렀기 때문에 한국, 한국인으로, 이전에는 조선, 조선인으로 서술했다.
- 2) 전우용(「한국 근대의 華僑 문제」, 『한국사학보』 15, 2003), 김희용(「日帝強占期 한국인의 華僑排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김태웅(「1920·30년대 한국인 대중의 華僑認識과 國內 民族主義 系列 知識人の 내면세계」, 『역사교육』 112, 2009).
- 3) 구범진(「<韓淸通商條約> 일부 條文의 해석을 둘러싼 韓-淸의 외교분쟁」, 『대구사학』 83, 2006)은 한청통상조약 이후 신설된 聽審權 문제를 다루었다. 이영옥(「한중 민간 소송 연구, 1906~1910-張導之案, 姚貴春案, 劉金有案 등 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35, 2007)은 살인 사건 분석을 통해 통감기 사법제도의 변화와 한중 외교관계의 변화를 다루었다. 이은자(「淸日戰爭 이전과 이후

使館檔』을 이용해서 개항기 이후 한중관계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고 있지만, 자료의 본격적인 이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sup>4)</sup> 청일전쟁 이후 한국인과 중국인의 분쟁은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였고, 해결방식도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인의 중국인에 대한 관념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고, 한중관계의 실제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는 『淸季駐韓使館檔』의 소송 안건을 이용하여 청일전쟁 이후 한국과 중국관계가 실제 교섭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고, 한국인이 중국인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도 살펴볼 것이다.<sup>5)</sup>

이 시기 한국인의 중국인에 대한 인식은 일제 강점기 화교배척운동(1927년, 1931년)과도 연관이 있다. 화교배척운동은 단순히 특정한 사건이 발단이 되어 발생했지만, 그 배경에는 한국인과 중국인의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 한국인의 중국인에 대한 태도와 인식은 이후 화교배척운동을 살펴보는 데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 I. 청일전쟁 전후 한중 교섭방식의 변화

임오군란 이후 중국인들은 청의 비호 아래 조선에서 급속히 세력을 확장했다. 중국인의 활동범위는 한성과 3곳의 개항장에 머무르지 않고 내지로 확대되었다.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제4조에는 華商<sup>6)</sup>이 조선 지방관의 허락을 받는 경우 내지 영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중국 상인은 護照를 발급받아 일정 기간 동안만 내지에 머물 수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조선 내지에서 정주하여 상점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았다.<sup>7)</sup> 중국인이 세력을 확대하면서 조선인과 중국인 사이의 마찰이 일어났다. 초기 중국인과 조선 관민 사이의 분쟁과 마찰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중국인과 조선인의 갈등은 중국인이 조선 내 깊숙이 진출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갈등은 대부분 중국인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결론이 났다.

在韓 韓中間 ‘訴訟’ 안건 비교 분석, 『아시아문화연구』 17, 2009)는 청안 가운데 「命案」을 분석하여 청일전쟁 전후 한중관계의 변화를 분석했다. 은정태(「1899년 韓·淸通商條約 締結과 大韓帝國」, 『역사학보』 제186집, 2005)와 이재석(「한청통상조약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19집, 2011)은 한청조약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했다.

- 4) 『淸季駐韓使館檔』 訴訟案件에 대해서는 최근 해제집이 출판되어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 이 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박정현 외 지음, 『중국 근대 공문서에 나타난 韓中關係』, 한국학술정보, 2013.
- 5) 소송 안건에는 당시 한국인과 중국인의 분쟁 양상과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의 변화가 잘 나타나 있다. 『淸季駐韓使館檔』의 소송 안건에 나타난 사건은 양국 정부가 서로 문서를 교환했기 때문에 일부는 『구한말외교문서』에도 내용이 남아있다. 그리고 사건의 자세한 내용과 후속 조치는 『各司謄錄』에도 남아 있다. 특히 『各司謄錄』의 내용과 비교해보면 양국민 분쟁에 대한 양국의 참여한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쪽의 자료를 통해서도 한국인과 중국인의 분쟁에 대해 접근할 수 있지만, 『淸季駐韓使館檔』의 소송 안건에는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한국 쪽 자료에 나타나지 않은 한국인과 중국인의 분쟁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중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대우와 한국 내 중국인의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 6) 본 논문에서는 華商-중국상인, 華僑-중국인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 자료를 인용할 때는 원문 그대로 화상, 화교라는 용어를 썼고, 내용을 설명할 때는 중국 상인, 중국인으로 서술했다.
- 7) 이에 관해서는 박정현, 「19세기 末(1882~1894년) 朝鮮 華商의 조직과 상업활동」, 『중국사연구』 제66집, 2010. 6, 68~72쪽 참조.

중국 상인은 경제적으로 조선 상권을 잠식해서 조선인의 반발을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청의 위세를 등에 업은 그들의 행패 때문에 더욱 조선인의 감정을 자극했다. 개항장이나 미개항지에서는 물론 내지의 場市에까지 중국인이 출현하면서 중국 상인이나 중국 遊勇들의 행패를 도처에서 볼 수 있었고, 조선의 민이나 상인이 중국인에게 맞거나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sup>8)</sup> 이는 1885년 天津 조약 체결 이후 청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하기 전에 아주 극심했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곧바로 조선에 항의하거나 직접 보복에 나섰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1883년 『漢城旬報』 보도에 불만을 품은 淸軍의 항의 시위사건, 1884년 5월 중화회관 부지 매입을 둘러싸고 일어난 李範晉 납치 구타사건, 같은 해 중국 상점 강도 체포를 재촉하는 중국 상인들의 두 차례에 걸친 督捕 韓圭稷의 집 앞 소란 사건이었다.<sup>9)</sup>

청의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한 뒤에는 중국인이 청군의 직접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조선인의 중국인에 대한 強竊盜가 증가했다. 이에 청에서는 巡査廳을 설치하여 조선 내 중국인을 보호했다.<sup>10)</sup> 청군 철수 뒤 중국인의 직접적인 보복은 없었지만, 조선에서 중국인은 여전히 특권적인 지위를 누렸고, 중국인의 횡포와 조선인과의 충돌은 줄어들지 않았다. 중국인들은 통상이 금지된 지역도 마음대로 들어갔고, 현지에서 피해를 입으면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피해를 보상받았다. 조선에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못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1887년 통상 금지지역에 무단으로 들어갔던 중국 상인이 현지 조선인에게 약탈당한 사건은 중국인이 문제를 일으키고도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피해배상을 받은 예이다. 1887년 1월<sup>11)</sup> 중국 상인이 禁法을 어기고 通商이 인정되지 않는 평안도의 身彌島 일대로 들어갔다가 현지인들에게 약탈을 당하여 배가 불에 타고 貨物 등을 빼앗긴 일이 발생했다. 중국 상인이 불법으로 현지에 들어간 것인데도 조선 측에서 피해액을 계산해서 보상해주었다. 다만 조선에서는 이후 중국인들이 또다시 通商口岸이 아닌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협조를 구했고, 이에 원세개는 각지의 兵備道에 咨文을 보내어 현지의 어민들에게 주의를 환기토록 했다.<sup>12)</sup>

중국인들의 횡포는 다양했다. 1889년 1월 華商 鮑豐緒 등 3명이 성균관의 文廟를 멋대로 들어가려다가 이를 막는 門僕들을 돌로 때리고 행패를 부려 그 중 한 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뒤 조선에서 이들의 처벌을 요구했는데, 범인을 조사하는 사이 이들 가운데 2명은 이미 배를 타고 烟台로 돌아가 버렸다. 원세개는 중국인들이 멋대로 돌아다니며 분란을 일으키지 말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告示를 내리겠다고 조선에 통보했다.<sup>13)</sup> 조선에서는 신성시 하는 문묘에 중국인이 들어와 난동을 부려도 특별한 대책이 없었다. 청은 자국에 불리한 경우에는 최대한 사건의

8) 韓祐勳, 『韓國開港期の 商業研究』, 한국학술정보, 2003, 112~113쪽.

9) 구체적인 내용은 박정현, 「1882~1894년 조선인과 중국인의 갈등 해결방식을 통해 본 한중관계」, 『중국근현대사연구』 제45집, 2010. 3, 11~15쪽 참조.

10) 巡査廳에 관해서는 박정현, 「19세기 말 仁川과 漢城의 중국인 居留地 운영체제」, 『동양사학연구』 제113집, 2010 참조.

11) 본 논문에서 『淸季駐韓使館檔案』을 인용한 경우 날짜는 모두 음력이다.

12) 『淸季駐韓使館檔案』(이하 『檔案』으로 약칭) 01-41-030-38, 袁世凱：訴訟 38, <華商違禁冒入不通商口岸遭搶案>, 22~23쪽.

13) 『檔案』 01-41-030-11, 袁世凱：訴訟 11, <華商鮑豐緒等擅入朝文廟札飭提究示案>, 2, 11, 14쪽; 『檔案』 01-41-047-37, 唐紹儀：訴訟 37, <在朝鮮文廟滋事>, 1~9쪽.

진상 파악을 늦추고 미온적인 처리로 일관했으며 사건을 축소하고 무마했다.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제4조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치외법권의 대상이므로 조선의 관원이 중국인에게 마음대로 형벌을 가하거나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청 상무총서에서 심문한 뒤 처벌했다. 하지만 조선인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대부분 가벼운 처벌을 하거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정도에 그쳤다. 조선 정부도 청의 눈치를 보면서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꺼렸고, 될 수 있으면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다.

중국인은 조선인뿐만 아니라 조선 병사에게도 폭력을 휘둘렀고, 이러한 행동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또한 청 순사청은 조선 포도청과 협력하여 중국인의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는데, 양측은 협력보다는 긴장관계에 있었던 경우가 많았다. 한국 병사 이덕명 상해치사 사건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1890년 6월 統衛營 포병 李德明이 화상 점포에 가서 청화백자를 사려고 값을 흥정하다가 맞지 않자 서로 욕을 하다가 화상이 몽둥이로 이덕명의 머리를 때렸다. 이덕명이 도망쳐 나오는데 중국 巡差가 쫓아와 몽둥이로 그를 때리고 발로 밟았다. 통위영에서 사람을 보내 조선 병사 이덕명이 청 순차에게 맞아 중상을 입었다고 항의하자 청에서는 오히려 조선 병사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청 순차에게 돌을 던져 이마에 부상을 입혔다고 대응했다. 심한 부상을 당한 이덕명이 음식도 못 넘기고, 약도 못 먹어 결국 사망하자 한성부 소윤 李冕相이 조회를 보내 이 사실을 알렸다. 청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상황에서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했던 이덕명이 사망하자 사건을 무마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청에서는 오히려 이것은 의외의 일이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아무 말이 없다가 7일이나 지나서 부상 병사 이야기를 꺼냈다고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청에서는 가해자인 순차 牛化龍은 부상을 당하면서도 직무에 충실했고, 상민을 보호했다고 옹호했다.<sup>14)</sup>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청에서는 술에 취해 물건도 사지 않을 거면서 분란을 일으킨 조선 병사가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으로 돌렸다. 용산 상무위원 唐紹儀는 원세개에게 조선 상무장정 제7조에 따르면 중국 商民에 관한 범죄 안건 가운데 중대한 경우 원적지로 보내 원적지 지방관이 중국 법률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안건은 중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交渉에 관련된 사항이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피의자를 원적지 지방관에게 보내겠다고 건의했다.<sup>15)</sup> 이는 살인에 해당되는 중죄를 저질렀음에도 통상장정을 이용하여 조선에서 처리하지 않고 중국인 범죄자를 원적지로 빼돌려 죄를 가볍게 하려는 의도였다. 청일전쟁 이전 청은 치외법권과 중주권을 바탕으로 조선에서 우월적 지위를 누렸다. 앞에 서술한 일련의 사건은 청일전쟁 이전 청이 조선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중국인들이 조선인에게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고, 조선인은 수동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중국인의 도를 넘은 행동은 청일전쟁 이전에도 조선인에게 적대감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를 겉으로 표현하지 못했다. 청일전쟁 이전 조선인의 중국인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

14) 『檔案』 01-41-047-038, 唐紹儀 : 訴訟 38, <韓兵滋事卷>, 9~12, 18~19쪽; 『舊韓國外交文書』, 「淸案」 1, 문서번호 1213~1218; 「중국상인의 매매활동」, 『各司謄錄』 근대편, 內閣司(關草) 2.

15) 『檔案』 01-41-047-038, 唐紹儀 : 訴訟 38, <韓兵滋事卷>, 20~23쪽. 여기에서 언급한 조선 상무장정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장정 제7조는 다른 내용이다. 아마도 제2조를 잘못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위의 이덕명 사건에서 이덕명이 중국 순차에게 ‘胡奴’라고 욕했다는 서술이 나오는데, 청일전쟁 이전에도 조선인이 중국인에 대해 오랑캐로 비하하는 감정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일반 민중의 중국인에 대한 好惡를 알 수 없지만 나쁜 감정이 많아진 것만은 알 수 있다. 중국인이 조선에서 고압적 자세를 취함으로써 조선인은 중국인에 대해 침략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반청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중국인의 횡포는 조선인에게 분노의 대상이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빈털터리로 조선에 와서 근검절약으로 성공한 중국 상인의 부는 질시의 대상이 되었다. 조선인은 중국인에 대해 적대감과 열등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즉 관료들도 어찌지 못할 정도의 무력함과 동시에 이방인의 횡포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sup>16)</sup>

청일전쟁 이후 조선과 청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가 되고, 청의 후원이 끊어지자 조선인과 중국인의 관계는 이전의 종속적 관계에서 평등한 관계로 바뀌었다. 이에 조선인이 중국인을 대하는 태도도 본심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었다. 청일전쟁 이후 조선인 사이에 과거의 종속적 관계를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생겨났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개화파 지식인들의 눈에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청국은 더 이상 강국도 대국도 아니었다.<sup>17)</sup> 개화파 인사들은 신문 등을 통해 중국을 아편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조선에 아편을 퍼뜨린 나라로 묘사하는 등<sup>18)</sup> 반중국인 정서에 기댄 기사들을 자주 게재하여 중국인에 대한 비하와 반감을 조성하는데 앞장섰다. 중국인이 이미 한국 생활 깊숙이 침투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문과 직접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화교관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청일전쟁 이전 청은 조선인과 중국인의 분쟁에 대해 고압적으로 해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청일전쟁 이후 한청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한국에서는 조약에 따른 해결을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청의 요구를 들어주는 일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소송 사건 특히 한국인과 중국인의 폭행사건의 경우 한국 측도 강력히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청도 이전의 일방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조약과 법에 따른 처리를 강조했다. 청일전쟁 이후에는 한국과 청의 국가 간 관계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대등한 관계에서 교섭했다. 이와 함께 한국인의 중국인에 대한 공격적 태도와 무시는 노골화 되었다. 한청통상조약은 한국과 청 양국 간의 교섭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그런데 조약의 해석을 놓고 양국 사이에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가 생겼다.

1900년 발생한 한국인 呂元先 피살사건의 처리과정은 한청통상조약 체결 이후 변화된 한국과 청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1900년 8월 초에 한국인 卞晚周가 화상 徐云丁과 蕭樹屏을 대동하고 전라남도 智島郡 巖泰面 木島에 거주하는 呂元先에게 빚 독촉을 하러 갔다. 한국인 卞과 呂 사이의 말다툼에 徐와 蕭가 휘말리게 되었고, 그 와중에 시비를 가리기 위해 이들이 呂元先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도중 다투다가 呂元先을 배에서 밀쳐 바다에 떨어뜨려 죽였다. 智島郡守는 呂元先을 살해한 혐의로 卞晚周, 徐云丁, 蕭樹屏을 체포해서 압송하고, 중국인 徐, 蕭 두 사람은 인천영사에게 인도했다.<sup>19)</sup>

16) 박정현, 앞의 논문, 2010. 3, 8~9쪽.

17) 전우용, 앞의 논문, 397~398쪽.

18) 「鴉烟是殺身亡國之孽」, 『皇城新聞』 1900년 9월 28일, 「鴉烟可痛禁」, 1901년 8월 12일. 황성신문에 실린 아편 흡식 관련 기사 24건 가운데 중국인과 관련된 기사는 모두 10건이었다.

그런데 중국인 피의자 구금을 둘러싸고 양국의 의견이 대립했다. 이 사건은 한국인의 사망에 중국인이 연루된 사건으로 <한청통상조약> 제5관 제1항<sup>20)</sup>에 따라 청 영사관에서 청 법률에 따라 피의자들을 판결해야 했다. 당시 목포에 거주하는 중국인 영사업무는 인천영사가 처리했기 때문에 조선의 목포 감리가 인천영사에게 범인들을 넘겨주어 처리하게 해야 했다. 그런데 인천영사는 智島군수가 徐와 蕭를 郡署로 끌고 가 두 달 동안 감금하고 돈을 갈취했으며, 중국인을 고문하여 자백을 강요했는데 이것은 양국 간 조약을 위배한 것이므로 해당 관원의 과실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한공사 徐壽朋에게 보고했다. 이에 대해 智島 군수는 중국영사가 범인을 인도받아 신속하게 審判할 수 있도록 조회를 보내달라고 務安 監理에게 요청했고, 범인들을 인도할 때까지 감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sup>21)</sup> 사건 처리과정에서 한국은 이전과는 달리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고, 중국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1895년 청일전쟁 이후 청의 정치적 영향력은 한국에서 더 이상 작용하지 않았다. 청일전쟁 이후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한청통상조약에서 볼 수 있듯이 동등한 관계로 전환되었다. 이와 함께 조선에서 우월적 지위를 누렸던 중국인들도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했고, 오히려 조선인들의 조롱과 질시의 대상이 되었다. 중국인의 이미지는 이전의 대국인에서 가난하고, 더럽고, 약한 국가의 국민이라는 이미지로 변화되었다. 청일전쟁 이후 중국인은 한국인과의 관계에서 弱者로 위치가 바뀌었고, 이와 함께 한국은 양국 사이 교섭에서 중국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중국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대등한 교섭을 펼쳤다.

## II. 한중 간 분쟁의 양상과 해결방식

중국인이 조선에 들어온 이후 조선인과 중국인의 충돌은 강절도, 금전분쟁, 상업분쟁 등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은 주로 행상을 하거나, 음식점을 하면서 한국인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국민 사이의 분쟁은 필연적이었고 일상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분쟁은 점차 양국민의 민족적 감정싸움으로 발전하는 모습도 보였다. 즉 중국인은 자위를 위해 위협에 집단적으로 대응했고, 한국인들도 중국인들에게 집단적으로 대응하여 민족적 대립으로 발전해갔다. 청일전쟁 이

19) 『檔案』 01-41-061-05, 徐壽朋：訴訟 5, <韓官違例將華民刑訊案>, 10~12쪽. 이 사건의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各司謄錄』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암태면 木島 남강에서 김여인의 남편이 익사한 사건의 범인으로 淸國人 蕭樹屏 등 3인을 붙잡아 가뒀다는 보고」, 『各司謄錄』 근대편, 司法稟報(乙) 26, 報告書 제61호).

20) 한국에 머물고 있는 중국 인민이 범법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중국 영사관이 중국의 법률에 따라 심판 처리하며, 중국에 머물고 있는 한국 인민이 범법한 일이 있을 때에는 한국 영사관이 한국의 법률에 따라 심판 처리한다. 중국에 머물고 있는 한국 인민의 생명과 재산이 중국 인민에 의해 손상당했을 때에는 중국의 관료가 중국 법률에 따라 심판 처리하며, 한국에 머물고 있는 중국 인민의 생명 재산이 한국 사람에게 의해 손상당했을 때에는 한국 관료가 한국 법률에 따라 심판 처리한다.

21) 『檔案』 01-41-061-05, 徐壽朋：訴訟 5, <韓官違例將華民刑訊案>, 15~18쪽. 이 사건의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各司謄錄』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암태면 木島 남강에서 김여인의 남편이 익사한 사건의 범인으로 淸國人 蕭樹屏 등 3인을 붙잡아 가뒀다는 보고」, 『各司謄錄』 근대편, 司法稟報(乙) 26, 報告書 제61호).

후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의 분쟁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표출되었고, 해결방식도 달라졌다.

중국인들의 입국이 많아지면서 한국인과 중국인들의 충돌은 서로 감정이 격화하면서 집단충돌로 이어졌다. 패싸움의 원인은 사소한 말싸움이 한국인과 중국인의 집단 패싸움으로 확대되었는데, 1906년 발생한 중국인 기와공장 중국인 노동자와 일본인 기와공장 한국인 노동자 사이의 패싸움은 그런 예이다. 1906년 6월 용산에 있는 華商 李東山이 운영하는 기와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중국인 工人 李芳洪과 傅德淸 두 사람이 물가에 세수하러 갔다가 차씨 성의 한국인 노동자가 욕을 하자 이들을 구타했다. 이에 한국인 노동자는 일본인 工廠으로 달려가 한국인 40여 명과 일본인 5~6명을 데리고 와서 양측 노동자들이 패싸움을 벌였다.<sup>22)</sup>

한국에 유입된 중국인은 쿨리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쿨리의 증가와 함께 한국인과 쿨리 사이의 충돌이 빈번했다. 쿨리들은 집단생활을 하면서 생활비를 절약했다. 청진의 경우 1909년 쿨리수가 1,200~1,300명에 이르러 여러 문제가 생겨났다. 1909년 5월 한국인 200여 명과 중국인 50여 명이 집단 패싸움을 벌여 중국인 3명이 중상을 입었다. 7월에는 李玉琢 등 중국인 4명이 곤봉을 휘두르며 韓人들을 구타하여 중상자 2명, 경상자 4명이 발생했다.<sup>23)</sup>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의 집단충돌은 반드시 한국인이 가해자이고 중국인이 피해자인 경우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중국인이 가해자이고 한국인이 피해자인 경우도 많았고,<sup>24)</sup>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있었다. 1910년 7월 平安道 朔州郡에서 한국인 坑夫 康有坤이 상점 앞에서 중국인 2명과 돼지고기를 요리하고 있던 畢序鴻의 도마 끝을 밟고 지나가자 시비가 붙었다. 지나가던 한국인 坑夫들이 구경하려고 모여들자 畢序鴻이 땀나뭇을 들고 휘둘러 이를 말리던 한국인 賢國珍의 머리를 가격하자 한국인들과 싸움이 붙었다. 畢序鴻은 중국인 10여 인을 불러 이들과 한국인 坑夫 백여 명이 집단으로 패싸움을 벌여, 한국인은 1명이 죽고 2명이 부상을 입었고 중국인은 3명이 부상을 입었다.<sup>25)</sup> 사망자는 중국으로 귀화한 한국인 洪振邦이었는데, 양국이 서로 자국민이라고 주장했다. 이 경우 피해자의 국적에 따라 양국민의 피해 정도가 달라졌다. 따라서 이 사건은 흥진방의 국적과 중국인 피해정도를 둘러싸고 한청 양국 사이에 이견이 대립했다.<sup>26)</sup>

이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어렵고, 한국인과 중국인이 평소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충돌이 일어나자 순식간에 확대되어 서로 적의를 가진 상태가 되어 피해가 늘었다. 중국인은 한국인과 충돌이 일어나면 한국에서 소수자였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중국인은 중국 순차나 한국의 순포에게 알리고 주변의 중국인을 동원하여 집단적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중국인은 중국인의 집단 대응에 한국인도 집단적으로 대응하면서 한국인과 중국인의 충돌은 집단충돌로 이어졌다. 일부 중국인은 한국인과의 갈등으로 생업을 포기하고 귀국하기도 했다. 이 사건 뒤 朔州 지역 화상 10여 명은 귀국을 표명했다<sup>27)</sup>.

22) 『檔案』 02-35-062-01, 馬廷亮 : 訴訟 1, <打架鬥毆卷>(1), 39~41쪽.

23) 『檔案』 02-35-062-03, 馬廷亮 : 訴訟 3, <打架鬥毆卷>(3), 126~129쪽.

24) 『檔案』에는 중국인이 한국인을 구타한 사건이 39건 가운데 15건이었다.

25) 『檔案』 02-35-062-04, 馬廷亮 : 訴訟 4, <打架鬥毆卷>(4), 43~44, 68~76쪽.

26)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한일병합 직후로 교섭 주체가 불분명한 과도적인 시기였다. 이 사건의 한국 쪽 주체는 조선총독부 총무부장관이었다.

27) 『檔案』 02-35-062-04, 馬廷亮 : 訴訟 4, <打架鬥毆卷>(4), 63~64쪽.

청일전쟁 이후 한국인과 중국인 분쟁의 또 다른 변화는 한국 병사가 중국 상인과 충돌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兵民 간의 충돌은 한국 병사나 순포들이 중국인의 불법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행동하면서 나타났다. 한국 병사들과 중국 상인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한국 측은 병사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몰려들어 중국인을 위협하거나 공격했다. 중국인들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해서 연락망을 갖추고 집단적으로 대응하여 양국민의 집단 충돌로 이어졌다. 兵民 간의 충돌은 대부분 양자 사이의 의견이 상충하여 결론 없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901년 한국 병사들이 도박장을 단속하면서 화상을 구타한 사건은 병민 간 충돌 양상을 잘 보여준다.

1901년 5월 화상 傅聚盛은 한성 교동 입구에서 燒餅店을 열었는데, 북쪽 이웃에 姚老奎가 도박장을 열었다. 한국 병사 任貴福 등 2명이 도박장으로 잘못 알고 부취성의 점포에 들어갔다. 부취성이 좋지 않은 얼굴로 이곳은 도박장이 아니라고 하자 한국 병사가 傅聚盛을 발로 차고 도박장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傅聚盛이 알지 못한다고 하자 한국 병사들이 양 다리를 차서 부상을 입혀 쓰러뜨렸다. 이어 중국인 순포 2명과 시비를 가리다가 한국 병사가 가지고 있던 총 끝으로 순포의 배를 찔러 부상 입히자 두 사람이 그 총을 빼앗아 巡捕房에 숨겼다. 잠시 후 100여 명의 한국 병사가 몰려와 중국 순포는 南街로 도망갔고, 한국 병사와 한국인이 더 모여들고 해산하지 않아 二宮街 입구가 막혔다. 이들은 午時에서 申時에 이르기까지 화상 점포를 부수고 상인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戌時가 되어 중국 총영사 傅良弼이 한성부 관윤과 같이 가서 압력을 행사하자 해산했다.<sup>28)</sup>

이 사건으로 중국인 순포 1명과 상인 10명이 부상을 입었고, 巡捕房과 화상 상점 15곳이 기물 훼손, 약탈 등 피해를 입었다. 청에서는 조선 외부와 경무청에 조회를 보내 해당 병사의 처벌과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 조회에 대해 조선 外部에서는 한국 병사가 교동 입구에서 청국 순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싸움이 나자, 중국인을 불러 모으고, 칼을 뽑아 휘두르고, 방망이로 내리쳐, 한국 병졸이 심하게 부상을 입었다고 照覆을 보내 상황을 완전히 반대로 설명했다. 이어 외부는 이 싸움은 병사와 백성이 사사로이 싸운 것으로 교섭 상황과는 무관한 것이니 한성부 관윤과 중국 총영사가 한청통상조약 제5관 제1항에 따라 심판하고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sup>29)</sup>

한국 外部는 한국 병사들이 수백 명을 불러 상가에 난입하고 중국인을 구타한 것은 의외의 일이니 교섭에 관한 일이 아니라고 발뺌했고, 중국 측은 사건을 엄하게 처리해줄 것을 한국 외부에 거듭 요구했다. 한국 외부대신 박제순은 양쪽의 의견이 상반되어 먼저 실수를 한 쪽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한다고 대답했다. 중국 측에서는 한국 병정이 상인을 구타하고 물건을 약탈한 것은 한청통상조약을 위반하고 공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사로이 싸운 것으로 교섭과 무관하다고 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조약에 따라 해당 병사를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이 사건은 11월 한성관윤 李漢英이 韓貨 3,000圓을 배상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보아 한국 측에서 배상했던 것으로 보인다.<sup>30)</sup> 하지만 한국 측은 이전과 달리 일방적으로 청의 요구를 수용하지

28) 『檔案』 02-35-021-03, 傅良弼：訴訟 3, <二宮街韓兵與華商交關毀屋傷人案>, 2~4쪽; 『檔案』 01-41-061-09, 徐壽朋：訴訟 9, <韓兵戳傷華商>, 7, 17~18쪽.

29) 『檔案』 01-41-061-09, 徐壽朋：訴訟 9, <韓兵戳傷華商>, 6~15쪽, 19~20, 33쪽; 『檔案』 02-35-021-03, 傅良弼：訴訟 3, <二宮街韓兵與華商交關毀屋傷人案>, 2~4쪽, 12쪽.

30) 『檔案』 02-35-021-03, 傅良弼：訴訟 3, <二宮街韓兵與華商交關毀屋傷人案>, 12, 30, 33쪽.

않고 최대한 한국 측 입장을 주장했다.

兵民 충돌 사건은 한중관계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앞에서 서술한 1890년 이덕명 사건에서 보듯이 청일전쟁 이전에는 한국 병사도 중국인에게 맞거나 모욕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청일전쟁 이후에는 한국 병사들이 중국인에게 고압적 태도를 보이고,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사건 이후 한국인의 중국인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었다. 중국인 순포가 한국인을 두려워하여 순찰을 돌 때 제복을 입지 못하고 일상복을 입고 순찰을 돌았다. 화상들은 극도로 불안해서 중국인 순포도 믿지 못해 잠시 일본인 순포를 고용하여 순찰을 맡길 정도였다. 한편 한성 교외의 중국인 토목공, 벽돌공, 채소밭 고용인 등은 중국 상인이 모욕을 당했는데도 罷市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화상 점포를 습격하겠다고 공언하여 중국인도 한국인에 대한 분노가 컸다는 것을 보여준다.<sup>31)</sup> 한국 병사들이 중국인을 공격하는 행동은 한국인의 중국인에 대한 경멸과 나쁜 감정을 보여주었지만, 중국인도 한국인에 대해 분노와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인과 중국인의 충돌은 상호 나쁜 감정과 불신이 쌓이면서 쉽게 집단적인 유혈충돌로 발전했다.

1903년 아편밀매를 단속하다가 일어난 한국 병사와 화상의 충돌 사건은 한국 병사와 중국인 사이 충돌이 어떻게 집단 충돌로 이어지는지 잘 보여준다. 1903년 2월 한국대신 許台身이 한국 외부에 조회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03년 1월 평안도 관찰사 관할의 순포 수 명이 평양 남문 밖에서 아편 단속을 명목으로 중국인 李育堂의 집 내실에 들어가 부녀를 수색하고 물건을 압류했다. 이어서 순포 여러 명이 무기를 들고 밤에 중국 상인들에게 찾아가 싸움을 걸어 문과 기물을 부수고 사람을 만나면 두드려 패고 돈과 물건을 훔쳐갔다. 그 결과 중국 상점 同福昌 가옥 등 4채가 크게 훼손되었고, 羅福堂이 심하게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다.<sup>32)</sup>

청일전쟁 이후 개항장과 변경에서 한국 병사와 순포가 중국인에게 소란을 피우는 것이 계속 심해지고 있어 청에서는 이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야밤에 순포가 안방까지 들어가 여자를 수색한 것은 청 정부를 모욕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청에서는 한국 외부에 사건을 일으킨 한국 官捕에 대한 엄한 처벌과 배상과 훔쳐간 물건의 환수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한국 측의 입장은 달랐다. 한국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한국 觀察使署 순포 수명이 중국인 집에서 아편을 사서 나오는 사람을 보고 아편을 수색하기 위해 남문 밖 李育堂 집 안에 들어갔다. 마침 이씨 부부가 아편을 피우고 있다가 순포가 들어오자 李育堂 부인이 아편 기구를 급히 몸에 숨겼다. 순포가 여인의 몸을 수색하려 하자 여인이 벗어나려고 무의식 중에 손을 들어 피하다가 손톱으로 순포의 얼굴에 상처를 입혔다. 이에 순포가 몽둥이로 여인을 때리자 비명 소리를 듣고 중국인들이 달려와 순포 孔澤成과 威承鐸을 때려 중상을 입혔다. 다른 순포가 이 사실을 總巡 洪炳殷에게 알려 홍병은이 순포를 모두 남문 밖에 보내 중국인 집을 수색했다는 것이다.<sup>33)</sup> 평양감리 彭翰周는 금지품목인 아편문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화상도 부상당했지만 한국 순포도 3명이 중상을 입어 몽둥이로 구타한 것이라고 쌍방 과실로 돌렸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어지러

31) 『檔案』 02-35-021-03, 傅良弼：訴訟 3, <二宮街韓兵與華商交關毀屋傷人案>, 4쪽

32) 『檔案』 02-35-011-03, 許台身：訴訟 3, <韓兵毆打華人及搶物等案>, 65~67쪽.

33) 『檔案』 02-35-011-03, 許台身：訴訟 3, <韓兵毆打華人及搶物等案>, 68, 97쪽.

운 가운데 물건이 없어진 것은 순포의 소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책임을 회피했다.<sup>34)</sup>

양쪽의 의견이 대립되는 가운데 이 사건에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자 1901년 3월 초 許台身은 청 甌南浦 영사 唐恩桐에게 사건을 직접 조사하라고 명령하여 唐恩桐이 직접 조사하고 심문한 결과, 이 사건이 아편문제 때문에 일어나 서로 싸움이 되었고, 손실 명세서는 반이 날조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매우 곤혹스러웠다. 하지만 모든 사태를 되돌릴 수 없어 3월 9일 會審을 열었다.<sup>35)</sup>

외교 문제가 된 뒤 唐恩桐이 직접 평양감리와 평양 관찰사를 만나 사건의 신속한 종결에 동의했다. 唐恩桐은 彭翰周에게 銀 600元의 배상을 요구했는데 彭翰周는 배상액을 반으로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唐恩桐이 전액 배상하라고 요구하자, 彭翰周는 사건의 처리를 한국 외부로 넘기려고 했다. 唐恩桐은 화상의 잘못이 훨씬 컸기 때문에 한국 외부로 넘어가면 처리가 늦어져 언제 해결될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銀 400元, 銅 28吊(=錢 1,000文) 배상에 합의했고, 상인들도 모두 동의했다. 또한 사건을 일으킨 순포는 관찰사가 해임했고, 감독을 소홀히 한 총순 洪炳殷은 外部에 보고하여 훈령을 받아 처리하기로 했다. 唐恩桐은 평양 화상 董事 張錦田에게 배상금을 맡겨 손실에 따라 각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화상에 대해서도 처벌하여 羅家店, 李氏, 王氏는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문제를 야기하고 명령을 어긴 것이 한 번이 아니기 때문에 1개월 내 배편을 구해 원적지로 돌아가도록 명령했다.<sup>36)</sup>

이 사건은 아편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화상들도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청에서도 적당히 수습하고, 해당 화상들도 처벌했다. 이 사건은 한국 병사가 중국 상점에 아편을 단속하러 들어갔다 중국인과 집단 충돌로 발전한 경우이다. 한국 측에서는 불법 단속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중국 측에서는 한국 병사의 과도한 단속에 반발했고 이것이 집단 충돌로 이어졌다. 중국인에 대한 단속의 와중에서 한국 병사의 구타, 절도, 물건 손상 등은 일상적으로 일어났다. 또한 한국 순포들은 중국인 상점 주변을 돌면서 위협하여 영업을 방해했다. 따라서 중국인은 한국 병사에 대한 경계심과 적대감이 상당했다. 하지만 중국인도 사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진술했고, 피해도 과장하여 사건을 왜곡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은 내용이 분명해도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고, 사건의 해결도 양측이 자국의 입장만 주장하여 견해가 대립하면서 해결이 지연되었다.

한국 병사나 순포는 아편, 도박 단속, 홍삼 밀거래 단속을 명분으로 중국 상점에 들어가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상인을 체포해서 구금하기도 하고, 중국 상점을 파괴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당시 일본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한국의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한국 병사들은 일본인에 대해서는 똑같은 사건에 별 제재를 가하지 않았지만, 중국인에 대해서는 가혹한 대우를 했고, 중국인을 구타, 구금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한청통상조약에 위배되는 것으로 청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중국인에 대한 과도한 단속과 차별대우는 1902년 개성 화상 楊滿堂 체포사건으로 알 수 있다.

1902년 9월 21일 한국 병사와 순포 약 40~50명이 홍삼 밀거래를 단속하면서 개성 화상 楊滿堂

34) 『檔案』 02-35-011-03, 許台身: 訴訟 3, <韓兵毆打華人及搶物等案>, 76쪽.

35) 『檔案』 02-35-011-03, 許台身: 訴訟 3, <韓兵毆打華人及搶物等案>, 83쪽.

36) 『檔案』 02-35-011-03, 許台身: 訴訟 3, <韓兵毆打華人及搶物等案>, 83~84, 100~101쪽.

집에 들어가 일본인 모토아키(本明)가 맡겨놓은 홍삼 100여 근과 미삼 수십 근을 압수하고 錦綢 2 필, 韓貨 140여 원을 빼앗고 楊滿堂은 경무청에 압송되었다. 楊滿堂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한국 병사와 순포들이 楊滿堂을 결박하고 신발 모서리와 鐵尺으로 난타하여 부상을 입혔다. 경무청에서는 管參官 李容翊이 楊滿堂을 심문하면서 고문과 옥살을 가했다. 또한 채무를 받으려고 楊滿堂 집에 머물던 화상 段海廷도 체포되어 한국 순포들이 양손을 밧줄로 묶어 고문한 뒤 풀어주었다. 다음날 밤 10시 경 화상 蘇德宣 집에도 한국 순포 수십 명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와 홍삼을 수색하여 蘇德宣이 홍삼 17여 근을 신고하면서 일본인 모토아키가 맡긴 것이라고 하자, 모토아키를 불러와 대질해서 모토아키가 자신이 맡긴 홍삼이라고 밝혔는데도 해당 순포가 홍삼을 가져가 버렸다. 해당 상인은 개성 순포가 압송하여 감옥에 갇혔다가 순포에게 돈을 주고 출옥했다.<sup>37)</sup>

원래 홍삼은 양국 조약에 매매가 금지되어 있었고 밀매하다 발각되면 모두 몰수하여 국가에 귀속시킨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한청통상조약 제5관 제1항에는 민간인이 영사관이 없는 지방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한국 관리가 근처의 영사관에 압송해서 영사관에서 심문해야 하고, 모욕을 주거나 고문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대해 청에서는 한국 외부에 조회를 보내 한국 순포가 화상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히고 고문을 가하고, 홍삼 수색을 구실로 사사로이 재물을 사취하고, 감금한 뒤 뇌물을 요구한 것에 대해 조약 위반이라고 항의했다. 또한 고문과 구타에 가담한 한국 官捕, 개성부에서 뇌물을 요구한 순포와 옥졸을 엄히 처벌할 것과 해당 홍삼이 일본인이 맡겨놓은 것인지 여부를 가려 외부가 회수하여 해당 상인이 일본인에게 돌려주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sup>38)</sup>

한국 외부에서는 內臟院에서 개성부윤 權用國에게 훈령을 내려 중국 상인들과 해당 순검을 대질시킨 결과 이들은 순청에 들어온 뒤, 곧바로 석방되었고, 巡役 등이 돈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중국 상인을 학대하거나 이들의 물건을 빼앗은 일이 없었다고 照覆을 보냈다.<sup>39)</sup>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 일은 미결 상태로 남았다. 이 사건은 한국 외부에서 중국인들을 고문하고 뇌물을 요구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해결이 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중국인과 문제가 생기면 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한국 측의 입장을 철저히 보호했다.

한국인들은 중국인뿐만 아니라 租界 내 청 순사청도 공격했다. 또한 한국인과 중국인의 분쟁은 한국 순사와 중국 순사의 싸움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1903년 7월 19일 하오 5시 경 청 순사청 앞에 한국인 수 명이 모여 있다가, 그 가운데 술 취한 2명이 문 옆에서 주정을 부리면서 중국 순사에게 시비를 걸어 순사가 그냥 가라고 타일렀으나 취한들이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제려보면서 욕을 해서 부득이 하게 곤봉으로 쫓아냈다. 때마침 한국 순사 韓錫洪과 몇 명이 지나갔지만, 이들은 한국인을 진압하지 않고 오히려 호루라기를 불어 청국 순사청을 포위하라고 하고 돌을 던져 중국 순사 3명이 부상당했고, 큰 탁자 1개, 유리창 2개 등이 부서졌다. 또한 혼란을 틈타 日洋 12元, 韓錢 16元 8角을 훔쳐갔다.<sup>40)</sup>

37) 『檔案』 02-35-011-03, 許台身：訴訟 3, <韓兵毆打華人及搶物等案>, 42~44쪽.

38) 『檔案』 02-35-011-03, 許台身：訴訟 3, <韓兵毆打華人及搶物等案>, 53쪽.

39) 『檔案』 02-35-011-03, 許台身：訴訟 3, <韓兵毆打華人及搶物等案>, 61쪽.

40) 『檔案』 02-35-011-03, 許台身：訴訟 3, <韓兵毆打華人及搶物等案>, 39~40쪽.

한국 순사가 분란을 일으킨 장소는 치외법권 지역인 조계 내였고, 청 순사청 앞 청 정부의 땅이었다. 청 영사관에서는 즉시 한석홍을 비롯한 관련 범인을 처벌하고, 부상당한 사람들의 치료비와 부서진 곳, 훔쳐간 물건은 모두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 사건은 조계 내에서 일어났고, 한국 측의 과실이 분명했기 때문에 三和監理가 다음 날 다시 조회를 보내 한석홍이 난동을 금지하지 않고 군인을 모아 소란을 야기한 것은 극히 무엄한 것으로 해당 순검 한석홍을 파직하여 반년 동안 감금에 처했다고 알리고 이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sup>41)</sup> 이전에는 접근하지도 못했던 조계 내 순사청과 순포까지 공격한 것은 한국인이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청일전쟁 이후 한국인들이 중국인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가졌고, 이들에 대해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1904년 9월 威海 화상들이 威海 영국 영사의 護照를 가지고 여러 척의 배에 식염을 싣고 와서 황해도 해주 廣石浦의 한국 상인 朴敏炯에게 판매했다. 박민형이 식염 가격을 흥정하다가 불만을 품고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흥기를 들고 돌을 던지며 공격하여 상선의 화상 2명이 심하게 부상을 입었고, 그 가운데 孫連芳이 사망했다. 손연방 등은 비록 중국인이지만 영국 국적자로 조던(John N. Jordan, 朱邇典) 영국공사가 한국 외부에 조회를 보내 사건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공사관원을 파견했다. 중국에서도 인천영사서 邵 번역과 순포 1명, 마부 등을 파견했다.<sup>42)</sup>

그런데 밤에 韓國衙門의 警役 등이 중국인 거주지에 돌을 던졌고, 다음날에는 邵위원의 거처에도 돌을 던지면서 “중국인을 죽인 것은 무죄”라는 말을 외쳤다. 許台身은 한국 외부에 조회를 보내 이는 심히 우려할 일로 해당 지방관이 방종하여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것이라고 항의하고, 한국 외부에서 해당 지방관에게 명을 내려 조약에 따라 일행을 보호하고 해당 안전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했다.<sup>43)</sup>

이 사건은 한국인의 중국인에 대한 인식은 이미 중국인은 죽여도 무죄라는 구호에서 볼 수 있듯이 적대감이 높았고, 감정적 대립이 높아지면 언제든지 유혈충돌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한국인들은 다른 외국인에게는 여전히 주의했지만 중국인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경계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러한 감정은 일제 식민지 시기 일본인에 대한 감정은 억누르면서 중국인에게 집중적으로 표출되었다.

청일전쟁 이전 한국인들은 일본인에 대해 무시하고 중국인에 대해서는 두려워했지만, 청일전쟁 이후에는 반대의 양상이었다. 청일전쟁 이후 한국인과 중국인의 분쟁은 몇 가지 유형이 있었다. 먼저 양국민의 분쟁은 집단적 충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집단적 충돌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라기보다 군중심리와 현장의 상황에 크게 좌우되었다. 한국인과 중국인의 충돌은 서로 민족적인 적대감으로 발전하기 쉬웠다. 둘째, 중국인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면서 한국 병사와 중국인 사이의 충돌이 잦았으며,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중국인 巡捕와도 충돌했다. 청일전쟁

41) 『檔案』 02-35-011-03, 許台身：訴訟 3, <韓兵毆打華人及搶物等案>. 41쪽.

42) 『檔案』 02-35-011-03, 許台身：訴訟 3, <韓兵毆打華人及搶物等案>, 109쪽.

43) 『檔案』 02-35-011-03, 許台身：訴訟 3, <韓兵毆打華人及搶物等案>, 110쪽; 「駐京 영국공사 朱邇典이 영국소속 상선에 대해 重稅하다가 외국인을 구타한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 『各司謄錄』 근대편, 司法稟報(乙) 46, 보고서 제1호.

이전에는 중국인의 횡포와 불법이 주를 이루었지만, 셋째, 청일전쟁 이후에는 한국인의 불법과 횡포가 훨씬 많았다. 넷째, 중국인과 충돌하면서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중국인에 대한 멸시와 악감정이 노골화되기 시작했다.

### Ⅲ. 국경 이주민 문제와 한중 간 교섭

청일전쟁 이후 한중관계의 변화는 국경 이주민 문제 처리과정에서도 볼 수 있다. 국경 이주민 문제는 1920~1930년대 화교배척운동의 원인이 되는 민족 갈등과 적대감의 배경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청일전쟁 이전에는 국경 문제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청일전쟁 이후에는 한청 간에 국경분쟁이 많아졌다. 이는 한중관계가 일방적인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로 바뀌면서 양국 간에 자국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이견이 노출되었고, 국경에서 충돌도 자주 일어났다. 한청 양국 간의 국경 분쟁은 중국 비적들의 국경지역 한국인에 대한 약탈 문제, 간도지역으로 이주한 한국인의 안전과 권리 문제, 한국인 또는 한국 병사가 중국으로 넘어가 중국인을 약탈하는 문제 등 양쪽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었다.

한청 국경 지역에는 한국인과 중국인이 섞여 살았기 때문에 상호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다. 한청 국경에는 비적들이 상대방 국가의 민중들을 약탈하고 납치하는 일이 빈번해서 이에 대한 단속 요청이 잇달았다. 먼저 중국 비적들이 한국인에 대한 약탈은 1899년 9월 奉天·吉林의 중국인 비적이 국경을 넘어와 한국 三水·甲山지방의 民家 333호를 약탈하고 한국인 11명을 붙잡아 가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한국 외부대신 박제순은 청일전쟁 이후 청의 대외업무를 대리하고 있던 영국 총영사 조르단에게 조회를 보내, 청이 변경에 군대를 파병하여 비적 劉佩珍·孫良翰 일당을 처벌하고 사건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sup>44)</sup>

1900년에는 중국의 木商 등이 越境하여 평안도 厚昌郡·慈城郡의 삼림을 몰래 벌목해 갔다. 이들은 수백 명을 모아 활동하면서 砲를 설치하고 한국 郡吏를 구타하고 부상을 입히는 등 행패를 부렸다. 한국 厚昌·慈城郡守는 중국 측에 군대를 派兵하여 이들을 체포하고 사건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중국 通化縣 知縣 陳璋은 自主國의 땅에 派兵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사건이 해결되지 않자 함경도 지역 지방관들이 군대를 파견하여 劉佩珍·孫良翰 일당을 추적하여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군대가 청 영토를 越境하자 청에서는 상호 국경을 침범하지 말고 상대방 民을 탄압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sup>45)</sup>

1905년 9월에는 평안북도 강계군에 중국인 비적 100여명이 들어와 한국 佃民 10명을 잡아가고 강을 건너던 船戶를 위협하여 물건을 빼앗는 일이 있었다. 또한 11월에는 무장한 중국인 비적 40여명이 자성군으로 들어와서 재물을 약탈하고 한국 佃民 23명을 잡아갔다. 한국 외부대신 朴齊純은

44) 『檔案』 01-41-061-02, 徐壽朋 : 訴訟 2, <邊民越界燒搶>, 1~7쪽.

45) 『檔案』 01-41-061-02, 徐壽朋 : 訴訟 2, <邊民越界燒搶>, 24~27, 29~30, 39~40, 46~47, 50~51, 54쪽.

駐韓公使 曾廣銓에게 照會를 보내 비적을 하루빨리 소탕하지 않으면 큰 화가 될 것이라면서 변방에 대한 경계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sup>46)</sup>

반대로 한국인 또는 한국 병사들이 중국에 들어가 중국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었다. 1903년 奉天省 臨江縣 長生堡에 한국 병사들이 여러 차례 국경을 넘어가 중국인에게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다. 이에 양국 변경의 官弁이 공동 조사하여 한국이 庫平銀 28,000량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또한 安東縣 四道溝에 있는 중국인 張世英의 갈대밭에서 한국인 朴尙熱이 멋대로 작물을 탈취했고, 義州의 관리도 작물을 탈취했다. 安東縣에서 義州郡守에게 조회를 보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sup>47)</sup> 한국인의 중국인 구타·약탈 사건이 자주 일어나자, 1905년 3월과 4월 駐韓公使 曾廣銓은 한국 외부대신 李夏榮에게 조회를 보내 한국인들이 국경을 넘어와서 소란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여, 외부에서 함경도와 평안도의 관리에게 주의하라고 지시했다.<sup>48)</sup> 비적이나 범죄자 처리는 해당 지역의 치안유지와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단속을 요청했다.

당시 간도 지역에 한국인들이 이주해 거주하여 양국 간의 왕래가 잦아지면서 越境의 문제와 양국민에 대한 약탈, 상호 분쟁이 자주 일어났다. 간도 지역은 조선 말 이후 한국인이 집단으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이주민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도 발생했다. 한중 국경문제의 핵심은 만주 지역으로 이주한 한국인에 대한 관할과 통제 문제였다. 여기에는 만주 지역 한국인의 귀속 문제와 국경선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중국으로 귀화한 한국인 王懋忠을 둘러싼 양국 간의 대립이었다. 왕무충 사건은 한국인의 간도 이주 역사와 상황 양국 간의 인식 차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예이다. 양국에서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왕무충의 행동을 해석하면서 상호 이견을 보였다.

1899년 11월 한국 關西察邊使 李道宰가 순시를 돌다가 한국적을 가지고 있던 왕무충이 通化縣 差總으로 자처하면서 한국인을 병역으로 편성하고, 돈을 거두고, 江路를 막았다고 보고했다. 이에 한국 외부에서 청에 조회를 보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1900년 3월 한국 외부에서 보낸 조회의 내용은 懷仁縣 通溝에서 한국인 王懋忠이 總管을 자칭하면서 9차례나 격문을 고시하고 멋대로 한국인들을 관리했다. 또한 왕무충이 장정을 뽑아 군대에 충원시킨다고 농민들에게 협박하고 압력을 가해 전 400문을 거두는 등 왕무충의 불법이 심하니, 양국의 조약에 따라 증명한 한국인은 적에서 제외하고, 한국인들의 재산 손해를 배상해달라. 아울러 왕무충을 처벌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서 왕무충을 돕고 있는 한인 李愼之, 林炳洙를 송환해 달라는 내용이었다.<sup>49)</sup> 조선 외부에서는 한청통상조약 제5관 제3항<sup>50)</sup>에 따라 왕무충을 인도받아 처벌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국대신 대리 許台身은 한국 외부에 조복을 보내 국경이 멀리 떨어져 있어 상황을 파악하

46) 『檔案』 02-35-037-04, 曾廣銓：訴訟 4, <韓民越界滋擾案>, 8쪽.

47) 『檔案』 02-35-050-02, 錢明訓：訴訟 2, <韓民越界滋擾案>, 6~8쪽.

48) 『檔案』 02-35-037-04, 曾廣銓：訴訟 4, <韓民越界滋擾案>, 4쪽.

49) 『檔案』 01-41-061-08, 徐壽朋：訴訟 8, <懷仁縣差苛斂寓居韓民>, 2~4쪽.

50) 양국 인민 가운데 혹 본국의 법률을 위반하고 사사로이 상대국의 지방으로 도망친 자가 있을 때에는 본국의 관원이 통지하는 경우 즉시 조사하여 색출해내어 본국으로 압송해서 처벌하도록 하며, 숨기거나 비호할 수 없다.

지 못했는데, 조사해보고 조약에 위반된 것이 있으면 東邊道에게 조회를 보내 처리하겠다고 답신했다. 이어 許台身은 東邊道 榮森에게 자문을 보내 한국과 중국에 외국인 내지 잡거의 준칙이 없는 상황에서 한청통상조약의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왕무충은 범인 압송 조항에 따라 한국으로 돌려보내야 하는데, 만약 왕무충을 그냥 내버려두면 내지 향민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를 조사하고 조약에 따라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sup>51)</sup>

그러나 중국에서 파악한 진상은 한국 측 입장과 전혀 달랐다. 許台身이 조회를 보낸 것에 대해 盛京將軍 曾祺가 답신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한국 측의 주장과 완전히 달랐다. 東邊道 榮森의 보고에 따르면, 왕무충은 정직하고 청렴해서 중국인이 유민에 관한 일을 맡아주도록 간청했고, 한국민도 통솔을 바랬다. 1899년 8월 通溝城에서 韓局을 설치하여 일을 처리할 때, 강변 간척지의 한국민이 도장 일체를 한민 이신지 등에게 맡아 처리하게 했고, 東邊道가 그 일을 관리 감독했다. 겨울에 도적이 준동할 때, 練長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는데, 이신지 등이 한민들과 상의하여 韓勇 40여명을 선발하여 지역을 보호하고, 한민이 자발적으로 1호당 4吊씩 내어 비용을 충당했다. 장부는 모두 한민이 관리했고, 한 푼도 억지로 거둔 폐단이 없었다. 또한 이들이 한민의 개간을 관할한 것은 멋대로 한 것이 아니라 동변도가 비준한 것이고, 練兵 편성과 경비 염출은 한민의 公議로 각 保에서 스스로 결정한 것이었다. 인장 등을 사사로이 만들어 날조했다고 했는데, 인장은 韓局과 일을 왕래할 때 필요한 것으로 날조할 수 없는 것이다. 江路를 금지한 것은 疆域의 分界를 지키는 것으로 당연한 것이지 조약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sup>52)</sup> 한국의 입장에서 왕무충은 청을 위해 봉사하는 매국노로 처벌의 대상이었지만, 청의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의 치안을 안정시키고 질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인물이었다.

한국 이주민의 관리를 둘러싸고 양국이 서로 상충된 견해를 보였는데, 청에서는 한국인들이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일을 처리했고, 오히려 한국 관리들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 한국 이주민의 관리권만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이신지 등이 유민이 된 지 10여년이 지났고 이쪽 저쪽을 왕래하고 있는데, 만약 범죄를 저질렀다면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고, 한국에 있을 때 체포하면 되는데, 이제 와서 도망쳤다고 하고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밝히지 않고 조약의 조항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한민을 학대했다면, 강변의 유민이 천명이 넘는데 한명도 이들이 가혹한 행위를 했다고 고소하지 않았는데, 어찌 한국의 官吏를 기다렸겠는가?라고 반박했다. 또한 한민 吳太一이 여러 차례 월경하여 한민을 괴롭히자 한민들은 通邑의 러시아 관원에게 파병을 요청하여, 哨官 장영성이 50명을 이끌고 通溝에 가서 보위했다. 만약 한국이 자국민을 아꼈다면 한국민들이 어찌서 자국 관원을 놔두고 러시아 관원에게 보호를 요청했겠는가? 따라서 이들의 활동은 잘못된 것이 없다고 보고하고, 이를 한국대신 許台身에게 알렸다.<sup>53)</sup>

청은 자국의 영역에 있던 한국민을 관리하는데 청의 입장에서 일했던 한국적의 대리인에 대해 신뢰했고, 한국은 이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1900년 11월 한국 關西察邊使 李道宰는

51) 『檔案』 01-41-061-08, 徐壽朋: 訴訟 8, <懷仁縣差苛斂寓居韓民>, 4, 9~10쪽.

52) 『檔案』 02-35-011-01, 許台身: 訴訟 1, <懷仁縣差苛斂寓居韓民>, 9~10쪽.

53) 『檔案』 02-35-011-01, 許台身: 訴訟 1, <懷仁縣差苛斂寓居韓民>, 11쪽.

한청 국경과 간도 개간에 대한 공문을 청에 보냈다. 이도재는 중국의 通化縣·懷仁縣·寬甸縣에 거주하면서 황무지를 개간하는 한국 백성들이 수만 호가 넘는다고 주장하고, 중국 通化縣 差總 王懋忠이 한국인을 병사로 편입하고 곡식을 거두어 가는 폐단을 시정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sup>54)</sup>

한국과 청 사이에는 국경 경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었고, 자국의 입장에 따라 자국민 관리의 범위와 권리에 대해 양국 사이에 논란이 불거졌다. 이 가운데에는 이에 한국에서는 간도가 한국 영토에 속하기 때문에 이주민에 대한 직접 관리를 청에 통보했다. 1901년 5월 한국 總巡 安壽益 등은 청 지방관에게 邊界를 넘어 개간한 한국민을 자신이 관할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때 안수익은 청 관원에게 한국의 王命과 康熙 51년에 작성된 分界地圖를 꺼내 보였으며, 이를 근거로 土門江을 경계로 하여 북쪽은 청 관할이고, 남쪽은 한국 관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 관리는 양국은 원래 圖門江을 경계로 한 것이라고 하면서 반박하고, 한청통상조약 12款<sup>55)</sup>을 들어 이미 越墾한 자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관리의 의견을 반박했다.<sup>56)</sup>

한국민의 간도 이주가 본격화 되고, 청은 국경문제와 함께 간도 지역 이주민에 대한 관리, 이 지역의 치안유지가 중요한 문제였다. 청에서는 이주민에 대해 직접 관리하려 했고, 한국에서는 한국민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경에는 양쪽을 오가면서 생활하는 한국인들이 증가했다. 한국과 청 양국의 국경 거주민들은 필요에 따라 국경을 넘나들었고, 불법 이주를 단속하는 것은 어려웠다. 그래서 청은 새로운 이주민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필요하여 한국인 가운데 대표를 선정하여 한국인을 통제하고 안전을 지키는 일을 맡겼다. 한국에서는 이주민은 기본적으로 한국민으로 당연히 한국 관리의 관리 아래 있다고 인식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하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이것에 대해 한국에서는 항의했지만, 청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 결론

이주는 선주민과 이주민 사이에 갈등과 협력이 필연적이다. 근대 이후 이주는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작용한 결과였다. 중국인의 조선 이주는 생계유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중국인은 조선에서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세력을 확대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위가 상실되면서 한국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되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중국 상인의 생존 능력을 강화시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인과 중국인 사이의 갈등과 분쟁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주에 대해 어느 일방에서 이들을 차별하거나 배척하기 어려웠다. 이주민에 차별이나 배척은 상대방 국가에 거주하는 본국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이

54) 『檔案』 01-41-061-02, 徐壽朋 : 訴訟 2, <邊民越界燒搶>, 80~81쪽.

55) 변방 백성으로서 이미 국경을 넘어 농사를 짓는 자는 자신의 생업에 편안하게 전념하게 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되 이후 몰래 변계를 넘어가는 자가 있을 때에는 피차 모두 금지하여 사단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56) 『檔案』 01-41-061-02, 徐壽朋 : 訴訟 2, <邊民越界燒搶>, 82~86쪽.

었다. 조선과 중국 관계가 이전의 일방적 관계 대신 대등한 관계로 전환된 이후, 이러한 분쟁은 상호 타협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었다.

청일전쟁 이후 조청상민수륙장정에서 한청통상조약으로 조약의 내용만 바뀐 것이 아니었다. 물론 조약으로도 양국 간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화했지만, 실제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한청통상조약은 청일전쟁 이후 한국과 중국의 분쟁을 처리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하지만 조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양국 간에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 한국정부는 청일전쟁 이전처럼 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한국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했다.

청일전쟁 이후 한국인과 중국인의 분쟁은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였고 이에 대한 해결방식도 달라졌다. 청일전쟁 이후 한국인의 중국인에 대한 인식은 멸시와 민족적 감정이 얽혀 있었다. 이는 중국인에 대한 적대감으로 표출되었다. 따라서 청일전쟁 이후 한국인과 중국인의 분쟁은 언제든지 집단적인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집단적 충돌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라기보다 군중심리와 현장의 상황에 크게 좌우되었다. 중국인과 조선인은 평시에는 별문제 없이 혼거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민족적인 적대감으로 발전하기 쉬웠다. 한편 중국인은 한국 민중 생활 깊숙이 침투하여 한국인과 삶의 터전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무일푼으로 와서 성공하기도 하고, 음식점이나 채소밭을 경영하여 조선인과 구별되는 삶을 살았다. 따라서 중국인들은 질시의 대상이었지만 동시에 이들의 생활은 한국인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청일전쟁 이전 한국인들은 일본인에 대해 무시하고 중국인에 대해서는 두려워했지만, 청일전쟁 이후에는 반대의 양상이었다.

청일전쟁 이전 조선은 청의 기세에 눌려 중국인의 불법행위를 거의 단속하지 못했지만, 청일전쟁 이후에는 홍삼밀매, 아편밀매, 도박 등 중국인의 불법을 단속하면서 한국 병사 또는 巡捕와 중국인 사이의 충돌이 잦았다. 한국 병사나 순포가 중국인의 불법행위를 감시한다는 명분으로 중국인 점포를 수색하거나 중국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는데, 한국 병사들은 중국인의 집단대응에 피해를 입으면 집단적으로 보복했다. 이 경우 중국인이 한국인보다 훨씬 큰 신체적,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청일전쟁 이전에는 중국인의 횡포와 불법이 주를 이루었지만, 청일전쟁 이후에는 한국인의 불법과 횡포가 훨씬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인과 한국인의 연합 양상도 보였다. 청일전쟁 이후 국경 문제를 다루는 방식도 변화했다. 한국과 청의 국경에서는 한국 이주민의 관리와 범죄인 처리를 둘러싸고 양국 사이에 이견이 대립했다. 간도의 한국 이주민에 대해 한국은 당연히 한국 관원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청에서는 자국의 입장에서 한국 이주민을 관리하려 했다.

청일전쟁 이후 한국인들은 중국을 무능한 국가로 인식하고, 중국인에 대한 멸시와 악감정을 노골화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었다. 청일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의 갈등, 한중 국경문제와 간도 지역 한국 이주민 문제, 중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적대감은 이후 한국인이 중국인을 대하는 기본적인 인식이 되었고, 이러한 갈등과 적대감은 1920~1930년대 화교배척운동의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화교, 한청통상조약, 국경분쟁, 화교배척, 한국인과 중국인의 분쟁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8-362-A00001).

## 참고문헌

- 『淸季駐韓使館檔』 訴訟案件  
 『各司謄錄』 近代篇, 司法稟報  
 『皇城新聞』  
 韓祐旆, 『韓國開港期の 商業研究』, 한국학술정보, 2003  
 박정현 외 지음, 『중국 근대 공문서에 나타난 韓中關係』, 한국학술정보, 2013.  
 김희용, 「日帝強占期 한국인의 華僑排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전우용, 「한국 근대의 華僑 문제」, 『한국사학보』 15, 2003.  
 김태웅, 「1920·30년대 한국인 대중의 華僑認識과 國內 民族主義 系列 知識人の 내면세계」, 『역사교육』 112, 2009.  
 구범진, 「<韓淸通商條約> 일부 條文의 해석을 둘러싼 韓-淸의 외교분쟁」, 『대구사학』 83, 2006.  
 이영옥, 「한중 민간 소송 연구, 1906~1910-張導之案, 姚貴春案, 劉金有案 등 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35, 2007.  
 이은자(「淸日戰爭 이전과 이후 在韓 韓中間 ‘訴訟’ 안건 비교 분석」, 『아시아문화연구』 17, 2009.  
 은정태, 「1899년 韓·淸通商條約 締結과 大韓帝國」, 『역사학보』 제186집, 2005.  
 이재석, 「한천통상조약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19집, 2011.  
 박정현, 「19세기 末(1882~1894년) 朝鮮 華商의 조직과 상업활동」, 『중국사연구』 제66집, 2010.  
 박정현, 「1882~1894년 조선인과 중국인의 갈등 해결방식을 통해 본 한중관계」, 『중국근현대사연구』 제45집, 2010.  
 박정현, 「19세기 말 仁川과 漢城의 중국인 居留地 운영체제」, 『동양사학연구』 제113집, 2010.